

알기 쉬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4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2011-2015

국립생물자원관 지음



알기 쉬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4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2011-2015

국립생물자원관 지음

알기 쉬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4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2011-2015

국립생물자원관 지음

| | |
|----------|--|
| 발행일 | 2016년 1월 |
| 발행처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 기획 | 이병희, 이상준, 박혜민, 배정환, 유범식, 노희경, 오경희, 최흥진 |
| 번역 | 유진희, 김윤정, 박정훈, 송송이, 이상준 |
| 뉴스레터 디자인 | 김실비아, 유정선 |
| 디자인 | 베이스라인 |
| 인쇄 | 수프린팅 |

목차

아시아

| | |
|--|-----|
| 발간사 | 012 |
|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해외 대응사례 -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국가적 노력 | 015 |
| 라오스, 나고야의정서 비준 | 016 |
| 약용식물의 보물섬, '보르네오'를 지키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노력 | 017 |
| 인도 국가환경재판소, 피마자유(castor oil) 업계에 이익공유 명령 | 018 |
| 인도, ABS-CH에 첫 번째 의무준수인증서 등록 | 019 |
| 인도 전문가들, 전통지식을 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우려 | 020 |
| 인도 아우르베다 제약협회, 자국기업에 대해 ABS 로열티 지불 유보 권고 | 021 |
| 인도 국가생물다양성당국, 생물다양성 법 제외 종목록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022 |
| 인도 전통지식에 의해 미국 골게이트사의 특허 무효화 | 023 |
| 인도, 지역의 ABS 모델 계약서(2015) 발간 | 024 |
| 인도 텔랑가나 주, 살충제 제조회사들과 이익공유 협정 체결 | 025 |
| 인도정부, 생물자원에 대한 로열티 공시 | 026 |
|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나고야의정서: 자바데칼 인도 환경부 장관 | 027 |
| 인도, 네팔의 생물다양성 및 ABS 규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 028 |
| 인도 밀(Galatea) 분쟁 사례 | 029 |
| 인도 강황(Turmeric: Curcuma longa) 분쟁 | 029 |
| 인도에서 개최된 지역원주민협회 세미나 보고서 발행, '지역 보전을 위한 원주민의 역할' | 030 |
| 인도와 피지, 나고야의정서 비준 | 031 |
| 인도 님나무(Neem) 분쟁 사례 | 031 |
| 인도네시아 자무(Jamu) 분쟁 사례 | 032 |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응용청 - 일본 메르시안(Mercian)사 미생물자원 공급 계약 체결 | 032 |
| 인도네시아의 조류 독감 바이러스 분쟁 | 033 |
| 일본 농림수산성, 나고야의정서 관련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 촉진 워크숍」 개최 | 033 |
| 일본 농림수산성,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한 식물 육종 안내서(평가판)' 발간 | 034 |
| 일본바이오산업협회, 'EU ABS 규칙 및 산업계 대응'에 대한 세미나 개최 예정 | 035 |

| | |
|--|-----|
| 일본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동향 | 036 |
| 일본 '시세이도' 사 특허 분쟁/페루 '마카'(Maca) 분쟁 | 037 |
| 세계자연보전연맹 일본위원회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양해각서 체결 | 037 |
| 일본, 유엔생물다양성 10년(2011-2020) 선포 | 038 |
| [중국]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공시' | 039 |
| 태국 자생식물 프에라리아 미리피카 사례 | 040 |
| 파키스탄 나고야의정서 가입 | 040 |
| 파키스탄, 나고야의정서 곧 비준 조짐 | 041 |
| 한국 국립생물자원관, '남아공의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체계' 국문판 발간 | 042 |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협약 관련 전문가양성을 위한 한-중 국제세미나 개최 | 043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해외 유전자원 이용과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 044 |
| '생물다양성협약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국제 세미나 개최 | 045 |
| 국립생물자원관, 제12차 한국 ABS 포럼 개최 -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예시 계약서' | 047 |
| 한국바이오협회,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업계 설명회 개최 | 048 |
| (사)대한화장품협회, 나고야의정서 업계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 | 048 |
|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해설서 번역본 발간 | 049 |
| 나고야의정서 정보 서비스를 위한 누리집 새 단장 | 049 |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대응 방안을 위한 산·학·연 공동 세미나 개최 | 050 |
| 아이치타겟 달성을 위한 생태계보전·복원 워크숍 제주서 개최 | 051 |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 052 |
| '생물다양성협약 지역 워크숍', 인천 송도서 개최 | 053 |
|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세계 각국 행사 열려. 우리나라, 상암 월드컵 평화공원서 기념식 개최 | 054 |
| 생물다양성협약 기술보고서 제38권 국문 번역판 발간 | 055 |
| '자연과 더불어 건강한 미래를',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서 열린다 | 056 |
| 나고야의정서 의무이행 제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057 |

유럽

| | |
|--------------------------------------|-----|
| EU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을 위한 ABS-int 홈페이지 개설 | 059 |
|--------------------------------------|-----|

아프리카

| | |
|---|-----|
| EU 집행위원회, EU ABS 시행 세칙 채택  | 060 |
| EU 집행위원회, ABS EU 규칙 워크숍 개최  | 061 |
|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식물육종가연합의 EU 나고야의정서 이행 규칙 무효확인 소송 각하  | 062 |
| 국제상공회의소, EU ABS 규정에 따른 ABS 이행준비 워크숍 개최  | 064 |
| 나고야의정서 유럽의회서 647표로 통과...2014년 발효까지 '청신호' | 065 |
| EU, 유전자원 공유에 대한 신규 규정 도입  | 067 |
| EU, 유전자원 국제거래관련 법적 규제 가까워져  | 068 |
| EU ABS 법안 유럽의회 통과  | 069 |
| EU ABS 법안, 유럽의회 검토 - 논의중  | 070 |
| 네덜란드 기반 다국적기업 DSM, 생물다양성 정책 방침  | 071 |
| 네덜란드 국가연락기관 바헤닝언 대학연구소 유전자원센터 (CGN)  | 072 |
| 네덜란드 정부, 하원에 나고야의정서 비준안 제출 및 이행 법률 제정 중  | 073 |
| 선진국 최초로 노르웨이, 나고야의정서 비준  | 074 |
| 덴마크 노보자임 사, 케냐야생생물청에 이익공유 협정으로 첫 로열티 (26,000 USD) 지불   | 075 |
| 케냐 야생생물청-덴마크 노보자임 사 미생물채집 및 연구 협약 체결  | 076 |
| 독일 연방의회, 나고야의정서 비준안 통과  | 077 |
| 독일 내각, 나고야의정서 관련법 승인  | 078 |
| 벨기에 나고야의정서 ABS 이행 최종 연구 보고서 발간  | 079 |
| 벨기에, 생물 분류 관련 'Abc Taxa' 사이트 오픈  | 080 |
| 알바니아, 보츠와나, 마이크로네시아, 나고야의정서 비준    | 080 |
|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나고야의정서 공공정책 발표  | 081 |
| 영국 ABS 법안, 의회에 제출되다  | 082 |
| 크로아티아, 나고야의정서 가입서 제출  | 083 |
| 나고야의정서 발효까지 13개국 남아 | 084 |
| 가나, 올해 안 나고야의정서 비준 계획  | 087 |
| 가봉, 나고야의정서 첫 비준국이 되다  | 088 |
| 기니, 모로코, 키프로스, 소말리아 나고야의정서 서명     | 088 |
| 나미비아 35번째로 나고야의정서 가입  | 089 |

아메리카

| | |
|---|-----|
| 남아공 림포푸 공동체, 비탄수화물 감미료로 로열티 획득  | 090 |
| 남아공 환경부, 루이보스 및 허니부시 차 산업계에게 코이-산 부족과 이익공유계약 체결 촉구  | 091 |
| 남아프리카 공화국,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칙' 개정  | 092 |
| 남아공생물자원보호법(BABS) - 1  | 094 |
| 남아공생물자원보호법(BABS) - 2  | 095 |
| 남아프리카공화국, 나고야의정서 12번째로 비준  | 096 |
|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리아 치료 자생식물 및 전통지식 개발 프로젝트 착수  | 096 |
| 남아공의 전통 식물, 후디아(Hoodia) 분쟁  | 097 |
| 시카고 볼 원예관-남아프리카공화국 생물다양성연구소, 식물자원 관련 계약 체결  | 097 |
| 동아프리카 생물다양성네트워크, 동아프리카 외래종의 분류 정보를 담은 온라인 자료 발행 | 098 |
| 르완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 098 |
| 모잠비크 의회, 나고야의정서 비준 동의  | 099 |
| 서부아프리카,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자금 조달 전략 워크숍 개최 | 100 |
| 세이셸 공화국, 나고야의정서 4번째로 비준  | 100 |
| 제15차 아프리카 환경장관회의, 'ABS 이행 가이드라인' 채택 | 101 |
| 약탈위기에 처한 에티오피아 천연자원  | 103 |
| 에티오피아 테프(Eragrostis tef) 사례  | 104 |
| 지부티, 나고야의정서 65번째로 서명  | 105 |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국내 이행을 위한 짐바브웨의 노력  | 106 |
| 아프리카 카메룬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사례  | 107 |
| 코모로, 몽골 나고야의정서 비준   | 108 |
|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29개국 돌파, 발효까지 21개국 남아 | 109 |
| 코스타리카 ABS 법률 규정  | 111 |
| 코스타리카 38번째 나고야 의정서 조인국 되다  | 111 |
| 콜롬비아 약용식물 연구소(Lafarve)  | 112 |
|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 나고야의정서 비준 필요성 느껴 | 113 |
| 멕시코, 나고야의정서 비준  | 114 |
| 미국 체로키 부족의 종자 프로젝트, 전통 보전과 미래의 희망을 심다  | 115 |



| | |
|---|-----|
|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사모아 지역원주민, 에이즈 치료 관련 연구 협력 체결  | 116 |
| 볼리비아 퀴노아 곡물(Quinoa, Chenopodium quinoa) 분쟁 사례  | 117 |
| 브라질, '화장품·식품·의약품 관련 생물다양성 신규 법' 채택  | 118 |
| 브라질, 파라과이의 단 맛 식물 스테비아(Stevia) 사례   | 119 |
| 아마존 아야후아스카(Ayahuasca) 분쟁 사례 | 119 |
| 브라질 에놀라 콩(Enola Bean) 분쟁 사례  | 120 |
| 향수의 원료로 쓰이는 브라질의 부레우부랑코(Breu branco), 로열티 지급 사례  | 120 |
| 온두라스와 타지키스탄, 나고야의정서 비준   | 121 |
| 우루과이, 스페인, 안티가바부다 나고야의정서 조인국 되다    | 122 |
| 파나마와 모리셔스, 나고야의정서 비준   | 123 |
| 페루, 세계 특허모니터링을 통한 생물해적행위 감시  | 124 |
| 페루 국가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 의장, 마카에 대한 생물해적행위 우려  | 125 |

오세아니아

| | |
|--|-----|
| 태평양 지역 나고야의정서 ABS 역량개발 워크숍 개최 | 127 |
| 호주 퀸즐랜드 정부, '생물탐사법 2004' 개정 검토 중  | 128 |
| 호주, 토착식물 '구빈지'에 대한 생물해적행위 감시  | 129 |
| 호주 그리피스대학 - 아스트라제네카 사, 천연물 탐색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 130 |
| 호주 마운트로망스 - 미국 아베다 사, 샌들우드 (Sandalwood) 관련 협력 체결   | 131 |
| 룩아일랜드 시메텍 사 코우투누이 원주민 대표와 이익공유 체결  | 132 |
| 피지(Fiji)에서 'ABS 및 지식재산권 훈련' 열려  | 133 |






중동

| | |
|---|-----|
| 아랍에미리트 연방 53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발효  | 135 |
| 아랍에미리트, 생물다양성협약 ABS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136 |
| 요르단, 아랍 지역에서 첫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되다  | 137 |
| 시리아, 16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 138 |

국제기구

| | |
|----------------------------------|-----|
|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 | 140 |
| 나고야의정서 59개 당사국, 생물다양성협약 196개 당사국 | 141 |



| | |
|---|-----|
| CBD,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 구성 | 142 |
| '제13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및 두 의정서 당사국회의 | |
| 2016년 12월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개최   | 143 |
| 올해 10월 발효되는 나고야의정서...일본은 아직 비준 안 해  | 144 |
| 나고야의정서 체제 이제 시작됐다 | 145 |
| 나고야의정서... 진지하게 논의할 때 | 147 |
|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33개국 돌파 | 149 |
| ABS 나고야의정서란 무엇인가? | 150 |
| ABS란 무엇인가 | 153 |
| 디아즈 사무총장, 한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촉구  | 155 |
| 제3차 나고야의정서정부간위원회 회의(ICNP-3)서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위한 준비 기반 다져 | 156 |
| ABS 정보공유체계(ABS-CH), 세계지식재산기구 정부간위원회에 소개돼 | 158 |
| 나고야의정서 핵심 쟁점 소개 | 159 |
| 나고야의정서와 생물문화적 권리 | 161 |
| 나고야의정서 비준 25개국 돌파, 발효시점의 반환점 돌아 | 162 |
| 민간분야의 ABS 관련 국제조약, 가이드라인 | 163 |
| 미생물분야, 학술연구단체의 ABS 관련 국제조약, 가이드라인 | 164 |
| 전세계 식물원의 ABS 협력대응체계 | 165 |
| 농업분야의 ABS 관련 국제조약, 가이드라인 | 166 |
| ABS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전문가회의 개최 | 168 |
| 제2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 위원회 회의 개최 | 169 |
| 나고야의정서 서명 마감 | 170 |
|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제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과 의무준수위원회 관련 의견제출 공지 | 170 |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로드맵 채택 | 171 |
| 제8차 '협약 제8조 차항 및 관련 조항에 대한 임시작업반회의(WG8J)', 전통지식의 주요 역할 재확인 | 172 |
|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NBSAP)' 개정을 위한 CBD, CMS, CITES 연락기관 협력 워크숍 개최 | 173 |
| 생물다양성 논의를 위한 유엔과 디아즈 사무총장의 만남  | 174 |
| 브라울리오 디아즈 CBD 사무총장 취임 | 174 |



| | |
|--|-----|
|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의 해, 2011년' CBD 보고서 출판 | 175 |
| 생물다양성협약-세계미래협의회, MOU 체결 | 175 |
| 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생물다양성 지표 논의 | 176 |
| CBD 회원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 | 177 |
| 생물다양성협약, 외래종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177 |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생물다양성 정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178 |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선언문 채택 | 179 |
| 세계지식재산기구,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출처공개조항 종합목록' 배포 | 180 |
| 제26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유전자원·전통지식 정부간위원회 회의, 약간의 진전과 함께 의견차 남아 | 181 |
| 세계지식재산기구, '유전자원, 전통지식보호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차기 권한 갱신 | 182 |
| 제15차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총회, '식량농업 유전자원 여러 하위분야들의 ABS 국내 이행 촉진을 위한 요소(안)'에 합의 | 183 |
| 제69차 유엔총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관련 국제 문서 개발 결정 | 184 |
| 제9차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작업반회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 논의 | 185 |
|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은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 | 186 |
| 유엔개발계획, '적도 이니셔티브' 활동 결과 온라인 게재 | 187 |
| Rio+20 정상회의 20주년 기념, '인류보건 및 리우 협약' 보고서 발간 | 188 |
|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는 전세계 행사 열려 | 189 |
| 유네스코,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 10년 선포 | 189 |
| 유엔 보고서, 식용 목적의 야생동물 남획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논의하다 | 190 |
| 유엔대학, 생물다양성에 특화된 환경 거버넌스 이학 석사 과정 개설 | 191 |
| 윤리적생물무역연합, 2013년 '생물다양성 지표' 발표 | 192 |
| 윤리적생물무역연합, 생물다양성이 미용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회의 개최 | 194 |
| 윤리적생물무역연합, 2012년 생물다양성 지표 발표 | 195 |
| 윤리적생물무역연합 -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MOU 체결 | 196 |
| 지중해지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을 위한 회의 개최 | 196 |
| 토착지역주민공동체 대표와 정부 대표단의 만남 | 197 |
| G77, 아이치 목표 실행 촉구 | 198 |

발간사

인간은 예로부터 생물과 함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생물을 사용해 왔으며, 약재 등과 같은 생활 필수품도 생물로부터 얻었습니다.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개발되고 있어, 생물에 대한 가치가 새로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인간과 함께 존재하는 동물과 식물을 포함하는 모든 생물 종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이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는 이러한 생물다양성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러한 생물다양성의 손실 속도를 줄이고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채택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정책을 개발, 이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가 간 협력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보충 협정으로,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구체화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세계 각 국은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많은 국가와 여러 지역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관련 법, 규정, 정책, 행정조치들을 개발하여 자국의 생물 주권 확보와 이익 공유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ABS 대응 노력은 넓은 의미의 CBD 규정들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들의 결실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됩니다. 또한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정식 발효되면서 국가별 ABS 동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ABS 조치들을 마련하거나 시행하는 국가들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러한 국내외 ABS 대응 노력과 동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ABS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2011-2015』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서적은 국립생물자원관이 격주로 발간하는 'ABS Newsletter'를 대륙별, 시간별로 재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한 책으로써 2011년부터 4년간 대륙별로 진행된 ABS 관련 소식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의 네 번째 유전자원 및 이익공유 안내서입니다.

이번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2011-2015』과 함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와 주요 질의응답을 모아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1』을 발간한 바 있으며, IUCN에서 출판한 『나고야의정서 해설서』를 번역하여 두 번째 안내서로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환경부 저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체계』를 번역하여 세 번째 ABS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기존의 안내서들과 함께 이번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2011-2015』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보전·관리의 중추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1월

국립생물자원관장

김상배



동남아시아는 세계 면적의 3%에 지나지 않지만 동·식물 종 수에 있어서는 세계 18%를 차지하는 생물다양성 부유지역이다. 점차 천연자원을 이용한 신약 개발과 기타 유전자원 활용사례가 늘어나면서 제공국과 이용국간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법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에서는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현재 아세안 지역에서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했으며 라오스는 의정서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ABS 국내법 제정은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일부 아세안 지역 국가들은 나고야의정서 채택 전부터 ABS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실시해온 바 있다. 가령 남부 필리핀의 사바지역 '사바생물다양성센터'는 '키나발루 생물문화법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키나발루 산지에 사는 거주민들의 ABS 역량 개발과 인식제고, 전통지식 보호를 도모해 왔다.

현재 아세안 지역에서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했으며 라오스는 의정서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ABS 국내법 제정은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일부 아세안 지역 국가들은 나고야의정서 채택 전부터 ABS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실시해온 바 있다. 가령 남부 필리핀의 사바지역 '사바생물다양성센터'는 '키나발루 생물문화법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키나발루 산지에 사는 거주민들의 ABS 역량 개발과 인식제고, 전통지식 보호를 도모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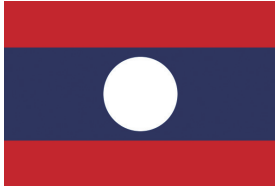
아세안 국가들의 범국가적인 ABS 제도화 노력은 'ABS 초안프레임워크협정(Draft Framework Agreement on ABS)'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협정의 목표는 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민의 전통지식 보호에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6개국의 비준을 통해 발효된다.

협정 추진을 위해 정부간 기구인 '아세안생물다양성센터(ASEAN Center for Biodiversity)'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UNEP-GEF의 후원아래 '지역 ABS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지역워크숍을 통해 나고야의정서를 이해하고 ABS 정책이행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여 ABS 국제 협상의 참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참여국의 ABS 국가법 제정을 위한 로드맵 형성을 돕고 있다.

원문출처 : http://www.aseanbiodiversity.org/index.php?option=com_phocadownload&view=category&id=5&Itemid=117¤t=110

라오스, 나고야의정서에 비준

2012. 9. 27



9월 27일 라오스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6번째 나라이자,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를 이행하고자 하는 나고야 의정서는 서명기간인 2011년 2월 2일부터 2012년 2

월 1일까지 92개국에 서명하였다. 라오스는 서명기간 이후 당사국이 되고자 하는 절차인 가입(Accession)을 통해 비준하였으며 이미 요르단, 가봉, 르완다, 세이셸, 멕시코가 비준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50번째 국가의 비준서가 제출된 후,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앞으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제공국과 활용하는 이용국 모두에게 더욱 확실한 법적 기반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분배할 수 있게 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cbd.int/abs/becoming-party/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용식물의 보물섬, '보르네오'를 지키기 위한 말레이시아의 노력

2014. 5. 23



“헐리웃 영화 속 보르네오섬이 약용식물의 보고로 묘사되면서 세계각지의 식물 채집꾼들이 줄지어 모여들고 있다.”

데니스 엔구(Dennis Ngau) '사라왁 바리산 내셔널(Sarawak Barisan Nasional, BN)' 평의원은 최근 이러한 헐리웃 영화들의 보르네오섬 홍보 효과로 보르네오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풍부한 보르네오섬의 약용식물에 대한 세계 제약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정 식물에 대한 정보가 외국에 알려지면서 외국으로부터 자국의 식물을 보호하고 제약 개발로 이어지는 약용식물에 대한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힘입어 지난주 '사라왁생물다양성센터법(Sarawak Biodiversity Centre Bill)'이 사라왁 주 의회를 통과했다. '사라왁생물다양성센터법'은 생물자원의 연구·개발 등의 추가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아왕 텐가 알리 하산(Awang Tengah Ali Hasan) 말레이시아 자원계획환경부 2 장관은 “이번 '사라왁 법'은 국가의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특히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2장관은 이어 “전통지식이야말로 이러한 생물자원의 상업화를 이끌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며 말레이시아가 자국의 생물자원을 제약, 치료용으로 전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사라왁 법'은 사라왁 주의 ABS 관련 법, 절차 시행과 PIC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돕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장관은 “사실 '사라왁생물다양성센터'에서 그동안 전통지식 문서화 프로그램을 통해 PIC 체제를 시행해왔다.”며 “이번 법률은 이러한 PIC 관행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식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장관은 “현재 시범단계의 PIC 체제가 이제 마무리단계에 들어섰으며 2015년까지 PIC 체제가 전면 이행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 <http://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14/05/06/hollywood-is-bad-for-sarawak/>

인도 국가환경재판소, 피마자유(castor oil) 업계에 이익공유 명령

2015. 11. 20



National Green Tribunal

11월 20일, 인도 국가환경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 이하 'NGT')는 마하라시트라 주에서 상업적 용도로 피마자를 사용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2002년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지역공동체와 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라고 명령했다.

'마하라시트라 주생물다양성이사회(Maharashtra State Biodiversity Board, 이하 'MSBB')' 관계자는 "마하라시트라주(州)에서의 피마자의 이용 및 조달 판매량이 대략 6억 루피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법규에 따라 매출액이 1천만 루피 이하인 제조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0.1%를 MSBB에 지불하고, 1천만 루피 초과~3천만 루피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0.2%를, 3천만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매출액의 0.5%를 MSBB에 지불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본 소송은 마하라시트라 푸나(Pune)의 한 변호사가 생물다양성법 집행에 대한 마하라시트라 주생물다양성이사회(MSBB)의 부작위를 다루기 위해 공익소송(PIL, Public Interest Litigation)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NGT는 MSBB로 하여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이용자의 상호(또는 성명)를 신문에 게재한 후 법률에 의거하여 기소할 것을 지시했다. 피마자는 작물이지만 피마자 오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2002년 생물다양성법」 제2조 (c)·(f)호에 따른 생물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7조에 따른 사전통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당사자들이 MSBB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획득하여 「2002년 생물다양성법」의 제7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제24조 제2항에 따라 주(州)생물다양성위원회(SBB)가 내린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에 따라 해당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십만 루피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MSBB 소속 딜립 싱(Dilip Singh) 위원은 의무를 해태하는 당사자에게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피마자 오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무역업자 및 제조업자들에게 ABS 비용을 MSBB에 지불할 것을 요청했다.

그림출처 : <http://legaltrigger.com/images/37734241876.jpg>

원문출처 :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city/nagpur/Castor-units-will-have-to-share-benefits-with-locals/articleshow/49851506.cms>

인도, ABS-CH에 첫 번째 의무준수인증서 등록

2015. 10. 1



인도가 자국 전통지식 접근에 대해 연구 켄드대학의 연구자에게 부여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인증서(IRCC)**'를 최초로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

(ABS-CH)**에 등록했다(2015년 10월 1일).

의무준수인증서(IRCC)는 사전통보승인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 국내법 및 규제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해당 인증서에 적시된 유전자원이 사전통보승인에 따라 접근이 허용되었고 상호 합의조건이 확정되었다는 증거 역할을 한다(나고야의정서 제17조 제3항).

이번 인도에서 등록된 의무준수인증서(IRCC)의 발급 기관은 인도의 국가책임기관인 '국가생물다양성당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이며, 발급일은 2015년 5월 27일, 계약 만기일은 2018년 5월 26일이다. 접근 대상은 구자라트 Siddi 공동체의 전통의학지식이나, 이용 종류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만 연구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의무준수인증서에 따르면 영국 켄드대학의 Ms. Seema Solanki가 사전통보승인(PIC)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상호합의조건(MAT) 정보란에는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으며, 추가 정보란에는 국가생물다양성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는 본 계약서 아래 접근된 생물자원 및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어떤 형태도 획득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신청자는 연구결과에 대해 국가생물다양성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의 IRCC 보기 : <https://absch.cbd.int/database/record/ABSCH-IRCC-IN-204353-1>

- * 의무준수인증서(IRCC,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of Compliance)
-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체계(ABS-CH,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인도 전문가들, 전통지식을 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우려

2015. 9. 16



인도 정부가 전통지식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전통지식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고, 전통지식을 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인도 '코치과학기술대학(CUSAT)' 지식재산권 관련 N.S. Gopalakrishnan 박사를 대표로 6인의 위원회에서 마련한 이번 전통지식 보호 법안은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신탁을 판차야트(Panchayat)* 및 지역 차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법안은 검토를 위해 인도 법무부에 보내졌다.

현재 인도 기술부 산하 연구소인 NIIST(National Institute for Interdisciplinary Science and Technology)에 근무하고 있으며, 인도 특허청 전 심사관이었던 R.S. Praveen Raj 박사는 "전통지식의 등록 제도를 설립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우려의 의견을 냈다. 또한 그는 공동체가 보유한 전통지식을 사전통보승인(PIC)과 접근 및 이익공유(ABS) 개념을 사용하여 '전통지식디지털라이브러리(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ies, TKDL)' 형태로 성문화하려는 것은 각국의 특허청에 선행기술(Prior Art) 확인용으로 TKDL을 공개하는 것이 되어, 해당 전통지식 보유 공동체에게 심각한 불공평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전통지식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개발된 인도의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TKDL'에는 현재 아유르베다, 우나니, 시다 요가 등 208,000개의 인도 전통의학제법이 등재되어 있다. 인도는 해당 DB를 검색 및 조사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유럽특허청 및 미국특허청과 접근 협정(Access Agreement)을 체결했다.

한편, Raj 박사는 전통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전통지식을 보유한 해당 공동체, 공동체 규약 등을 표시하는 '전통 지식명세시스템(Traditional Knowledge Docketing System, TKDS)' 설립을 제안하는 서한을 인도 정부에 보냈다. 'TKDS'는 전통지식을 보유한 공동체가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발명에 대한 적절한 지식재산권을 취할 권한을 가지고, 그들만의 학회 또는 신탁을 형성하여 잠재 소비자들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그림출처 : <http://www.ip-watch.org/weblog/wp-content/uploads/2015/09/Kerala-Ayurveda.jpg>

원문출처 : <http://www.thehindu.com/news/national/kerala/caution-on-classifying-traditional-knowledge-under-ipr/article7589338.ece>

* 판차야트: '5인(Panch) 회의(Yat)'라고도 불리는 촌락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 1993년 인도 73차 개헌으로 촌락 판차야트의 관장업무와 권한이 명시됨.

인도 아유르베다 제약협회, 자국기업에 대해 ABS 로열티 지불 유보 권고

2015. 9. 16



'아유르베다 제약협회(The Ayurveda Drug Manufacturers Association(ADMA))'는 3개의 법률회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해외기업에만 ABS 관련 로열티 지불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견을 듣고 협회 회원들에게 가능하다면 ABS 비용 지불을 유예할 것과 지불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이익을 유보한(Under Protest) 지불을 권고하였다.

인도는 EU, 브라질, 남아프리카와 함께 실용적인 ABS 규정들을 제정하여 ABS 이행에 앞장서 왔으나 아직까지 업계가 ABS를 이행하기에는 불명확한 영역이 많은 상태이다.

현재 인도에는 많은 주(State)들이 각자의 '주 생물다양성위원회(State Biodiversity Boards, SBB)'로부터 생물자원 접근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이다. 이 통지에는 마감시한이 적혀있다. 일부 주들의 경우, 제약 산업계가 압력에 못 이겨 비용을 지불했으나 이익을 유보한 지불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인도 국내기업들이 ABS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이에 대해 인도 아유르베다 관련 단체들이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NBA: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에 분명하게 규정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는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였다.

ABS 적용 여부를 떠나, 인도 자국기업들에게 적용되는 ABS 절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색 지대가 존재하며 SBB는 이러한 근본적인 사항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요구하는 업계에게 다른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인도 생물다양성법 제7조에서 "인도에 거주하는 국민"만이 SBB에 생물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접근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그러나 2014년 발표된 최근 가이드라인에는 생물다양성법 제3조(국가생물다양성당국의 접근허가), 제4조(허가를 결한 연구결과와 이전행위), 제5조(협동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예외), 제6조(허가를 결한 연구결과와 지식재산권 출원 신청)의 내용만 다루고 있다. '아유르베다 제약협회(ADMA)'에게 자문을 준 법률 회사들은 이러한 신규 규정들이 "외국 기업에만 해당되어 순수 인도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분석은 '주 생물다양성기금(State Biodiversity Fund)'의 구성을 다룬 제32조를 통해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제32조에는 기금 수익에 대해 3가지 출처만을 언급하고 있어 ABS 로열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21조는 'ABS 비용을 요구하는 NBA의 역할은 생물다양성법 제3조에 따라 외국 기업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순수 인도 기업들은 SBB를 통해서만 ABS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SBB의 기능을 다룬 제23조와 제24조에는 순수 인도 기업들에게 이익공유를 부과할 SBB의 권한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당국으로부터 서면 답변이 없는 가운데, '아유르베다 제약협회'는 2014년 규정을 자체적으로 해석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원문출처 : <http://www.pharmabiz.com/NewsDetails.aspx?aid=90034&sid=1>



인도 국가생물다양성당국(NBA,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은 2002 생물다양성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제40조 아래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고시(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 고자 2015년 8월 29일 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인도의 2002 생물다양성법에 따르면, 인도의 중앙정부는 국가생 물다양성당국과 협의하여, 본 법의 조항이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거래 되는 생물자원을 포함한 항목에는 적용되는 않음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0월에는 의약식물, 향신료, 원예작물(과일, 채소, 구근류, 화해류 등) 등 190개 종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으로 고시한 바 있다.

이번 고시(안)에는 생물다양성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426 종의 생물자원 및 물품에 대한 목록이 담겨있으며, 생물종의 학명만 나열되었던 기존 목록과 달리, 생물종의 학명, 거래/상품명, 생물체 부위(식물 전체, 종자, 뿌리, 줄기 등), 출처(재배, 야생 등) 등으로 구분되어 목록화되어 있다.

인도의 2002 생물다양성법은 인도 국민이 아닌 자 등은 연구, 상업적 이용 또는 생물조사 및 생물 이용을 위해 국가생물다양성당국의 사전 허가없이 인도에 존재하는 생물자원 또는 그와 관련된 지식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인도에서 획득한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 또는 정보에 기초한 발명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신청하기 전에 국가생물다양성당국의 사전 허가없이 어떤 명칭으로든 인도 국 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생물다양성당국은 상기 허가를 내어줄 때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생물다양성당국은 법률에 근거하여 “2014 생물자원 및 연관된 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규정 에 대한 지침”을 2014년 11월 21일에 고시한 바 있다.

이 목록에 있는 생물자원 및 상품을 거래하거나 수출하는 자는 국가생물다양성당국의 허가 및 이익 공유 결정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국가생물다양성당국에 자체적으로 신고(Self-declaration)해야 한다.

관련자료 : <http://nbaindia.org/blog/701/3//CommentsSolicitedf.html>



인도 정부가 인도 자생종 및 기타 약초들을 이용해 구강 제품 특허를 따려던 미국 ‘콜게이트 팔모리브(Colgate-Palmolive)’사와 의 두 차례 특허 전쟁에서 승리 하였다. 콜게이트사는 치약과 비누 등 가정용품과 목욕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미국의 기업이다.

인도와 콜게이트 사의 첫번째 특허전은 2008년 9월 29일 인도에서 주방 향신료로 널리 쓰이는 계피(Dalchini)를 포함한 세 가지 약초 추출물이 담긴 제품에 대해 콜게이트 사가 ‘유럽특허등록대장(European Patent Register)’에 청구를 하면서 발생하였으며, 7년간의 장기전으로 이어졌다.

한편 인도는 생물해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인도 전통지식 디지털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TKDL,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Database)’를 구축하였으며 이번 콜게이트 사와의 특허전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인도는 본격적으로 2011년 5월, 인도 정부 출연 기관인 ‘과학 산업 연구회(CSIR, 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의 TKDL을 통해 특허 반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 제출하였고, 올해 6월 유럽특허청이 인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첫 번째 특허전이 마무리되었다.

첫 번째 특허전이 발생한 지 2년 후인 2010년, 콜게이트 사는 또다시 자사 구강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서를 유럽특허청에 제출하였다. 이번에는 육두구(Nutmeg), 생강(Ginger), 바쿨나무(Bakul Tree), 캄퍼(Camphor), 계피(Cinnamon), 강황(Turmeric), 땃골보리수(Indian Banyan), 후추(Black Pepper), 필 발(long Pepper), 인도산 님 나무(Neem Tree), 정향(Clove)을 함유한 구강질환 치료제품을 보호하고자 함이었다.

이 특허 출원 또한 2014년 TKDL이 반기를 들면서 특허전으로 이어졌다. TKDL은 “인도 고대 문헌을 보면 동일한 구강 치료를 위해 이 식물들의 추출물을 이용해왔다는 기록이 존재하여 콜게이트 사의 특허에는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올해 3월 콜게이트 사의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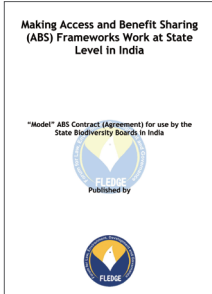
과학 산업 연구회 소속 V. K. 굽타(V. K. Gupta) 과장은 “지금까지 1,500건의 생물해적행위를 파악했으며 그 중 200건에 대해 특허 심사위원들의 점검을 받아 180건에 대한 특허 출원이 거절되었다.”며 “그 외 1,300건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TKDL에는 아유르베다(Ayurveda), 우나니(Unani), 시다(Siddha) 배합체와 인도 약초들의 의약 특성들에 대한 데이터가 담겨있으며 인도가 강황(Haldi), 인도산 님나무(Neem), 바스마티 쌀(Basmati Rice)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인도가 모두 승리하면서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다.

한편 콜게이트 사 외에 앞으로 TKDL와의 전쟁이 예고된 대기업에는 네슬레, 로레알, 유니레버 등이 있다.

원문출처: <http://www.deccanherald.com/content/490282/india-blocks-colgate-patents-spices.html>

인도, 지역의 ABS 모델 계약서(2015) 발간

2015. 8. 5



인도의 법, 환경, 개발 및 거버넌스를 다루는 비영리 단체 FLEDGE(Forum for Law, Environment, Development and Governance)는 인도 지역별 국가 생물다양성 이사회[SBB, The State (provincial) Biodiversity Boards]의 ABS 계약 업무를 돕기 위해 "국가차원의 ABS 모델계약서 [Mak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ABS) Frameworks Work at State Level in India: "Model" ABS Contract (Agreement) for use by the State Biodiversity Boards in India]"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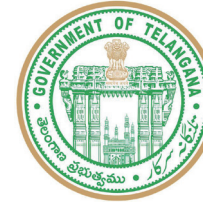
인도에는 현재 총 29개의 '지역별 국가생물다양성 이사회(SBB)'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인도 내국민을 대상으로 한 ABS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9개의 SBB는 ABS 협정을 최종화함에 있어 공통된 계약법 원칙들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수요에 따라 개발된 이번 인도 ABS 모델계약서는 총 17개의 조항과 한 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1. 정의, 2. 승인 허가, 3. 양도, 4. 생물자원 접근 조건, 5. 책임 및 배상, 6. 기간 및 계약의 종료, 7. 로열티 및 기타 이익공유, 8. 보고 및 감사, 9. 비밀, 10. 통지, 11. 중재, 12. 준거법 및 관할법원, 13. 면제, 14. 일부 무효, 15. 변경, 16. 완전 합의, 17. 진술 조항).

이 '모델'계약서는 인도 뿐 아니라 현재 ABS 체제를 개발 중인 여러 국가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인도 지역의 ABS 모델 계약서 : <http://fledge.in/wp-content/uploads/2015/01/SBB-ABS-Agreement-Model.pdf>

인도 텔랑가나 주, 살충제 제조회사들과 이익공유 협정 체결

2015. 7. 2



인도 '텔랑가나 주 생물다양성 위원회(Telangana State Biodiversity Board, TSBB)'는 살충제 제조회사인 '마 바가왈티 바이오테크 & 케미컬'(Maa Bhagawati Biotech & Chemicals)社 및 '포압스 바이오테크'(Poabs Biotech Pvt. Ltd)社와 각각 올해 1월과 4월 첫 '이익공유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인도 텔랑가나 주 마하부나가르(Mahabubnagar) 시 코타코타(Kothakota) 마을에서 자라는 박테리아 종인 '바실러스 튠링겐시스'(Bacillus thuringiensis)의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현재 이 두 건 외에도 TSBB는 추가로 네 건의 이익공유협정이 협의 중에 있다. 그 중 하나는 인도 카림나가르(Karimnagar)주 달마푸리 만달(Dharmapuri mandal) 마을의 식물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영국 '왕립식물원(Royal Botanical Garden)'과의 이익공유 협정이다. 그러나 이익공유 협정이 논의되는 이들 기관·기업들이 해외 기관·기업인 관계로 인도 '국가 생물다양성당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의 행정 절차가 요구된다.

인도 '생물다양성 법(Biodiversity Act)'에 따르면 '텔랑가나 생물다양성 위원회(TSBB)'의 관할권 내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은 마을, 지자체, 기업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생물다양성 관리 위원회(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에 지정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생물자원 외에도, 전통지식 및 연구기반 지식의 이전도 '텔랑가나 생물다양성 위원회(TSBB)'의 권한 안에 속한다.

인도 생물다양성 법은 2002년에 정식 발효되었으며, 규칙(Rule)은 2004년에 기틀이 잡혔으나, 주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작년어야 마련되었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텔랑가나 주 생물다양성 위원회(TSBB)'는 생물자원 조달 기업들에게 천 건 이상의 공지를 한 바 있다. 위원회는 규정에 반하는 기업들을 제재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관련 기업들과 조화롭게 협력하고 그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 차원의 ABS에 대한 미디어 인식제고 워크숍이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워크숍에 참석한 이시왈 푸잘(Ishwar Poojar) '국가생물다양성당국(NBA)' 프로젝트 매니저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보석불가(Non-bailable)이며 엄중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도의 이익공유 협정 현황을 보면, 거대 산업 단지를 형성한 '구자라트(Gujarat) 주 위원회'에서 47건의 협정이 체결돼 '생물다양성 관리 위원회'에 650만루피(한화 약 1억 1,300만 원)가 납부되었다.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주와 '텔랑가나(Telangana)주의 경우 각각 두 건의 이익공유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웨스트 벵갈(West Bengal)주에서 한 건이 체결되었다.

관련기사 : <http://www.thehindu.com/news/cities/Hyderabad/companies-pay-little-heed-to-biodiversity-act/article7324163.ece>

인도 국가생물다양성당국 : <http://www.nbaindia.org/>

인도정부, 생물자원에 대한 로열티 공시

2014. 11. 21



2014년 11월 21일, 인도정부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국가생물 다양성총국 :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가 지난 6년간 18번의 초안 작업 및 인도 '국가녹색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의 재촉을 통해 올해 8월 최종 마무리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의 생물자원 상품 공장도 가격 총 매출을 3구간(1,000만 루피 이하, 1,000~3,000만 루피, 3,000만 루피 이상)으로 설정하여 각각 0.1%, 0.2%, 0.5%의 이익공유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인도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02년 '생물다양성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을 통과시켰으며 그 후 2004년에 '생물다양성시행령(The Biological Diversity Rules)'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들과 공유해야 할 수익 정도를 안내 받기까지는 시행령 제정 이후로도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인도는 이번에 공시된 가이드라인 아래 연간 2,000~2,500억 루피(한화 3조 6,000억원 정도)를 이익공유 로열티로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 로열티는 인도 '국가생물다양성기금(National and State Biodiversity Funds)'과 자원 및 전통지식을 제공한 토착지역공동체에게 돌아가게 된다.

관련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의 국가생물다양성총국 공시 : http://nbaindia.org/uploaded/pdf/Gazette_No_tification_of_ABS_Guidlines.pdf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나고야의정서: 자바데칼 인도 환경부 장관

2014. 7. 14



“생물다양성 보전에 인센티브를 창출할 나고야의정서가 7월 14일 50 개국 비준을 완료했다.”고 인디아투데이(India today)가 전했다.

인도는 2012년 10월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제11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1)'의 개최국이자 올해 한국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2)'가 열리기 전까지 당사국총회 의장국 지위를 이어간다.

프라카쉬 자바데칼(Prakash Javadekar) 인도 환경부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ABS 나고야의정서가 이제 90일 뒤인 2014년 10월 12일 발효를 앞두고 되었다.”고 발표했다. 자바데칼 장관은 “역사적인 나고야의정서를 조속히 발효시키는 것이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말하며 “인도는 의장국으로서 지난 21개월 동안 정치적, 외교적 채널을 통해 의정서 비준 가속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환경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나고야의정서 사안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6월 16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CBD 회의에서 비디오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6월 26일 나이로비에서 열린 UN 환경총회에 참석하여 당사국들의 의정서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나이로비 UN 환경 총회에 참석한 자바데칼 장관은 인도와 마찬가지로 나고야의정서를 조기 비준한 여러 상대국들을 만나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바데칼 장관은 이번 51개 CBD 당사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은 ‘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겟’ 달성에 대한 최초의 성과이자 목표 시점보다 1년 앞당긴 놀라운 쾌거”라고 했다. (아이치 타겟16: “2015년까지 나고야의정서를 발효, 실행 한다.”) 장관은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는 데 인도가 중추적 역할을 다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도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2011년 5월 11일 나고야의정서를 서명하여 2012년 10월 9일 비준하였다. 인도는 자국내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을 통해 국가 차원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계획하고 있다.

ABS 나고야의정서는 CBD의 지원 아래 협상을 거쳐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0)'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자(연구자, 산업계)와 제공자 모두에게 더 큰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여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라는 CBD 목표에 상당히 기여한다.

자바데칼 장관은 “나고야의정서의 경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이용을 장려하고 자원 이용에서 나오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기회를 늘림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다.”며 “이는 나아가 생물다양성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돕는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나고야의정서 발효는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그림출처 : <http://indiatoday.intoday.in/>

원문출처 : [zeenews\(http://zeenews.india.com/news/eco-news/nagoya-protocol-to-help-protect-biodiversity-javadekar_948140.html\)](http://zeenews.india.com/news/eco-news/nagoya-protocol-to-help-protect-biodiversity-javadekar_948140.html)

인도, नेपाल의 생물다양성 및 ABS 규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2014. 1. 24



기후변화가 세계 문제로 떠오르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생물다양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 및 식물 유전 자원의 접근·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제 조약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조약들이 제 기능을 하기 위

해서는 개별 국가들의 국내법 이행이 필요하다.

인도 Fritjof Nansen Institute(FNI)의 연구과제 책임자 Leif Christian Jensen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식물 종 다양성이 위협 받고 있다. 지난 세기 많은 중요 식량자원이 사라졌으며, 유전 물질 이용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가 제기되고 있다.”

네팔 SAWTEE(South Asia Watch On Trade, Economics and Environment, in Kathumandu, Nepal)의 연구자인 Tone Winge과, 인도 FNI의 Anitha Ramanna-Pathak 박사는 인도와 네팔의 생물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한 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네팔과 인도 정부가 식물 유전 다양성을 어떻게 보전하고 개발하는지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 프로젝트 “기후변화 적응, 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국제적 목적: 인도와 네팔의 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NORGLOBAL’(노르웨이) 2012-2015년 프로그램의 기금 후원으로 진행된다.

인도는 선두에 위치, 네팔은 많은 해결과제 남아

본 연구 프로젝트는 국제 조약들이 네팔과 인도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와 이러한 이행 조치가 지금까지 양국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사하였다. 인도는 이 분야에 선두 국가로 손꼽힌다. 반면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서 정치 불안정을 겪고 있다. 또한 네팔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이미 농업 분야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주변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하는 풍부한 식물 유전 다양성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양국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한다. 인도는 국제 협상에 활발히 임하고 국제 조약의 국내법적 이행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Tone Winge는 말한다.

반면에 최근 네팔은 정치 불안정과 정부의 잦은 변화로 장기적으로 계획한 새로운 국내법 채택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FNI와 SAWTEE 연구자들은 양국의 국제 조약 이행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시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최종 이용자(End Users)들과의 소통은 해당 연구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며 의사소통을 통해 최종 이용자들이 스스로 이행 절차에 기여하고 정보 및 연구 결과를 보급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연구 중간에 나온 결과들을 전파하는 데 초점을 맞추으로써 우리의 연구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가 아닌 바로 지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Tone Winge는 말했다.

본 연구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표는 인도와 네팔의 경험을 배움으로써 그 결과를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SAWTEE의 Puspa Sharma 연구부장은 “본 연구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얻게 되는 가

장 중요한 혜택은 선진국(노르웨이), 개발도상국(인도), 최빈개발도상국(네팔)간의 지식과 경험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이는 상기 3개국뿐 아니라 식물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이익공유, 관리 관점에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원문출처 : <http://phys.org/news/2014-01-biodiversity-india-nepal.html>

인도 밀(Galatea) 분쟁 사례

2013. 4. 5



인도 전통 빵인 ‘차파티’(Chapatis)에 들어가는 ‘Nap Hal’이라는 밀 변종은 ‘Galatea’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다국적 기업인 유니레버(Unilever)와 몬산토(Monsanto)는 인도의 생물 자원을 이용하고 활용한다는 어떠한 사전허락도 없이 1991년 유럽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2003년에 등록하여 직접적인 이용을 위한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였다. 하지만 2004년 인도의 NGO인 과학·테크놀로지·생태를 위한 연구재단(Research Foundation for Science, Technology and Ecology)과 국제적인 비정부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가 이를 재판에 회부하여 이 특허는 무효로 판결되었다.

인도 강황(Turmeric: Curcuma longa) 분쟁

2013. 1. 18



인도는 10월 9일, 피지는 10월 24일에 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에 비준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나고야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는 8개국이었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를 이행하고자 하는 나고야 의정서는 2011년 2월 2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의 서명 기간 중, 총 92개국이 서명하였다. 나고야 의정서는 50번째 국가의 비준서가 제출된 다음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앞으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 모두에게 더욱 확실한 법적 기반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비준국 정보는 <http://www.cbd.int/convention/parties/list/#tab=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에서 개최된 지역원주민협회 세미나 보고서 발행, '지역 보전을 위한 원주민의 역할'

2012. 12. 21



인도에서 열린 제11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기간 중 10월 13일에 개최되었던 '아이치 목표 실행에 있어서 지역 보전을 위한 원주민의 역할' 세미나의 결과 보고서가 발행됐다.

CBD사무총장과 지역원주민협회(ICCA'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y Conserved Territories and Areas), 인도·필리핀·세네갈·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정부, 생물다양성 포럼, UNDP, 국제 보전협회 등이 참석하였고 ICCAs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과 제안들이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아이치 목표 실행에 있어서 지역 보전을 위한 원주민의 역할'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다. 토착민 보호지역은 대부분이 자연보호지역이고 이 지역의 전통지식은 생태계, 종, 유전적 다양성 보전에 상당히 기여해왔기 때문이다. 세미나 결과보고서는 지역 원주민과 토착민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사안에 대해 개인과 지역 사회의 충분하고 적절한 인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착민 지역과 천연자원에 대한 명백한 권리
- 국제 기구들의 인식
- 광산 등 주된 파괴 활동을 제외하는 권리
- 다양한 문화, 생활양식, 경제체계의 관점
- 지역민에 의해 보호지역을 근거한 보전 관련
- 토지이용과 개발, 기술,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

원문출처 : <http://www.cbd.int/doc/pa/icca-day-report-en.pdf>

인도와 피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

2012. 11. 2



인도는 10월 9일, 피지는 10월 24일에 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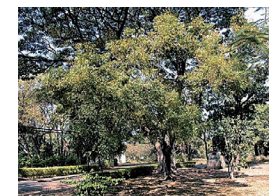
나고야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는 8개국*이 되었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를 이행하고자 하는 나고야 의정서는 2011년 2월 2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의 서명 기간 중, 총 92개국이 서명하였다. 나고야 의정서는 50번째 국가의 비준서가 제출된 다음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앞으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 모두에게 더욱 확실한 법적 기반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비준국 정보는 <http://www.cbd.int/convention/parties/list/#tab=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고야의정서 비준국(2012. 10. 31)
요르단, 가봉, 르완다, 세이셸, 멕시코, 라오스, 인도, 피지

인도 님나무(Neem) 분쟁 사례

2014. 12. 12



인도의 생물인 님나무는 잎과 종자의 수많은 약효성분으로 인해 '기적의 나무' 또는 '마을 약국'으로 불리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피부 질환, 고열, 질병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꽃은 아로마 향기와 함께 양질의 꿀을 생산하며, 목재는 가구나 연료로 사용되고, 추출물은 살충제와 같은 곤충방제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님나무로부터 유래된 물질을 특허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1994년 미국 농무성(USDA)은 님나무의 오일로부터 만들어진 살균제(Fungicide)에 대한 특허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유럽특허 사무소는 이 같은 특허는 이미 수십 년간 인도와 그 밖의 지역에서 사용되어 온 전통지식이라고 판단하여, 2000년 5월 이 특허를 취소하였다.

관련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의 국가생물다양성총국 공시 : http://nbaindia.org/uploaded/pdf/Gazette_Notification_of_ABS_Guidelines.pdf

인도네시아 자무(Jamu) 분쟁 사례

2012. 8. 24



자무는 우리나라의 '약초'와 같은 의미로 인도네시아 자생생물로 제조한 약재를 말한다. 2천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황실에서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약 1천 가지의 민간요법과 2천 가지의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의 화장품회사 시세이도는 자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11건의 미백을 비롯한 51건의 특허출원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 국에 신청하였다. 특허가 성립될 경우, 전통적으로 자무를 재배해 온 인도네시아의 소규모 농가가 오히려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이에 2000년 초 인도네시아 NGO인 Biotani Indonesia Foundation이 반대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시세이도의 특허출원을 생물해적질로 규정하고 워크샵, 기자회견, 일본현지 언론과의 접촉 등으로 항의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같은 민간의 반대운동을 적극 지지한 결과 시세이도는 2002년 특허출원을 철회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응용청 - 일본 메르시안(Mercian)사 미생물자원 공급 계약 체결

2012. 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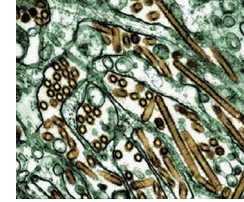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미생물을 이용하여 신약을 공동개발 중인 메르시안(Mercian)사는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응용청(BPPT)의 직할 연구소인 Biotech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미생물자원을 탐사하여 일본 제약회사에게 신약개발을 위한 미생물 자원을 공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메르시안은 인도네시아 전지역에 걸쳐 미생물 자원 채취 계약을 체결하여 채집 미생물은 배양이 가능하지만, 국외 반출은 파생물의 일종인 추출물(엑기스 형태)만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추출물이 유전적 기능단위를 가진 생물이 아니어서 증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생물 자체가 유출되지 않으므로 자원 제공국도 안심할 수 있으며, 장래에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어느 자원을 활용했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이 계약을 통하여 개발된 신약은 없었지만 2004년부터 추출물 15,000개체를 일본 관련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임상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있으므로 향후 제품화가 기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조류 독감 바이러스 분쟁

2012. 6. 22



세계에서 조류독감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인도네시아의 정부는 2007년 인체에 감염된 조류 독감 바이러스의 국외반출 금지법을 제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바이러스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제공이 선진국 기업에게는 백신을 개발 하여 이익을 내는 수단이 되고 선진국 국민들은 이 백신으로 조류 독감을 예방할 수 있지만, 정작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비싼 백신 가격으로 인접종할 가능성이 낮아 자국의 혜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2010년 10월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인도네시아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신약개발에 저렴한 가격에 백신을 공급하고 추후 선진국과 백신판매 등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면 세계보건기구(WHO)에 인체 병원균(Pathogene)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림설명 : 상피유사세포에서 자란 조류독감 바이러스 (금색부분)

일본 농림수산업, 나고야의정서 관련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 촉진 워크숍」 개최

2015. 3. 4

農林水産省

일본 농림수산업성은 '2014년도 농림수산업의 유전자원 이용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미쓰비시 UFJ 리서치&컨설팅'과 협력하여 "해외 식물 유전자원의 이용 촉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위험 요인 감소 조치와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워크숍은 일본 4개 지역(도쿄, 2.13; 나고야, 2.12; 센다이, 3.5; 오카야마, 3.6)에서 개최되며, 종묘, 화훼기업(육종담당자), 개인 육종가, 식물 육종 분야를 담당하는 대학,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외 식물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시 취해야 할 방법에 대한 기초 강의 및 현재 당면한 위험을 줄이고 향후 취해야 할 방안에 대한 서로 간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일본 농림수산업성은 워크숍 참가 전에 농림수산업에서 발간한 ABS 안내서(평가판)를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 그 외 필요한 정보, Q&A에 추가하고 싶은 질문 등 여러 의견들과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부탁하였다.

원문출처 : http://www.murc.jp/seminar/murc/t_150212.pdf

일본 농림수산성,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한 식물 육종 안내서(평가판)' 발간

2015. 3. 4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식물 육종 및 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기업, 대학, 연구 기관, 개인 육종가 등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지난 2014년 3월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한 식물 육종 안내서-식물 유전자원의 획득 및 이용 가이드 베타버전'(평가판)을 발간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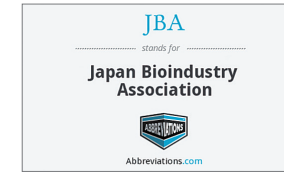
안내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고려하여, 해외 식물 유전자원의 육종 시 유의사항과 질의응답(Q&A), 그리고 부록에는 정부 인허가 등 사전통보승인(PIC) 취득을 위한 고려 목록과 상호합의조건(MAT) 계약 시 권장 요소가 수록되어져 있다.

이번 안내서는 특별히 평가판으로 제작되었으며, 일본의 식물 육종·연구 현장에서 실제로 직면한 어려움에 입각하여 더욱 도움이 될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성은 일본 내 진행되는 ABS 관련 워크숍에 참가하는 기업, 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번 안내서(평가판) 배포와 동시에 안내서의 개선사항, 추가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접수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ABS 안내서 : http://www.maff.go.jp/j/kanbo/kankyo/seisaku/pdf/tebiki_100.pdf

일본바이오산업협회, 'EU ABS 규칙 및 산업계 대응'에 대한 세미나 개최 예정

2015. 2. 19



'일본바이오산업협회(Japan Bioindustry Association, JBA)'는 2015년 2월 19일, 'ABS 나고야의정서 이용자 의무준수 조치에 대한 EU 규칙' 및 그에 따른 산업계의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JBA 학사회관 320호실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어질 'EU ABS 규칙'은 지난해 EU가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역내 조치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의 합의를 거쳐 2014년 4월 제정되었으며 2014년 6월 발효되었다.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일부 조항은 1년간의 유예 거친 뒤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EU ABS 규칙' 아래 이행 법률(Implementing Acts)들이 검토되고 있으나 일본바이오산업협회(JBA)는 "특히 '이용(Utilization)'에 대한 해석, EU 역외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된 제품도 EU 시장에 출시할 경우 신고(Declaration)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JBA 세미나에서는 '지식재산 부문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EU ABS 규칙 등을 다양한 산업분야의 입장에서 다년간 연구해 온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전문가를 초빙하여, EU ABS 규칙과 그에 따른 산업계의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EU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원문출처 : https://ssl.alpha-prm.jp/jba.or.jp/pc/activitie/development_base/guidance/001665.html

EU ABS 규정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4R0511>

일본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동향

2015. 1. 30



일본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조기 비준을 목표로 국무회의를 통해 부처 간의 협의를 이루어내고 있다. 환경성의 주도 하에 14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나고야 의정서 관련 국내 조치 방향 검토회'가 2012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6회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공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일본의 국내조치 방향 검토회의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준수에 관한 국내조치
(기본개념/국내외 상황/적용 범위/점검기관/불이행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2. 유전자원의 주권적 권리행사의 필요성
3. 보급개발 및 이용자 지원
4. 국내조치와 관련된 기타 사항
5. 국내조치의 검토 향후의 진행 방식

일본의 국내 조치 방향 검토회의에서는 일본의 국내 조치 도입의 시기가 불분명하여, 급하게 의정서에 비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가 이용국에게는 적정하게 유전자원을 감시하는 시스템이고 이용자에게는 제공국의 법률 및 규칙을 지킴으로써, 유전자원을 적절하게 취득하는 당연한 절차로 감시체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여되는 의무라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에 당사국인 일본의 입장에서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권리의식을 강화해야 하며, 각 기관에 따라 해외유전자원 접근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관련 내용 : <http://nagoya-protocol-academic.sakuraweb.com/about.html>

일본 '시세이도' 사 특허 분쟁/페루 '마카(Maca)' 분쟁

2012. 4. 20



일본 화장품회사 시세이도는 인도네시아에서 야생 허브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 등에 관한 51건의 특허를 취득했으나, 현지 비정부민간단체(NGO)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의 기준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는 위법한 이용이 없었지만, 시세이도는 기업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2002년 특허를 철회하였다.

세계자연보전연맹 일본위원회 -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양해각서 체결

2011. 12. 19



国際自然保護連合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CBD사무국과 IUCN일본위원회(IUCNJ)는 일본 및 해외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생물 다양성의 인지도를 높이고 생물다양성 10년 전략계획과 아이치 목표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체결식은 12월 19일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열린 UN생물다양성 10년 선포식과 함께 개최되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체결기관은 생물 다양성에 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니주마루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역정부, 민간부문, 청소년, 학계 등의 단체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니주마루 프로젝트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성취를 위해 일본이해 관계자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고자 하는 캠페인의 일환이다.

일본, 유엔 생물다양성 10년(2011-2010) 선포

2011. 12. 17



12월 17일 유엔대학은 일본 가나자와시에서 CBD 사무국과 함께 주관하여 유엔 생물다양성 10년을 선포하였다.

유엔 생물다양성 10년 선포는 일본이 가장 먼저 제의하여 제65차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후,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유엔 생물다양성 10년 선포의 목적은 생물다양성 10년 전략계획의 첫번째 목표인 2020년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아카사카 기요타카 유엔공보국(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차장은 CBD 및 생물다양성 관련 협약 당사국과 유엔 회원국, 민간 분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물다양성 10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연설했다. 또한 아흐메드 조그라프 CBD 사무총장은 “향후 10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모두가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때에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본에서 열린 유엔 생물다양성 10년 선포식은 한국, 인도, 필리핀, 쿠바,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에서도 개최되었다.

[중국]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공시

2014. 10. 30



중국은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2014년 10월 30일 공시하였다. 환경보호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농업부, 임업부, 중국과학원 뿐만 아니라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각 직속 단위에게 통지한 내용은 대외 교류 및 협력 대상 생물유전자원 관리 강화 및 이익공유 촉진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강화 내용을 다루고 있다.

1.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2. 대외 교류 및 협력 사업의 관리 강화
3. 대외 교류 및 협력 사업 시행의 감독 및 관리 강화
4. 대외 교류 및 협력 사업 성과의 추적 감독 및 관리 강화
5. 대외 교류 및 협력 중 생물유전자원의 수출 행위 규범화

특히, 본 통에서는 대외 제공 생물유전자원의 사업 계약 시 유전자원의 출처, 연구목적, 향후 이용 등에 대해 정보를 밝힐 것과 지식재산권 공유, 기술 이전 및 기타 이익을 구현하는 이익공유 배분을 강화할 것, 그리고 제삼자 양도의 제한 조건과 이익공유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대외 교류 및 협력 사업은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원문출처 : http://www.mep.gov.cn/gkml/hbb/bwj/201411/t20141105_291155.htm

태국 자생식물 프에라리아 미리피카(Pueraria mirifica) 사례

2013. 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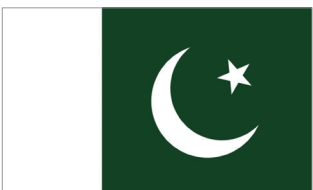


태국 북부 산악지대에 생육하는 식물 ‘프에라리아 미리피카’는 멜라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전통지식으로 널리 이용돼왔던 식물이다. 일본의 하쿠초 제약과 코세 화장품은 이러한 효능이 있는 ‘프에라리아 미리피카’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1999년 일본과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프에라리아 미리피카’ 추출 엑기스를 함유한 피부외용제를 판매했다.

당시 하쿠초 제약과 코세 화장품이 출원한 특허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특허에서 농축액의 출처가 ‘동남아시아에 생육하는 식물’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태국의 전통지식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었다. 더구나 태국에서는 ‘프에라리아 미리피카’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원료를 제3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국가적 조치 외에도 전통지식 활용, 생물유전자원 접근제한 등 ABS 관련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처럼 ‘ABS 국제규범 강화’는 생물유전자원을 많이 이용하는 화장품 업체에게는 매우 중요한 위험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파키스탄 나고야의정서 가입

2015. 11. 23



지난 2015년 11월 23일 파키스탄이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하여 2016년 2월 21일부터 파키스탄에 나고야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파카스탄의 가입으로 현재까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196개국 중 69개국, 이 나고야의정서의 비준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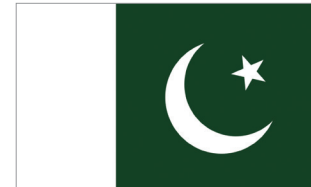
파키스탄은 기후변화부를 나고야의정서 연락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책임기관 및 점검기관의 정보는 아직까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림출처 : <http://legaltrigger.com/images/37734241876.jpg>

원문출처 :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city/nagpur/Castor-units-will-have-to-share-benefits-with-locals/articleshow/49851506.cms>

파키스탄, 나고야의정서 곧 비준 조짐

2015. 8. 5



파키스탄 법무부, 외교부, 내각, 야생동물 부서 등 모든 유관 부처들이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제출,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진행할 것에 동의함에 따라 파키스탄이 곧 의정서를 비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부 소속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부 장관이 연방 내각의 최종 승인을 위해 비준안을 제출할 것이며 이슬람의 이드 알피트르 휴일(Eid al-Fitr Holiday) 이후 내각의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나임 아샤라프 라자(Naeem Ashraf Raja) 기후변화부 생물다양성과 과장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 개발을 구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보장한다.”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파키스탄은 1994년 생물다양성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2009년에 비준, 나고야의정서는 비준 준비 중이다.

관련 기사 : <http://tribune.com.pk/story/922854/preserving-biodiversity-pakistan-likely-to-ratify-nagoya-protocol-soon/>

국립생물자원관, “남아공의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체계” 국문판 발간

2015. 8. 28



국립생물자원관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체계: 제공자, 이용자 및 규제당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8월 발간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6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자국 내에 효력이 발생되자 1998년 국가환경관리법(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107 of 1998)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에는 생물다양성법(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10 of 2004)을 제정한 바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법은 자국 토착생물자원의 생물탐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이해당사자 간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그 목적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생물다양성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2008년에는 생물자원 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Regulations on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을 공포하였으며, 2015년 5월 19일에는 생물자원 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을 개정(Amendments to the Regulations on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하였다.

이번에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 체계”는 201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에서 발간한 “South Africa’s 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Regulatory Framework: Guidelines for Providers, Users and Regulators”를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제공자, 이용자, 규제당국 각각 측면에서 남아공의 생물다양성법 및 생물자원 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정 이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 남아공의 생물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 산업계는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관련 적용 범위, 절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각 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정책의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어, 타 국가의 생물자원 이용 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협약 관련 전문가양성을 위한 한-중 국제세미나 개최

2015. 7. 22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 협약 대응 역량강화와 전문가 양성을 위해 22일 중국 베이징 중국 중앙민족대학에서 ‘한-중 ABS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난징환경과학연구소, 중국농업과학원, 중앙민족대학교 등 중국 측 ABS 관련 전문가들과 한국의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

학교, 숭실대학교에서 ABS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한-중간 국제적 수준의 역량제고와 지속적 연구 협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ABS 관련 국가 입법’, ‘ABS 사례 연구 및 국가 실천 사례’, ‘한-중 및 아시아 ABS 협력’의 3개 세션에 걸쳐 총 9개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공개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중앙민족대학의 Xue Dayuan 교수의 진행으로 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ABS 입법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원목 교수의 진행으로 아시아의 ABS 입법 현황과 기업 규제 환경,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제(GMBSM) 현황 및 도전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 작물과학원 Yang Qingwen 교수의 진행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ABS 협력과 투자 증진, 분쟁 해결에 대한 발표와 ABS 관련 프로젝트 및 ABS-CH 관련 정보 교류 협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중국 중앙민족대학 교수 겸 난징환경과학원 수석 과학자인 Xue Dayuan 박사는 “중앙민족대학은 그 동안 환경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중국 내 55개 소수 민족들을 위한 학교로 성장해왔다”며 “이번 한-중 ABS 국제세미나가 작년 CBD COP 12와 COP-MOP 1을 개최한 한국과 생물다양성 부국인 중국간의 ABS 관련 국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해외 유전자원 이용과 대응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5. 5. 26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덕철)은 국립생물자원관 후원으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외 유전자원 이용과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5월 26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하였다.

중국의 ABS 법제 대응현황(전북대학교 양효령 교수), 중국의 ABS 정책 대응현황(남미화 중국변호사), 중국의 ABS 행정절차 현황(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부연구위원) 등 나고야의정서 발효(‘14. 10. 12) 이후 중국의 법적, 정책적, 행정적 대응현황과 최근 동향을 살펴 보았고,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지난 3월 영국 ABS 법안이 영국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EU 이행지침에 따른 영국의 이행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입법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강명수 제주대학교 교수는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적절한 이익공유를 보장하는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을 체결할 때 도움이 되는 “ABS 예시계약서”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유전자원의 주요 수입국중 하나인 중국의 최근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제약산업, 화장품산업 등 바이오산업계의 중국 ABS 체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유전자원의 이용국의 입장에 있는 영국의 입법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이용국 입장에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국제 세미나 개최

2015. 5. 20

초대의 글

“생물다양성협약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라는 3대 목적을 가진 생물다양성협약이 1993년에 발효되면서 생물자원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었던 시대는 가고 생물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생물주권의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더불어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가 실질적으로 구체화되면서 세계는 “생물주권 강화” 및 “생물자원 확보 경쟁”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다자간 국제협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 협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생물다양성협약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 세미나가 국내외 관계자들의 협력을 확대·발전 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장 김 상 배

국제 세미나 개요

주제 : 생물다양성협약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International Seminar on Multilateral Cooperation on Biodiversity

일시 : 2015년 5월 20일(수), 14:00 - 17:00

장소 : 나인트리 컨벤션 3층 테라스홀(서울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프로그램

| 일정 | 내용(안) | 발표자 |
|---------------|---|--|
| 13:30 - 14:00 | 등록 | |
| 14:00 - 14:10 | 환영사 | 김상배(국립생물자원관장) |
| 14:10 - 14:50 | 기조연설 | MR. Braulio F. de Souza Dias (CBD 사무총장) |
| 14:50 - 15:10 |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력 강화 | 이병윤 과장(국립생물자원관) |
| 15:10 - 15:50 |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 | 이병윤 과장(국립생물자원관) |
| 15:50 - 16:10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국적 협력과 한국의 역할: 생물다양성 협약을 중심으로 | 박용하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16:10 - 16:30 | 휴식 | |
| 16:30 - 17:00 | 종합토론 MR. Braulio F. de Souza Dias (CBD 사무총장), Dr. Ryo Kohsaka (일본 가나자와 대학), 박용하 박사(KEI), 이병윤 과장(자원관), 이윤(선문대), 오선영(숭실대) | 좌장 최원목(이화여대) |

* 세미나는 동시 통역으로 진행(국내 발표자는 한국어로 발표)

국립생물자원관, 제12차 한국 ABS 포럼 개최
- 제약산업 지원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예시 계약서 -

2015. 4. 28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4월 28(화) 강남구 역삼동 GS 타워 강당에서 「제12차 한국 ABS 포럼: 제약산업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예시계약서」를 개최한다.

이번 제12차 한국 ABS 포럼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2014.10.12)되면서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통보 승인 절차 및 적절한 이익공유 보장 등 여러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에 따라 산업계, 특히 제약업계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본 포럼에서는 바이오협회, 제약기업 및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한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예시계약서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외에도 제약협회, 화장품협회 및 바이오협회원들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제12차 한국 ABS 포럼

일시 : '15.4.28, 장소 : GS 타워 25층 강당

| 일정 | 내용(안) | 발표자 |
|---------------|---|-------------------|
| 13:30 - 14:00 | 등록 | |
| 14:00 - 14:05 | 개회사 | 국립생물자원관장 |
| 14:05 - 14:10 | 축사 | 한국제약협회장/한국바이오협회장 |
| 14:10 - 14:30 | 제약, 바이오 및 화장품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인식현황 | 협회 |
| 14:30 - 15:30 | 예시계약서 | 제주대 강명수 교수 |
| 15:30 - 16:00 | 제약기업의 계약 형태 | 휴온스 엄기안 전무 |
| 16:00 - 16:20 | 휴식 | |
| 16:20 - 17:20 | 종합토론 강명수(제주대 교수), 엄기안(휴온스 연구소장), 조영재(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신병철(생공연 박사), 조용백(한국콜마 연구소장), 권태복(광운대 교수) | 좌장 ABS 포럼 회장 |
| 17:20 - 17:30 | 맺음말 |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서민환 센터장 |

한국바이오협회,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업계 설명회 개최

2015. 3. 5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는 환경부 및 국립생물자원관 후원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업계 설명회를 3월 5일(공동 주최: 춘천바이오 산업진흥원) 및 3월 11일(공동 주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국립생물자원관 이병희 연구관)”, “나고야의정서와 국내 이행 법률의 이해(환경부 윤은정 사무관)”, “중국의 생물 유전자원 대외교류협력 정책(김명아 한국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사례(송실대학교 오선영 교수)”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3월 11일 설명회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의 의약·바이오 특허(특허청 김정아 사무관)”라는 주제가 추가로 발표되었다. 관련 설명회는 3월 19일, 충북테크노 파크에서도 추가로 열린다.

(사)대한화장품협회, 나고야의정서 업계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

2015. 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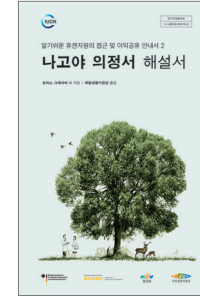
(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지난 2월 25일, 화장품 업계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제고와 의정서 발효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나고야의정서 업계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였다. 환경부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화장품 제조업자, 원료

업자 등 30여개 기업의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사)대한화장품협회 교육원의 최상숙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설명회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국립생물자원관 이병희 연구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사례(송실대학교 오선영 교수)”,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화장품 업계의 대응방안”(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차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특히, 해외로부터 원료업자를 통해 원료를 구매하는 화장품 업계의 특성상, 원료업자의 사전통보승인 여부와 상호합의조건 체결 등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해설서 번역본 발간

2014.12.12



국립생물자원관 ABS 정보서비스센터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이해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2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영문으로 출판한 “나고야의정서 해설서”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나고야의정서 해설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의 개념, ABS 협상과정 등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의정서 각 조항에 대한 배경 및 자세한 해설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해설서는 의정서 조항의 배경 및 그 의미에 대하여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어,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널리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용어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더 평이한 용어로 나고야의정서를 해설하고 있어 나고야의정서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정보 서비스를 위한 누리집 새 단장

2014. 11. 14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상배)은 2012년에 운영을 시작한 ‘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http://www.abs.go.kr>)’을 관련 정보공유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를 폭넓게 공급하여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새 단장했다.

기존 누리집에서는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채택과정”, “국내의 동향”, “뉴스레터” 등 의정서에 대한 간략한 정보만 제공하였으나, 나고야의정서가 발효(‘14.10.12) 됨에 따라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생물산업계, 바이오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높이고, 역량강화 및 정보 공유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되어 “나고야의정서 조문별 해설”, “분쟁 사례”, “국가별 ABS 관련 정보”, “자주하는 질문” 등 의정서 관련 산·학·연 이해관계자들이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정보가 대폭 강화되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1년 1월부터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여 관련 정보공유 및 이해관계자 인식제고를 위해 ABS 정보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서비스센터는 제약, 건강기능식품 및 바이오산업 등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분야의 한국 ABS 전문가포럼을 개최하고 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국제법 관련 변호사, 지적재산권 관련 변리사, 생물다양성 및 생명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답변을 해주는 ABS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대응 방안을 위한 산·학·연 공동 세미나 개최

2014. 11. 12



지난 11월 12일 국립생물자원관, 숭실대학교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유전 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대응방안을 위한 산·학·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12) 이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외의 예시계약서 동향파악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명수 제주대학교 교수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예시계약서(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윤나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 연구원 박사는 일본의 경우 일본바이오협회와 일본화학공업연합회 등 산업단체가 정부부처에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의정서에 대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 비준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7차 생물자원보호 연석회의('14.10.17)'와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 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14.10.30)' 등 최근 중국의 정책과 법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 분석하였다. 또한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는 EU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평가 및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김순웅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특히에 이용된 생물자원의 유용성 정보를 파악하고, 해외수입대상 생물자원의 대체가능한 생물자원을 도출할 필요성에 대해 'ABS 대응 대체 유전자원 발굴'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앞으로도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산·학·연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체계적,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비롯해 한국 ABS 포럼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아이치타겟 달성을 위한 생태계 보전·복원 워크숍 제주서 개최

2014. 7. 14



7월 14일부터 5일간 제주도에서 중앙·남·동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겟(Aichi Biodiversity Targets) 달성을 위한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역량개발 워크숍'이 개최중이다. 영어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생물 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사무국과 'UN식량농업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가 주관, 한국 정부와 캐나다, 독일, EU, 일본 정부가 후원하는 가운데 개최 중이다. 회의 관련 자료들은 CBD 홈페이지(<http://www.cbd.int>)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번 워크숍은 '아이치생물다양성 타겟' 중 타겟5, 11, 15에 초점을 맞추어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당사국들의 다음의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http://www.cbd.int/champions/targets/>)

1. 아이치생물다양성 타겟5, 11, 15 체제 내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국가적 목표 및 계획 수립
2. 이러한 국가적 목표와 계획을 최근 개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및실행계획(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 Action Plan, NBSAPs)'에 통합하고, 폭넓은 국가 정책 및 계획,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 poWPA)'내 주류화
3. 생태계 보전·복원을 적정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정책, 계획 도구들의 활용

'아이치생물다양성 타겟5, 11, 15는 자연서식지 손실을 줄이고 보호지역 네트워크를 향상하여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국제적 목표들이다. 아이치 타겟5는 자연서식지의 손실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겟11은 육지, 육수 지역의 최고 17%, 해양, 연안지역의 최고 10%를 보호하자는 내용이다. 타겟15는 훼손된 생태계의 최소 15%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지역 기반의 타겟들은 달성될 경우 다른 아이치 타겟(예: 타겟7, 12, 13, 14, 18)에 연달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겟5, 11, 15 달성에는 일관적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CBD 사무국은 이번 제주도에서 열리는 워크숍을 통해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당사국들에게 생물다양성 경관 수준의 총체적인 기획과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량개발 워크숍은 사무총장에게 전달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다양한 요청들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당사국총회 '결정문 XI/24(Decision XI/24)'에는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oWPA)'의 국가적 행동계획 이행을 돕는 워크숍 및 여러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

다. 또한 당사국총회는 ‘결정문 XI/16(Decision XI/16)’에서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역량개발 워크숍 수행을 위해 UNEP/CBD/COP/11/INF/17,18,19문서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자고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앞으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CBD 사무국이 ‘NBSAPs과 관련 분야별 계획, 예산 내에 poWPA 행동계획 통합’이라는 당사국들의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원문출처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http://www.cbd.int/doc/notifications/2014/ntf-2014-060-ecr-en.pdf>)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2014. 10. 23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한 국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10월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지난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22일 대통령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법률(안)에는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유전자원 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 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및 신고, 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된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입법 진행 사항은 국회정보시스템의 의안정보(<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지역 워크숍’, 인천 송도서 개최

2013. 5. 20



생물다양성협약(CBD) 지역 워크숍이 5월 20일부터 4일간 인천 송도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생물다양성 5차 국가보고서와 지역 시나리오 분석을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는 CBD사무국 담당자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50여명의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디아즈 CBD사무총장은 영상으로 전달한 개회사에서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될 5차 국가 보고서는 CBD 생물다양성 전략계획(2011~2020) 이행에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2014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CBD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목표에 대한 중간 검토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아즈 총장은 이어 “내년 CBD당사국총회가 열리는 평창은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매우 아름다운 도시”라며,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당사국총회가 2020년 아이치목표 달성에 필요한 여러 조언을 제공하는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아즈 총장은 또한 5차 국가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12차 당사국총회의 의미 있는 성과를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제시간에 5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국 대표들이 이번 워크숍을 통해 5차 국가보고서 준비 과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가보고서 논의 외에도 향후 발간될 ‘제4차 세계생물다양성전망(GB0-4)’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GB0-4는 국가보고서와 기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는 만큼 이번 워크숍에서의 국가보고서 논의가 GB0-4 발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시아는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으로 아시아 지역의 생물다양성 파괴 속도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디아즈 총장은 이에 대해 “천연자원의 지나친 남용,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산림파괴, 동·식물 불법 해외반출, 외래종유입, 기후변화와 같은 모든 요소들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번 워크숍이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한 각국의 역량강화에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 세계 각국 행사 열려 우리나라, 상암 월드컵 평화공원서 기념식 개최

2013. 5. 22



5월 22일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각 국가에서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함께 생각해보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관으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물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2013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물소리, 풀내음이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5월 22일 상암 월드컵 공원에서 열리는 ‘2013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Arid Forest Research Institute(AFRI)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물과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소규모 강연, 씨앗심기,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덴마크는 5월 17일 덴마크 역사박물관에서 ‘생물다양성탐사(BioBlitz)’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식물, 곤충, 포유류 등 다양한 분야의 생물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 학생들이 함께 코펜하겐 중심에 위치한 공원에서 생물다양성을 탐색하게 된다. 중국은 ‘생물 다양성과 자연보전관리’를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로 정하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 5월 22일 하루 동안 26개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 외 자세한 각국의 기념행사 소식은 <http://www.cbd.int/idb/2013/celebra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기술보고서 제38권 국문 번역판 발간

2012. 9. 7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해외의 적용사례와 이행 과정에서의 고려사항을 국내에 알리고자 생물다양성협약 기술보고서 제38권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사례 연구’의 번역서를 발간하였다. 원서는 2008년 사라 에어드(Sarah Laird)와 레이첼 윈버그(Rachel Wynberg)가 작성하여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 발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국과 이용국간의 이익공유에 관한 협정 체결과 이행 경과를 상세히 설명한 7가지의 해외 사례와 생물다양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시장 동향 조사 등이 실려 있으며,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1권 개관

주요 산업 분야 개관/분야별 핵심 사항

• 제2권 사례 연구

- 사례 연구 1 호주 퀸즈랜드의 그리피스대학-아스트라제네카: 천연물 발견을 위한 파트너십
- 사례 연구 2 케냐야생생물청, 국제곤충생리생태학센터, 노보자임스와 다이버사: 바이오공학산업 분야
- 사례 연구 3 에티오피아 생물다양성보전연구소, 에티오피아 농업연구기구, 그리고 네덜란드 헬스앤퍼포먼스푸드인터네셔널: 테프(Tef) 사례
- 사례 연구 4 볼 원예관과 남아프리카 생물다양성연구소
- 사례 연구 5 호주 샌들우드: 아베다-마운트 로망스-서호주 원주민 지역사회의 자원공급 파트너십
- 사례 연구 6 네츄라, 브라질: 개인 미용 및 화장품 산업분야에서 전통지식 이용과 지역사회의 ‘생물물질’ 자원공급
- 사례 연구 7 후디아의 상업적 개발에 대한 ABS 협정

• 제3권 생물다양성의 상업적 이용

자연과 더불어 건강한 미래를 -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에서 열린다

2012. 9. 6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이 주최하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IUCN World Conservation Congress, WCC)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9월 6일 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자연 보전 총회는 IUCN이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회의로서, 환경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회의이다.

세계자연보전총회는 1948년 IUCN 회원총회로 시작되어 총 22회가 개최되었다. 1996년 캐나다 몬트리올총회부터는 세계자연보전 총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다양한 환경 주제를 논의해왔다.

올해 제주에서는 기후변화, 식량안보, 녹색경제, 자연의 공평한 이익공유, 자연의 가치평가 및 보전이라는 주제로 세계보전포럼, 세계리더스대화, 회원총회, 공식투어, 홍보관 등이 진행되며, 148세션의 워크숍, 46세션의 보전캠퍼스, 115세션의 지식카페, 136개의 포스터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세계자연보전총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1948년 비영리·비정부기구로 출발하여 현재는 국가, 정부기관 및 비정부 기구의 연합체로 발전하여 80개 국가회원, 116개 정부기관, 840개 비정부기구, 29개 제휴기관이 가입된 세계 최대의 환경단체이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제주도,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등 31개 기관과 단체가 가입하였다.

나고야의정서 의무이행 제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12. 3. 8

나고야의정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자국 내 지침을 공유하는 국제심포지엄이 3월 8일에서 9일까지 일본 도쿄 유엔대학에서 개최된다.

일본 외무성과 유엔대학 부설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CBD) 사무국과 노르웨이, 브라질, 에디오피아, 영국, 유럽연합, 인도, 한국, 호주의 관계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의무이행을 위한 각 국가의 국내 제도 구축과 운용 현황 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심포지엄과 동시에 진행되는 비공식 회의에서는 자국내 지침에 필요한 요소와 고려사항에 대해 심층 논의하며, 다자간 이익배분 시스템(의정서 제10조)과 의정서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 및 제도(의정서 제 30조)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개최를 위해 발족된 기구인 '제2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 준비를 위한 사항을 토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관련 법률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나고야의정서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의 개요, 운용 경험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10월에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지금까지 92개국이 서명하였으며 2개국이 비준한 상황이다. 국제심포지엄의 참석을 원하는 국가대표나 관계전문가들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http://isp.unu.edu/events/2012/symposium-on-the-nagoya-protocol.html>).



EU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을 위한 ABS-int 홈페이지 개설

2015. 11. 5



올해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고 EU ABS 규칙(European Regulation(EU) No 511/2014)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면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 및 학계를 지원하기 위한 EU ABS-int 홈페이지가 신규 오픈되었다.

ABS-int는 과학, 법률, 규제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팀으로, 유전자원을 연구, 개발하는 대학 연구자 및 다국적 기업의 과학자들이 나고야의정서와 EU규칙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나아가 PIC와 MAT 초안마련 및 협상능력 향상을 돕고자 창설되었다.

상상을 돕고자 창설되었다.

토마스 바넷 ABS-int 과학 자문위원은 “연구자들의 구체적인 수요에 맞춘 실용적 시스템을 파악하고 이상적인 유전자원 결과물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도미닉 뮐더만스 ABS-int 법률 자문위원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그들이 생물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이러한 신규 ABS 체계가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연구하고 있다.”며 “그들이 생물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방해(Blocking)받지 않으면서 관련 ABS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의무준수 메커니즘을 신속히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는 여러 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이번 ABS-int 창설에 대해 패트릭 뤼데스하임 ABS-int 규제 자문위원은 “ABS 체계의 공식화로 과학, 지식재산, 계약 및 규제 사항 간의 경계선을 새롭게 정립하는 신 규제 영역이 만들어졌다”며 “따라서 이를 위한 다방면의 학제적 접근(Multi-Disciplinary)이 요구되며 이러한 역할을 ABS-int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ABS-int는 EU 내에서 운영되며 여러 관할권에서 동일한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ABS-int 관련 워크숍을 계획하였다. 현재 4차례의 워크숍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2015년 12월 11일 ABS 및 EU규칙에 대한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림출처 : <http://www.abs-int.eu>, <http://www.abs-int.eu/en/how-can-we-help>

원문출처 : <http://flandersbio.be/news/asb-int-supports-organizations-in-dealing-with-access-and-benefit-sharing-o/>

EU 집행위원회, EU ABS 시행 세칙 채택

2015. 10. 13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규칙 (EU) 제511/2014호」에 대한 이행규칙이 2015년 10월 13일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행규칙은 2015년 11월 9일에 발효된다.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ABS 위원회(ABS Committee)'의 지원으로 개발된 이번 이행규칙은 EU 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50개의 기관들의 추가 의견들을 모아 개발되었다.

이행규칙에는 '모범관행 등록부'와 '컬렉션 등록부', '이용자 의무준수 점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EU ABS 규칙 511/2014」의 적용범위를 다룬 지침 문서가 개발 중이며, 추가 분야별 지침 문서들은 2016년에 개발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지침문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향후 열릴 포럼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포럼은 2015년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원문출처 : http://ec.europa.eu/environment/nature/biodiversity/international/abs/legislation_en.htm

EU 집행위원회, ABS EU 규칙 워크숍 개최

2015. 9. 2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EU 규칙의 의무사항 및 실질적 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EU ABS 규칙 워크숍(EU ABS Regulation Workshop)'을 개최할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EU 규칙은 2014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제4조(이용자의 의무), 제7조(이용자 의무준수 감시) 및 제9조(이용자 의무준수 점검)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컬렉션 등록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규칙인 "ABS 규칙의 이행규칙"을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워크숍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EU ABS 규칙의 주요 조항들을 살펴봄으로써 EU 규칙으로 인한 새로운 ABS 체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적인 사례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사례 연구를 발표하여 서로간의 ABS 경험과 교훈을 축적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2015년 9월 14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집행위 환경총국에서 1차 워크숍을 시작하여, 10월 13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지도학·지질학 연구소, 10월 16일에는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11월 6일에는 프랑스 파리 메종 드 라 시미 재단, 11월 20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 : <http://www.euconf.eu/abs/en/registration/index.html>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식물육종가연합의 EU 나고야의정서 이행 규칙 무효확인 소송 각하

2015. 5. 18



지난 5월 18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는 2014년 7월 28일 독일 식물 육종가 컨소시엄이 제기한 EU 나고야 의정서 이행규칙 511/2014(이하 EU 규칙)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사건번호 T-599/14)를 각하했다. 유럽사법재판

소는 신청자가 경쟁규칙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적격을 결여하였다고 판시했다. 한편, 네덜란드 식물 육종가 컨소시엄도 2014년 7월 28일 동일한 취지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사건번호 T-560/14). 식물 육종은 새로운 식물 품종을 개발하는 데 있어 유전자원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현재 두 식물 육종가 컨소시엄 측은 그들의 육종 산업이 EU 규칙 이행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독일의 식물육종가 컨소시엄은 “EU 규칙이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5조 제1항 3호 및 「유럽공동체 식물품종권리에 관한 유럽이사회 규칙 2100/94」 제15조에 근거한 ‘육종가의 권리(Breeder’s Rights)의 예외조항’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럽이사회 규칙 2100/94」제15조는 (c)항에서 ‘육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다른 품종을 발견하거나 개발하는 행위에는 유럽공동체식물품종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식물 품종의 발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호 신품종에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에 대한 의무도 없다. 그러나 EU 규칙은 이용자에게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를 탐색·보관·이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독일 육종가들은 “이러한 예외규정이 유럽식물육종산업의 ‘성공의 열쇠’였으며 식물육종산업은 생물다양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EU 규칙에 의한 이 ‘예외규칙’의 손상은 식물육종가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EU법과 국제법 하의 기타 EU 의무들과도 충돌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EU 규칙에서 규정된 의무준수 관련 조항은 그 적용이 균형적이지 못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유전자원의 이용이 종료된 후 20년 간 정보를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은 식물육종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전자원에 대한 상세정보를 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과중하기 그 지없는 항구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독일 식물육종가 컨소시엄은 EU 규칙이 세 가지 영역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유전자원의 ‘이용자(User)’ 정의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유한 유전자원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둘째, EU 규칙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럽이사회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식물육종가들은 현재 채택된 EU 규칙의 문구가 여전히 모호하여 잠정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셋째, EU

규칙 하에서 산업계 모범관행을 채택하는 것은 고작 의무비준수(Non-Compliance) 상황에 처할 위험을 줄여주는데 불과할 뿐, 여전히 의무비준수 상황을 전적으로 피할 수 있는 명확한 조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EU 규칙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희망했던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럽사법재판소는 신청자들의 소송적격에 대해서만 심리하고 결정했다. ‘특히 EU 규칙의 의무사항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는 식물육종가 컨소시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식물육종가 컨소시엄이 EU 행정법의 기준에 따른 다른 종류의 제소권자로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경쟁 규칙에 대한 법적 이익을 제기할 소송적격성을 결여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즉, EU 규칙과 같은 법률의 경우, 이 규칙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관련된 자”가 소를 제기해야 하나, 신청자들은 EU 규칙에 개별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신청자들에게 제소권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현재로서는 이번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여지가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번 판결은 EU 규칙에 대한 소를 제기하려는 시도에 있어 큰 타격을 주었다. 만약 유전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산업계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보다는 유전자원에 덜 의존하는 다른 업계가 제소에 성공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성공적인 제소를 위한 기준이 매우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EU 규칙이 개정 없이 발효되는 것이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식물육종 관련 산업계를 넘어서 폭넓은 산업계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출처 : en.wikipedia.org

관련 기사 보도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ef1f6e41-1dfc-4933-a66e-07ad27097a4b>

유럽사법재판소의 사건 T-559/14 관련 자료 : <http://curia.europa.eu/juris/liste.jsf?language=en&jur=C,T,F&num=t-559/14&td=ALL>

국제상공회의소, EU ABS 규정에 따른 ABS 이행준비 워크숍 개최

2014. 11. 24



국제상공회의소(ICC)는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들 간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 ABS 규정의 의무 준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업 대상 ABS 워크숍을 개최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워크숍은 ABS 관련 신규 EU 규정이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R&D 기업, 무역 협회, 관련 기관에 미칠 영향과 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준수 사항,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법적, 재정적 결과 등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U ABS 규정에 영향 받는 유전자원 바탕의 제품을 생산, 개발, 분배하는 기관, 기업 내 R&D·의무 준수·법률사무·공급망·소싱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주요 참가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ABS 전문가들이 기업들과 함께 1) 적용범위, 의무준수, 이용자 의무, 적절주의 의무, 제재 등 EU ABS 규정 핵심 개관, 2) 모범관행, 도전과제 및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 3) 실천적 학습을 통한 의무준수 모의 체험 등의 활동을 하였다.

원문출처 : <http://www.iccwbo.org/Training-and-Events/All-events/Events/2014/Working-out-ABS-preparing-to-comply-with-the-new-EU-rules-on-Access-and-Benefit-sharing/>

나고야의정서 유럽의회서 647표로 통과... 2014년 발효까지 '청신호'

2014. 3. 18



유럽의회가 647표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나고야의정서를 통과시켰다.

나고야의정서는 연구자 및 기업들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과 공유를 결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 협정이다.

유럽의회는 이번 나고야의정서의 30번째 비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 블록(Bloc)법에 따라 EU는 회원국 전체로서 의정서를 승인할 법적 권한을 지니며 이를 위해 유럽의회는 승인이 일반적인 법적 절차로서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럽의회 비준을 나고야의정서 발효의 중요한 행보로 보고 있다. 즉 유럽의회 이번 비준은 28개 회원국들의 개별적 비준에 물꼬를 터줌으로써 2014년 10월에 열리는 CBD COP12에 맞춰 의정서가 발효되는 데 상당한 탄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유럽의회, EU ABS규정(EU Regulation) 승인

같은 본회의 기간 중 유럽의회는 상당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EU 내 나고야의정서 이행 규정을 승인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제약 당사국들의 국내법 차원의 접근 조치, 이익, 의무준수 조치 마련을 명시하고 있다. EU규정은 EU 및 EU회원국들이 생물다양성 부국으로 손꼽히는 브라질, 남아프리카, 인도등과 상호 협상 시 최소한의 ABS 요구조건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의회의 결정에 대해 '생물교역을 위한 연합(UEBT: Union for Ethical Biotrader)'의 마리아 줄리아 올리바는 "이번 가결로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식품, 화장품 산업의 R&D 방식에 상당한 영향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EU 법규들은 모범관행(Best Practices)들을 기반으로 한 적절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구축하여, R&D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반드시 유전자원 접근 및 ABS 의무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하고 있다. 이들의 의무준수 여부가 불확실 할 경우 특정 허가증을 획득하거나 자원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유럽제약산업연합(EFPIA: 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은 이번 EU규정에 대해 "due diligence를 도입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혁신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으며, 유전자원의 책임 있는 이용 및 의무준수를 도모하여 이용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해준다"며 이번 의정서 비준과 EU규정 승인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EFPIA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시의 적절하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의무준수를 규제하는 것에는 여러 도전과제가 뒤따를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계절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시의 적절한 접근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번 새 규정에 대해 더욱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들은 이번 규정이 전통지식 보호에는 기여하지 못하며 "특히 출원에서의 원산지 공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점검기관 마련에 실패

했다.”고 비평했다. 특정 전문가들은 EU 규정의 due diligence 체제가 상당부분 ‘법적 추정’에 근거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이익공유 감시에 상당한 격차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 우려를 제기했다.

그림출처 : en.wikipedia.org

원문출처 : <http://ictsd.org/i/news/biores/186933/>

* **적절주의 의무(due diligence)**

생물자원 관련 기업이나 단체가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여 최선을 다해 ABS규제의무 (Requirement)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이러한 의무에는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유전자원을 법적으로 획득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수집·보관하여 다음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의무가 있다.

EU, 유전자원 공유에 대한 신규 규정 도입

2014. 2. 14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각료이사회(The Council)가 환경위원회의 지지를 받아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규정에 합의했다. 이 유전자원 관련 규정안은 토착지역 공동체가 보유한 전통지식도 그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유럽의회를 통한 입법 절차를 지휘하는 상드린 벨리에(Sandrine Belier, 프랑스 녹색당) 의원은 협상에 대해 “협상은 매우 힘들었다. 일부 회원국들이 생물다양성에 호의적이지 않았다”며 “기대한 것보다는 (법률안)규모가 줄어들었으나 금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CBD COP12 참석을 통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EU 규정은 민간 생물자원 수집기관과 기업들, 학술 연구자, 과학 기관 등의 유전자원 이용자들에게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합법적으로 접근하고, 유전자원 활용을 통해 얻어진 이익이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아래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점검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번 규정은 식물, 동물, 미생물과 실제적, 잠재적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유전자원으로서 고려하도록 명시하였다. 생물다양성은 과학연구, 기술 적용, 건강식품, 식료품, 화장품 등 혁신의 창고가 된다. 이 새로운 규정 아래, 이용자들은 유전자원의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의무준수 인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주 공급자들인 수집기관들이 반드시 유럽집행위원회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EU등록(Register)에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EU 국가들은 이번 입법과 함께 유전자원 이용자의 의무준수를 확인하는 책임기관들을 지정하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설립할 예정이다. 한편 EU 국가들은 유전자원의 모든 파생물이 규정안에 포함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있어, 이번 EU 규정의 범위는 의회가 원래 기대했던 것 보다는 좁아졌으며, 유전자원 접근에 엄격한 조건과 패널티 적용을 요구하는 유럽위원회의 요구에 각료이사회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 규정은 51(찬성): 0(반대)와 3(기권)으로 통과되었다.

그림출처 : en.wikipedia.org

원문출처 : <http://www.balkans.com/open-news.php?uniquenumber=187787>

EU, 유전자원의 국제거래관련 법적 규제 가까워져

2013. 10. 25



지난 9월 12일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안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를 통과함에 따라 EU 내 유전자원 국제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차츰 가까워질 전망이다. 통과된 법안은 유전자원 발굴 및 상업화, 전통지식 활용을 감독·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EU 내 모든 기업과 단체들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법안에 적용되는 생물자원에는 유전자원과 천연물에서 파생되는 생화학 합성물까지 포함된다. 이 법안은 이런 생물자원을 둘러싼 개발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약품, 생명공학제품, 농산품, 영양제, 첨가제, 화장품, 향수, 공업용 효소제, 심지어 재생에너지를 위한 천연 바이오매스까지에도 효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유전자원 및 천연 파생물(합성물)을 활용하는 해당 기업과 단체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EU ABS법안은 회원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모든 지역의 유전자원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승인된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모두 적용된다. 유전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Users)는 반드시 관련 정부의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이익 공유도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일반 원자재 거래는 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EU ABS 법안 채택을 위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협의가 11월 중·후반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유럽이사회를 통과하면 EU와 EU 회원국들이 모두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는 것이 되며, 이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시기를 앞당기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시기가 늦어도 2014년 가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현재 나고야의정서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미국 기업들은 EU 및 기타 다른 국가들의 ABS법안과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러 국가와 비 정부단체에서는 '세계무역기구(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RIPS)' 수정에 더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들은 유전물질 및 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의 출처를 공개할 수 있도록 TRIPS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원문출처 :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265480/Patent/Restrictions+Governing+International+Trade+In+Genetic+Resources+Move+Closer+To+Adoption>

EU ABS 법안 유럽의회 통과

2013. 9. 12



2013년 9월 12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해외유전자원의 연구 및 상업적 활용(화장품, 제약 개발 등)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수정안은 2012년 10월 유럽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의회에 제출한 규칙(Regulation)을 수정한 것으로 규칙에는 나고야의정서의 이행과 이를 통한 상업적 가치를 지닌 생물종

보존 및 유전자원 제공 지역사회의 정당한 대우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France)에서 찬성 606, 반대 22, 기권 5표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수정안에는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 유전자원의 범위와 조건이 좀더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불법 취득한 유전자원의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유전자원을 이전할 수 있는 '이용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서 '유전자원 이용자'란 연구나 상업 목적으로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및 기관을 의미한다.

유럽의회 상드린 벨리에(Sandrine Belier, 프랑스 녹색당) 의원은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 "연구에서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유전자원 활용을 추적하고, '유전자원약탈(Biopiracy)'을 퇴치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유럽종자연합(The European Seed Association, ESA)'은 "누구든지 규제 없이 자유롭게 연구 및 품종개량 등의 상업화를 위해서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던 EU의 '개방형 자원(Open Sources)' 모델이 이번 수정안으로 인해 약화되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유럽 기업들의 유전자원 활용의지를 꺾어 자원 활용을 통한 이익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이사회 의장국인 리투아니아는 이에 대해 "2013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유럽의회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U ABS 법안, 유럽의회 검토 - 논의중

2013. 8. 2



유럽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가 2012년 10월에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와 EU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 제출한 나고야의정서 이행 ABS 법안 초안에 대한 수정안이 2013년 5월 30일 마련되었다. 이 수정안은 2013년 7월 4일 유럽의회 환경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이 10월에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EU ABS 법안은 유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타국의 유전자원을 ABS 법안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환경단체 'Berne Declaration'과 'Natural Justice'는 각각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유럽집행위원회의 ABS 법안이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취득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만을 법안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나고야의정서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은 이미 세계 유전자원의 상당수를 소장하여 활용 중이다. 유럽의회는 "EU ABS 법안은 법안 발효 전에 사용됐던 유전자원도 모두 ABS 체제에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이 권고 사항에 따르게 되면 유럽에서 사용하는 모든 유전자원이 점진적으로 ABS 규제 범위 안에 속하게 된다.

두 환경단체는 "현재 진행중인 나고야의정서 채택과정에서 의정서 일부 구절에 대해 저마다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가 모두 나고야의정서의 본래 취지에 맞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원문출처 : <http://www.ip-watch.org/2013/07/03/questions-arise-over-eu-draft-regulation-to-implement-nagoya-protocol/>

네덜란드 기반 다국적기업 DSM, 생물다양성 정책 방침

2015. 11. 16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생명과학, 소재과학 다국적 기업인 DSM은 2015년 11월 16일 발표한 정책에서 생명과학기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협약(CBD) 목표를 지지하며 부속협약인 카르타헤나의정서와 나고야의정서에 충실할 것임을 밝혔다.

- 자연자본 및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한 인식 증진
- 보호지역에 대한 DSM의 영향 분석 및 모니터링
- 영향평가 개발
- DSM의 활동에 따른 영향 저감 목표 설정
- DSM의 활동의 영향 완화 수단 개발
- 투자 결정에 있어 자연자본의 고려(탄소가격정책 등)
-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조
- CBD의정서들의 준수

DSM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정책방침으로 밝혔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업 책임의 핵심부분으로 인식하여 천연 자원을 이용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발표했다.

그림출처 : https://www.dsm.com/content/dam/dsm/cworld/en_US/documents/position-paper-biodiversity.pdf

원문출처 : https://www.dsm.com/content/dam/dsm/cworld/en_US/documents/position-paper-biodiversity.pdf

네덜란드 국가연락기관 바헤닝언 대학연구소 유전자원센터(CGN)

2015. 10. 7



네덜란드의 국가연락기관(NFP) '바헤닝언 대학연구소의 유전자원센터(CGN)*'에서는 기업, 연구소, 교수, R&D 종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부터 유전자원 이용 관련 계약의 필요성 및 사유, 유전자원 제공국내 책임기관을 찾는 방법 등 다양한 ABS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네덜란드 유전자원센터(CGN)'는 네덜란드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의 국가연락기관이 되었다. CGN은 네덜란드 정부를 대표해서 농업, 산림에 중요한 생물종 규명 및 유전 다양성 관련 정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책임기관(CNA)으로는 네덜란드 경제부산하 농림자연총

국이 지정되어 있다.

베르트 비서르 (Bert Visser) 네덜란드 생물자원센터 센터장은 "제공국의 책임기관에 접근할 경우 현지내 기존 연구협력체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권고되나, 이런 경우에도 제공국의 규정미비, 연락처 불분명, 회신 없음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적절주의 의무(Due Diligence) 이행을 위해 여러 가지 경로로 접근을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비서르 센터장은 "ABS 이행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전자원이용 기관이 해당 분야의 모델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지난 2015년 2월 의회에 제출된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은 2015년 9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여, 네덜란드는 곧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할 것으로 사료된다.

관련 내용 : <https://www.wageningenur.nl/en/newsarticle/National-Information-point-on-new-EU-regulations-for-the-use-of-biodiversity-.htm>
https://www.eerstekamer.nl/wetsvoorstel/34141_goedkeuring_nagoya_protocol

* the Centre for Genetic Resources, the Netherlands (CGN) of Wageningen UR

네덜란드 정부, 하원에 나고야의정서 비준안 제출 및 이행 법률 제정 중

2015. 3. 5



네덜란드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2015년 2월 4일 하원에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을 제출하였으며 2015년 3월 5일 관련 분과위인 경제분과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Affairs)에서 의견 수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비준안은 하원의 투표를 거쳐 상원으로 넘겨지며 국왕과 발의한 장관의 서명을 받아 법무부에 의해 공포되게 된다. 또한, 네덜란드는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률 [Voorstel van Wet-Regels ter implementatie van het Nagoya Protocol(Wet implementatie Nagoya Protocol)]을 제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준안 제출 관련 자료 : <http://www.tweedekamer.nl/kamerstukken/detail?id=2015Z01836&did=2015D03743>

이행 법률 제정 관련 자료 : <http://www.parlementairemonitor.nl/9353000/1/j9vvij5epmj1ey0/vjr5uf91z1za>

선진국 최초로 노르웨이,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3. 10. 1



노르웨이가 선진국 중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노르웨이는 2013년 5월 의정서에 서명한 후, 6월에 노르웨이 의회의 만장일치로 의정서 비준이 확정되었다. 이에, 2013년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열린 UN Treaty Event에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하이키 아이즈볼 홀모스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장관은 “유전자원 이익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많은 선진국들이 의문을 갖는 가운데 노르웨이가 가장 먼저 (비준에) 앞장서게 되어 자랑스롭다.”고 밝혔다. 또한, 홀모스 장관은 “노르웨이는 이미 ‘생물다양성 보존법(Nature Diversity Act)’을 제정하여 국내차원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해서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르웨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노르웨이 유전자원 접근 및 활용, 관련 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여러 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볼드 베갈 솔리헬 노르웨이 환경부 장관은 이번 비준에 대하여 “노르웨이의 비준은 환경 문제를 인류 공동 문제로 규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르웨이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원문출처 : <http://www.tnp.no/norway/panorama/4024-norway-has-ratified-the-nagoya-protocol>

덴마크 노보자임 사, 케냐야생생물청에 이익공유 협정으로 첫 로열티(26,000 USD) 지불

2014. 11. 28



덴마크 바이오기업인 ‘노보자임(Novozymes)’사는 케냐 바린고주 보고리아 호수 근처의 케냐 지역민에게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로열티로 230만 실링(미화 약 26,000달러)을 지불하였다.

노보자임은 유명한 세탁제제 ‘타이드(Tide)’의 생산 업체로서 타이드는 주로 돌을 이용한 청바지 특수 워싱 과정에 사용되는 표백제로 유명하다. 바로 이 타이드에는 케냐 보고리아 호수의 열수·증기에서 발견한 박테리아의 유효성분이 함유되어있다.

‘케냐야생생물청(Kenya Wildlife Service, KWS)’은 2007년 6월 덴마크 노보자임과 생물다양성 연구·개발에 대한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에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노보자임이 케냐 보호지역의 미생물 다양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있다. 협정 조인식에서 노보자임은 “이번 협정이 나고야의정서의 원칙들에 따른 것”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여 협정에 따라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생물 균주를 바탕으로 한 제품을 개발해 상업화할 경우, 케냐야생생물청에게 제품 판매에 대한 마일스톤 지급과 러닝 로열티를 지불할 예정이다. 첫 로열티인 26,000달러는 케냐 바링고주 지방청에 지불되었으며 노보자임은 노보자임 소유의 케냐 특정 균주를 비슷한 조건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요한 멜세이어(Johan Melchior) 노보자임 미디어 홍보 부장은 “케냐야생생물청과의 2007년 협정은 이미 만료되었으며 노보자임은 더이상 케냐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협정과 관련된 제품들을 노보자임이 판매하는 한 로열티 의무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로열티의 경우 연간 단위로 지불된다.”고 덧붙였다.

케냐에는 현재 약 35,000종의 동물, 식물, 미생물 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케냐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으며 (12.2) 케냐 바링고주는 유전자원 이용에 따라 로열티를 받아 이익을 얻게 된 케냐의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케냐는 그동안 유전자원을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여 유전자원이 발견되는 지역 커뮤니티들 간에 자유롭게 이용해왔다. 그러나 생명공학, 제약업체 등 관련 업계에서 유전자원 이용이 증가하면서 유전자원의 이용, 특히 상업적 이용 및 이익공유, 보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케냐 정부는 첫 번째 국가 정책 프레임워크인 ‘전통지식, 유전자원 및 전통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국가정책’을 채택하였다. 이 특허 시스템은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발명을 인식하고, 신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케냐 지역 커뮤니티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포괄적 입법,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유전 자원뿐 아니라 그들의 지적 재산 이용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뿐 아니라 케냐는 헌법 제69조에도 “커뮤니티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의 지적 재산, 전통지식을 보호·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벤자민 체부아(Benjamin Cheboi) 바링고 주지사는 “케냐 지역 커뮤니티들은 신게 받은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림 출처 : Valentina-Storti, Courtesy of Baringo County News

원문 출처 : ip-watch(<http://www.ip-watch.org/2014/11/17/kenyan-community-benefits-from-its-genetic-resources/>)

* **간헐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를 뿜었다가 멎었다가 하는 온천. 화산 활동이 있는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케냐 야생생물청-덴마크 노보자임 사 미생물채집 및 연구 협약 체결

2012. 7. 6



2007년 5월 덴마크 생명공학 기업인 노보자임(Novozyme)은 케냐의 야생생물청(Wildlife Service)과 미생물의 채집, 동정, 특성화 연구를 위해 5년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노보자임사가 협약 이전에 진행되었던 케냐의

생물소재 탐색 프로그램의 결과 개발된 펄프자임(Pulpzyme)의 상업화와 관련한 합의를 공식화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펄프자임은 기존보다 더 적은 양의 염소로 목재펄프를 표백할 수 있는 효소이다.

협약에서 노보자임은 이전까지의 펄프자임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를 케냐 야생생물청에 지급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매출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생물 관련 공동연구 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된 기술이전, 교육 훈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노보자임은 케냐에서 수집한 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독일 연방의회, 나고야의정서 비준안 통과

2015. 10. 15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독일 연방의회는 2015년 10월 15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바바라 헨드릭(Barbara Hendricks) 독일 연방환경부장관은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불법 이용을 저지하고 자연 보전에 기여하는 국제법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독일은 연방환경부를 나고야의정서 상의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연방의회는 이번 비준안과 함께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EU ABS 규칙 511/2014 이행에 관한 법률」,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나고야의정서 이행 및 EU ABS 규칙 511/2014 이행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향후 ‘독일연방자연보전청(The 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이 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되며, 자국 내에서의 ‘유전자원 이용자’가 유전자원 제공국의 ABS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특허법의 개정을 통해 유전자원의 지리적 원산지 정보를 포함한 특허가 출원될 경우 특허청이 이 사실을 독일연방자연보전청에 알리도록 하여 특허 출원 시 특허에 이용된 유전자원의 출처를 확인하도록 하고, 가능한 경우 해당 유전자원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련자료 : http://www.bmub.bund.de/en/press/press-releases/detailansicht-en/artikel/germany-joins-nagoya-protocol-against-biopiracy/?tx_ttnews%5BbackPid%5D=103

독일 내각, 나고야의정서 관련법 승인

2015. 4. 29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Building and Nuclear Safety

지난 4월 29일 독일 연방 내각은 나고야의정서 독일 법률(안)을 의결하여, 독일 의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유럽 연합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EU규정(EU. No 511/2014)을 제정한 바 있

다. 이번에 독일 내각에서 의결된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안)은 EU규정을 독일 내에서 이행·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의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2010.10.14) 법률(안)”과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EU) 규칙 No. 511/2014의 구현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률(안)은 EU 규정을 원안대로 수용하였으며, 독일 내 관할기관 지정 및 권한 등을 추가하였다. 독일 내 관할기관 구성은 독일연방환경부가 총괄하며, 연방자연보호청이 실무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그 외 독일연방농업식품청이 일부 관여하게 된다. 독일의 법률(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의회에서 의결되면 비준서를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다.

독일 연방 내각에서 승인된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 원본 :

<http://www.bmub.bund.de/themen/natur-arten/naturschutz-biologische-vielfalt/natur-naturschutz-biologische-vielfalt-download/artikel/nagoya-protokoll/>

벨기에 나고야의정서 ABS 이행 최종 연구 보고서 발간

2013. 12. 20



ABS는 환경문제를 넘어 시장 접근과 규제, 국제거래, 농업, 보건, 개발협력, R&D와 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망라하고 있다. 벨기에는 향후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자국 여러 부처들의 업무와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벨기에는 ‘CBD 나고야의정서 ABS 이행에 대한 최종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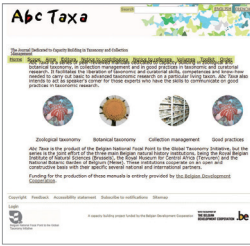
이번 벨기에 ABS 이행 연구보고서는 벨기에의 나고야의정서 비준과 ABS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나고야의정서 이행이 벨기에 국가법과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영향들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로 열람 가능하며 보고서 세부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가책임기관(CNAs)을 지정하고, CNA의 중앙관리체제가 설립되어야 한다.
- 의무준수 조치에 관하여, PIC와 MAT의무 미 준수 사례에 대한 제재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MAT 내용 점검 시 국제사법규약의 조항들이 벨기에 국내법 마련을 위한 대비책으로써 제공되어야 한다.
- 이행 단계에 있어, 점검기관을 통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이용을 감시하는 것은 반드시 ABS 정보교류체계(CHM) 내 PIC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벨기에 유전자원 접근에 관해서는, 보호지역과 보호종에 대한 기존 입법을 정비하고 기타 유전자원접근을 위한 전반적인 통지 의무를 결합시킨다. 이행 후기단계에서는 현지의 보전에 대한 입법의 정비도 포함시킨다.
- 이행 초기단계에서는 이익공유에 대한 전반적인 의무 외에, 구체적인 이익공유 의무를 상호합의조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표준협약(Standard Agreements)이용 가능성을 비롯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은 이행후기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왕립벨기에자연과학연구소(The Royal Belgian Institute of Natural Sciences)’가 ABS정보교류체계(CHM)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ABS에 대한 정보 공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원문출처 : <http://www.biodiv.be/news/study-for-the-implementation-in-belgium-of-the-nagoya-protocol-on-access-and>

벨기에, 생물 분류 관련 'Abc Taxa' 사이트 오픈

2013. 4. 19



동·식물 분류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연구 사례 및 표본 관리에 관한 매뉴얼 'Abc Taxa 사이트(<http://www.abctaxa.be>)'가 신설되었다. 이 사이트는 형태를 대상으로 한 알파분류부터 발전된 분류학적 연구의 방법, 그리고 노하우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지구분류학사업(GTI)의 벨기에 책임연락기관인 벨기에 왕립자연사박물관(Yves SAMYN 박사)의 성과물로, 브뤼셀(Brussels) 왕립 자연과학 연구소, 테르뷔렌(Tervuren) 왕립 중앙아프리카 박물관, 마이제(Meise) 벨기에 국립식물원 3개 자연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작업하였다. 매뉴얼 제작은 벨기에 개발협력(Belgian Development Cooperation)이 후원하였다.

알바니아, 보츠와나, 미크로네시아,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3. 1. 29, 2013. 2. 21, 2013. 1. 30



알바니아공화국, 보츠와나공화국,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이 각각 13번째, 14번째, 15번째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 되었다. 알바니아는 중앙 및 동유럽 지역에서 첫 번째로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였다. 가장 작은 섬나라이자 개발도상국인 미크로네시아는 동일지역의 피지와 세이셸공화국에 이어 비준하였으며, 보츠와나는 아프리카지역의 6번째 비준국이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를 이행하고자하는 나고야의정서는 2011년 2월 2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서명 기간이었으며, 총 92개국이 서명했다. 나고야의정서는 50번째 국가의 비준서가 제출된 다음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앞으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모두에게 더욱 확실한 법적 기반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비준국 정보는 <http://www.cbd.int/convention/parties/list/#tab=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전문은 www.cbd.int/abs/doc/protocol/nagoya-protocol-en.pdf에서 볼 수 있다.

*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요르단, 가봉, 르완다, 세이셸, 멕시코, 라오스, 인도, 피지, 에티오피아, 파나마,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알바니아, 보츠와나, 미크로네시아(2013년 3월 8일 현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나고야의정서 공공정책 발표

2015. 11. 25



심혈관 및 대사질환, 항암, 소화기계, 호흡기계, 정신신경계 등의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 제약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가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한

다는 내용의 '글로벌 공공정책'을 발표하였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글로벌 공공정책에서 "CBD 및 나고야의정서에 명시된 전반적인 원칙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의 적용범위 및 EU 규정에서 명시한 적절주의 의무, 국내 ABS 입법 및 규제요건에 대한 논의과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상공회의소 CBD 테스크포스(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ask Force)의 연락 회원이기도 한 아스트라제네카는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형평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정책 개발의 협의 과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ABS 이행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는 유전자원이 포함된 생물탐사 프로그램에 직접 관련자가 되었을 경우 해당지역의 관련법을 통해 접근을 위한 사전통보승인을 획득하고 상호합의조건을 협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생물탐사에서 획득한 생물 물질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상호 합의된 이용 조건에 따라 자원을 이용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EU 규칙 (Regulation (EU) No. 511/2014)에 따라의 무준수 관련 정보를 탐색 및 보관하고, 제품의 최종 개발 단계에서 요구되는 적절주의 의무 진술서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는 제3자를 통한 유전자원을 획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만일 제공받은 제품이 나고야의정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에 납품하는 제3자가 적절주의 의무를 준수했음을 증명하고, 해당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 관련 접근 규정들을 준수했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공공정책을 통해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플루미스트/플루엔즈(FluMist/Fluenz) 백신 개발에는 WHO가 제공하는 야생형 인플루엔자 균주들이 사용된다. WHO는 'WHO 글로벌 인플루엔자 감시 네트워크(WHO Global Influenza Surveillance Network)'를 통해 야생형 균주들을 제공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균주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에 포함되는 바이러스 균주들은 순환성 균주들과 매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국제 인플루엔자 백신 협회와 협동하여 생산자가 야생종 균주를 수령시 나고야의정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나고야의정서 공공정책 원문 : <https://www.astrazeneca.com/content/dam/az/our-company/Documents/Nagoya-Protocol--May-2015.pdf>

* 1999년 4월 6일, 스웨덴의 아스트라 AB(AstraAB)와 영국의 제네카(Zeneca Group PLC)의 합병을 통해 설립된 영국의 제약 기업. 현재 6개 지역에 102개의 지부를 가진 세계적 그룹으로, 한국에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설립하여 국내시장에 의약품을 출시하고 있다 (출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http://www.astrazeneca.co.kr/>)).

영국 ABS 법안, 의회에 제출되다

2015. 3. 23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영국 환경·식품·농업부(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는 지난 3월 23일, ABS 법안인 “나고야 의정서 (의무준수) 규칙 2015 (The Nagoya Protocol(Compliance) Regulations 2015)”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유럽연합(EU) 회원국에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EU 규칙(Regulation (EU) No 511/2014)의 이행을 위해 제출된 본 법안은 본문 6장과 민사제재와 관련한 절차를 다룬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 법안 제1장은 시행일 및 용어 해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EU 규칙에 따라, 책임 기관, 컬렉션 등록 및 이용자 의무준수 감시 등의 역할을 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부여하였다. 제3장은 장관이 위반과 관련하여 민사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전적 제재의 한도는 정하지 않고, 절차 및 내용을 부칙에 제시하였다. 제4장은 집행에 관련된 규정들로 감독관에게 진입, 수색 및 압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위반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은 제5장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장관이 5년에 한 번 본 법안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제6장에서 규정하였다. 더불어 제1장과 제2장은 2015년 7월 9일부터 발효하며 제3장부터 제6장과 부칙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발효한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본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 결과도 동시에 공개되었으며, 공청회 결과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규칙 : 2015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5/821/pdfs/uksi_20150821_en.pdf

공청회결과 :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biodiversity-implementing-the-nagoya-protocol-in-the-uk>

크로아티아, 나고야의정서 가입서 제출

2015. 9. 2



지난 9월 2일, 유럽연합 회원국인 크로아티아가 나고야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했다. 이로써 크로아티아는 65번째 나고야의정서 비준국(EU 포함)이 되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 중 4개국(덴마크, 스페인, 크로아티아, 헝가리)이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였다.

크로아티아는 현재 환경자연보호부(Ministry of Environmental and Nature Protection)를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3년 6월에 개정된 자연보호법(Nature Protection Act)에 ‘유전자원 이용으로 인한 연구개발 결과의 공정하고 형평한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013 자연보호법에서는 크로아티아에서 현지내·현지의 보존되고 있는 유전물질에 접근하려는 자는 활동목적·접근하려는 생물종·유전자원 이용 상세 내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부처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허가를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적절한 분배를 보장하는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소 25,000 쿠나(Cuna)에서 최대 200,000 쿠나(한화 약 440만 원~3,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까지 13개국 남아

2014. 5. 22



5월 22일 '섬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개최된 '2014 세계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도서 개도국들은 생물다양성의 효과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해 여러 노력을 진행 중이다. "Bright Spots"이라 불리는 이러한 노력들은 도서 생태계를 비롯한 여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앞날을 제시해 준다.

이번 세계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며 사모아를 포함한 4개국이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UN본부에 제출했고 이후 6월 3일 유럽국가로는 5번째로 스페인이 비준서를 제출하였다. 덴마크, EU, 나미비아, 사모아와 스페인의 비준으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는 총 38개국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EU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나 EU의 나고야의정서 승인은 발효에 필요한 50개국 비준에 카운트되지 않기 때문에 발효까지 필요한 비준국 수는 13개국을 남겨놓게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이번 사모아의 비준은 '섬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올해 행사와 연계되는 측면이 있어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사모아는 올해 9월 제3차 군소 도서 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디아즈 CBD사무총장은 "오늘 섬 생물다양성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자연과 화합을 위해 애쓰는 많은 도서 국가 시민들의 노고를 기억한다"며 "이러한 도서 국가들의 구체적인 노력이 섬 생물다양성을 위한 작업 프로그램의 이행을 도울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교훈을 제공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디아즈 총장은 "생물다양성의 날과 더불어 덴마크, EU, 나미비아, 사모아의 비준으로 2015년까지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목표로 하는 아이치생물다양성 타겟 16 달성에 더욱 근접하게 되었다"며 비준을 환영했다. 총장은 이어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CBD-COP 12까지 의정서 발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며 당사국들의 비준을 독려했다.

덴마크와 스페인은 EU 회원국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나미비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5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사모아는 군소 도서개도국 중 6번째 비준국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의 비준은 유전자원 접근 획득과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위해 나고야의정서가 지니는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연히 보여주었다.

'섬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는 2014년을 '세계 군소 도서 개도국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로 지정한 UN의 목표와 일치하자는 차원에서 선정되었다. 2014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www.unep.org/wed/)'은 "해수면을 높이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자"(Raising our voices, not the sea level)를 주제로 섬에 대한 세계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월 22일은 팔라우 대통령과 세이셸 대통령, 그레나다 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한 '세계 도서국가 파트너십(The Global Island Partnership, GLISPA)'을 비롯하여 여러 도서개도국을 위한 세계적 노력들이 강조되었다. GLISPA는 도서 개도국 지도자들을 지원하여 세계적 도전과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섬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계를 도모한다.

원문출처 : <http://www.cbd.int/doc/press/2014/pr-2014-05-22-idb-en.pdf>

아프리카



가나, 올해 안 나고야의정서 비준 계획

2013. 10. 25



아프리카 가나는 2013년 말까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릭 오마닝 오코리 환경과학기술혁신부(MESTI) 부장에 따르면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는 나고야의정서 비준을 위한 관련 법률안을 입안 중에 있으며, 이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외교부에서 비준서를 준비하여 유엔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CBD 사무국은 "최근, 온두라스와 타지키스탄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현재까지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또한, 디아즈 CBD 사무총장은 "온두라스와 타지키스탄의 비준으로 2014년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리는 CBD 12차 당사국총회에 맞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는데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유전자원을 활용해 발생한 이익이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발생 이익 공유를 통한 기회 창출과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및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생물다양성 추구를 위해 전통지식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원문출처 : <http://www.bernama.com.my/bernama/v7/wn/newsworld.php?id=976566>

가봉, 나고야의정서 첫 비준국이 되다

2011. 11. 11



11월 11일, 가봉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첫번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유전자원과 관련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를 이행하고자 하는 나고야의정서는 50번째 비준서가 제출된 후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

국 모두가 더욱 확실한 법적 기반에 따라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11월 15일과 18일, 아르헨티나와 바누아투가 각각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현재 서명국은 68개국이 되었다.

* 비준(Ratification)

정부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가 확인함으로써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비준의사의 표시는 다자조약의 경우, 비준서 기탁으로 행해지고 있음.

기니, 모로코, 키프로스, 소말리아 나고야의정서에 서명

2011. 12. 9



기니(Guinea), 모로코(Morocco), 키프로스(Cyprus)가 2011년 12월에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이후, 소말리아(Somalia)가 2012년 1월 9일에 서명하여 나고야의정서 서명국은 총 73개국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지금까지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생물다양성협약 웹사이트(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미비아 35번째로 나고야의정서 가입

2014. 6. 13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나미비아가 CBD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했다.

5월 15일 나미비아는 윌프리드 엠볼라(Wilfried Emvula) 나미비아 UN대사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가입서를 UN본부에 기탁했다. 쿠아나 슈로더(Kauna Schroeder) 환경 감독관실 관계자는 “나미비아는 35번째 가입국으로서 나고야의정서 공식 당사국이 되었다.”며 “의정서 가입국에는 더 많은 기회와 노력이 동반될 것”이라 의견을 설명했다.

다자간환경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서명을 필요로 하는 비준(Ratification)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입서 기탁을 통한 가입(Accession) 형식이 있다. 나미비아는 나고야의정서 가입 형식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ABS에 대한 국내법 마련을 우선시한 네투보 난디 응다이왓(Netumbo Nandi-Ndaitwah) 전 환경관광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슈로더는 “불행히도 아직까지 나미비아 내각과 의회의 ABS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법률 승인절차가 진행중이고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23일 우헤쿠아 헤룬가(Uahekua Herunga) 환경부 장관은 의회에 나미비아의 나고야의정서 가입에 대한 허락을 요청하였다.

한편 나미비아의 나고야의정서 가입 결정에 많은 환경보호활동가와 환경변호사들은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는 추세이다. 나미비아 대학교 생물다양성부 퍼시 침와무로베(Percy Chimwamurobe) 교수는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극찬했다. 남부 나미비아 ABS 관련 전통기관의 라카루스 카이라베브(Lazarus Khairabeb)는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제 전진만 있을 뿐 후퇴는 없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아프리카 유전자원을 비윤리적으로 반출한 서방국가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나고야의정서의 발효가 이러한 사태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나미비아의 ABS 및 관련 전통지식 법률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전통사회의 공식허가를 보장하고, 유전자원 접근이 반드시 사전 승인통보 절차를 통해 진행되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원문출처 : <http://allafrica.com/stories/201405200773.html?viewall=1>

남아공 림포푸 공동체, 비탄수화물 감미료로 로열티 획득

2015. 7. 15



남아공 림포푸(Limpopo) 주의 두 지역 공동체가 비탄수화물 감미료 개발에 협력한 대가로 260만 란드(한화 약 2억 4천만 원)의 로열티를 수령할 예정이다.

'Molomo monate'로 알려진 이 현지 식물 (학명: Schlerochiton ilicifolius)은 남아공 '과학산업연구위원회(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CSIR)'가 지난 27년간 연구해 온 식물 중 하나로서, 기존 설탕보다 1,400배 더 단맛을 낸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 마침내 제품화 단계에 이르렀다. 'Molomo monate'는 현지어로 'nice mouth'를 의미하며 CSIR은 이 식물에 있는 비탄수화물 감미료 특성성분을 추출, 분석하여 연구를 수행해왔다.

초히디 모로카(Tshidi Moroka) CSIR 생명과학연구개발결과 매니저는 "림포푸주의 주도(州都)인 폴로크와네(Polokwane) 북서쪽에 있는 Shongoane와 Seleka 공동체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로열티를 받게 되었으며, 이번 로열티의 경우 '국가 생물탐사 신탁기금(National Bioprospecting Trust Fund)'에 납부된 뒤, 기금을 통해 해당 공동체들에게 분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CSIR의 연구 연혁, 로열티 수입 흐름 등을 분석하여, 남아공 환경부(DEA) 및 두 지역공동체와의 협상을 통해, 260만 란드(한화 약 2억 4천만 원)를 로열티 금액으로 설정하여 토착 지식 보유자들에게 지불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CSIR의 연구 연혁, 로열티 수입 흐름 등을 분석하여, 남아공 환경부(DEA) 및 두 지역공동체와의 협상을 통해, 260만 란드(한화 약 2억 4천만 원)를 로열티 금액으로 설정하여 토착 지식 보유자들에게 지불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2008년 남아공 정부가 '생물탐사 이익공유 규정(Bioprospecting and Benefit-sharing Regulations, BABS)'을 공포한 이후, CSIR은 'Molomo Monate' 식물을 생물탐사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2년 허가를 받았다. 이는 남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생물탐사 허가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초히디 모로카는 "Shongoane와 Seleka 공동체는 남아공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BABS 규정을 통해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 전문이 관보에 게시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이익은 '국가 생물탐사 신탁기금'에 기탁되며, 동 신탁기금을 통해 이익의 분배를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 <http://www.news24.com/SouthAfrica/News/Limpopo-communities-get-royalties-for-non-carb-sweetener-20150623>

남아공 환경부, 루이보스 및 허니부시 차 산업계에게 코이-산 부족과 이익공유계약 체결 촉구

2015. 5. 19



남아공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는 자국과 해외에서 활발히 연구, 거래되는 자국의 두 고유종인 루이보스(*Aspalathus linearis*)와 허니부시 (*Cyclopia* spp.)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Rooibos and Honeybush Species in South Africa")를 지난 2014년 10월에 발간한 바 있으며, 5월 19일 남아공 환경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루이보스(Rooibos) 및 허니부시(Honeybush) 차 산업계에게 코이(Khoi)-산(San) 부족과 이익공유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남아공 환경부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인 알비 모디즈(Albi Modise)는 "우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코이-산 부족이 루이보스/허니부시 관련 전통지식의 합법적 소유자'라는 코이-산 부족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루이보스/허니부시에 대한 코이-산 족의 전통 지식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루이보스 및 허니부시 차 산업계는 남아공 정부가 내놓은 이번 코이-산 부족과의 이익공유에 관한 보고서가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지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다. '루이보스 리미티드(Rooibos Limited)'의 마틴 버그(Martin Burgh) 상무이사는 FIN24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어느 단계에서 이익을 공유해야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며, 이익공유 이행시기가 1차 생산자(농부) 단계인지 아니면 가공업자 단계 또는 가공업자에게 벌크 패키지를 구매하는 브랜드사(社) 단계인지 방문했다. 루이보스 산업계는 현재 이러한 정부방침에 대해 세부 자료를 요구하였다.

말리즈 주베르(Marlise Joubert) '남아프리카 허니부시차 협회(South African Honeybush Tea Association)' 대변인은 "현재까지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한 코이-산 부족과의 이익공유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주베르 대변인은 "현지인들이 허니부시 생산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이며, "두 고유종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코이-산족과의 이익공유를 요청한 정부의 입장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림출처 : www.herbalteasonline.com

FIN24 기사 : <http://www.fin24.com/Companies/Agribusiness/Rooibos-industry-unsure-on-Khoi-San-benefit-sharing-20150525>

보고서 보기 : https://www.environment.gov.za/sites/default/files/reports/traditionalknowledge_rooibosandhoneybushspecies_report.pdf

남아프리카 공화국,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칙” 개정

2015. 5. 19



2015년 5월 19일, 남아공 정부는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개정 규칙 2015(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Sharing Amendments Regulation 2015, 이하 ‘BABS 규칙 2015’)”를 공포했다(National Gazette No. 38809, Vol. 599). 남아공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일찍부터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체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등 자국의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5년에는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를 나고야의정서 하의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점검기관으로 지정하였다.

BABS 규칙은 “국가환경관리 생물다양성법(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 NEMBA)” 제6장과 제7장에서 다루는 생물탐사와 접근 및 이익공유, 허가에 관한 세부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BABS 규칙 2015는 지난 2008년에 제정된 BABS 규칙 2008에 비하여, 1) 허가 체계의 변경, 2) 통보 절차 규정의 신설, 3)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 4) 허가절차에 있어 발급당국이 고려해야 할 기준, 5) 용어 등 정의규정의 변화 등의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우선 허가 체계와 관련하여 남아공 내의 토착 유전자원 및 생물자원의 이용 행위를 발견단계와 상업단계로 구분하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나, 개별행위에 따른 허가 방식이 변화되었다. 특히 발견단계의 생물탐사를 위한 수출이 허가제의 범위 내로 포함되었고, 기존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허가는 폐지되고 새로이 ‘바이오교역 허가(Biotrade Permit)’와 ‘바이오교역 및 생물탐사 통합 허가(Integrated Biotrade and Bioprospecting Permit)’가 신설되었다.

| | 발급당국 | BABS 규칙 2008 | BABS 규칙 2015 |
|--------------------|------|---------------------|---------------------|
| 생물탐사(발견단계) | 장관 | 생물탐사(발견단계) 통보 | 생물탐사(발견단계) 통보 |
| | | - | 발견단계 수출 허가 |
| 생물탐사(발견단계) 상업단계 | 장관 | - | 바이오교역 허가 |
| | | 생물탐사 허가 | 생물탐사 허가 |
| | | 수출 및 생물탐사 통합허가 | 바이오교역 및 생물탐사 통합허가 |
| | MEC | 생물탐사 이외의 연구목적 수출 허가 | 생물탐사 이외의 연구목적 수출 허가 |

장관은 수자원환경부장관(the Minister of Water and Environmental Affairs)을, MEC(the Member of the Executive Council)는 해당 주(province)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책임지는 주 집행위원회 소속 위원을 의미

또한 발견단계에 있어서의 생물탐사에 관하여 기존에는 생물다양성법을 통해 통보해야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통보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통보에 관한 결정문을 등록하고 조건부 통보에 관한 규정도 추가하였다. 이의신청제도의 경우 기존 BABS 규칙 2008에서는 허가신청 거부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개정규칙에서는 허가신청 거부처분 이외에 허가갱신신청 및 허가내용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허가발급절차에서 발급당국이 고려하여야 할 기준 등으로서 생물다양성법 및 BABS 규칙 2008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 BABS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려기준으로 삼았던 내용을 이번 개정규칙에 포함하였다. 특히 기존에는 발급당국이 허가신청자가 기준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 확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할 우려가 있었으나, 개정규칙에서는 사전승인획득, 이익공유계약 체결, 이해당사자의 이익보호 등을 입증하는 증거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고려기준을 상당히 객관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규칙을 통해 용어가 신설되거나 변경되었다. 첫째, 이익공유 및 물질이전계약의 체결당사자로서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 or Stakeholder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히 전통지식의 보유자로서 특정 개인까지도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어, 허가신청자는 그러한 전통지식의 보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더욱 신중히 조사할 필요가 생겼다. 둘째, 생물탐사와 접근 및 이익공유의 대상이 되는 자원으로 기존에는 ‘토착생물자원(Indigenous Biological Resour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토착 유전자원 및 생물자원(Indigenous Genetic and Biological Resour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전자원의 의미 즉 유전적 잠재성, 특징,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하게 되었다. 셋째, 바이오교역 허가를 신설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교역’을 ‘추가적인 상업적 개발을 목적으로 토착유전자원 및 생물자원의 분쇄물, 분말, 건조물, 절편 또는 추출물을 매매하는 행위’라고 정의함으로써 토착 유전자원 및 생물자원의 일반적인 이용행위도 허가제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상기한 바와 같이 별도의 수출허가증 대신 바이오교역 및 생물탐사 통합허가로 수출허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착 유전자원 및 생물자원의 남아공 국내이용과 수출이용을 구분하고 있다.

BABS 개정규칙 2015 전문 보기 : http://www.greengazette.co.za/documents/national-gazette-38809-of-19-may-2015-vol-599_20150519-GGN-38809.pdf

남아공생물자원보호법(BABS) - 1

2013. 7. 15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브라질,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생물자원을 많이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24,000여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세계 토지의 2%를 차지하는 남아공은 이같은 풍부한 생물자원으로 한 해 국가 GDP의 7%를 차지하는 730억 랜드(한화: 약 8조 2300억)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집계된다.

생물다양성이 남아공 빈곤퇴치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면서 남아공 정부는 현지인들의 유전 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생물탐사, 접근 및 이익공유 규제프레임워크(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BABS)' 법안을 마련했다. BABS는 현지 내 자생종 활용 시 허가절차를 받지 않을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고 있다. 가령 별도의 허가 없이 자생종을 해외로 반출하면 최고 징역 5년이 선고되며 재범일 경우 징역 10년형에 처해진다.

BABS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기 전인 2008에 발효되어 남아공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유전자원의 법적 보호를 실현한 국가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아공 국민들은 'BABS' 규제법과 더불어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협정인 '나고야의정서'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남아공은 당사국 중 12번째로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다.

남아공생물자원보호법(BABS) - 2

2013. 8. 2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림포포강, 폰도란드, 다육카루 지역과 같은 생물다양성이 잘 보존되어있는 지역 공동체가 있다. 그 중 림포포 공동체는 2013년 2월 25일 남아공 환경부가 주최한 '제7차 범아프리카 ABS 워크숍'에서 말라리아 퇴치에 효능이 있는 Lippia javanica(마편초과) 식물을 소개했다.

이곳 현지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Lippia Javanica 줄기와 잎을 집에 매달아놓아 모기를 쫓아왔으며, Lippia Javanica 재배 및 유지추출을 통해 정부와 협력하여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Lippia javanica 추출은 BABS(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규제법에 따라 진행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 사업이다. Lippia Javanica 프로젝트의 눈부신 성과는 남아공정부와 '남아공과학기술 산업연구소(CSIR)', '남아공전통치료사위원회', 기야니지역 현지공동체와의 협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남아공은 'Zollhaus International'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Lippia Javanica를 활용한 모기퇴치제의 국·내외 시장진출의 활로를 열었다.

유사한 예로 남아공 노던 케이프에 위치한 지역공동체들은 'HGH Pharmaceuticals'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Sceletium Tortosium 추출물을 활용한 국·내외 연구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걷어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자생종 의약품개발 프로젝트로 지난해 우울증 및 수면개선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며 각각 'Elv8'과 'Zembrin'이라는 브랜드로 남아공과 미국에 출시되었다.

이와같이 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유하는 체제는 남아공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유전자원 수집과 상용화로 인해 얻게 될 혜택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어 지역 고용률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출처 : <http://www.ispotnature.org>

남아프리카공화국, 나고야의정서 12번째로 비준

2013. 1. 10



생물다양성 부국으로 손꼽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에 지난 1월 10일에 비준했다. 현재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국가가 비준하였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를 이행하고자 하는 나고야의정서는 2011년 2월 2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서명 기간이었으며, 총 92개국이 서명했다. 나고야의정서는 50번째 국가의 비준서가 제출된 다음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앞으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모두에게 더욱 확실한 법적 기반과 투명성이 제공되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비준국 정보는 <http://www.cbd.int/convention/parties/list/#tab=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전문은 www.cbd.int/abs/doc/protocol/nagoya-protocol-en.pdf에서 볼 수 있다.

*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요르단, 가봉, 르완다, 세이셸, 멕시코, 라오스, 인도, 피지, 에티오피아, 파나마,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리아 치료 자생식물 및 전통지식 개발 프로젝트 착수

2012. 12. 21



남아프리카 의학연구소, 케이프타운 대학, 국립식물연구소(NBI), 남아프리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SANBI) 등의 컨소시엄은 말라리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자생식물과 전통지식에 근거한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은 항말라리아 약제 개발 시, 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제공한 토착 원주민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기술을 이전하는 등 비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프로젝트를 통한 재정적 이익 역시 원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이익의 50%를 이익공유 컨소시엄에, 나머지 50%는 신탁기금에 기탁하는 것으로 협정을 체결했다. 2004년 제정된 국가환경관리 생물다양성법 10조(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Biodiversity Act)에서 생물탐색,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해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남아공의 전통 식물, 후디아(Hoodia) 분쟁

2012. 12. 7



아프리카 남부에 거주하는 부시맨족(산족)은 장기간 수렵에 나갈 때, 항상 후디아 고르도니(Hoodia Gordonii)를 먹었다. 후디아를 복용하면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평상시와 같이 몸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해 주었기 때문이다.

남아공의 국립연구기관인 과학·공업연구평의회(CSIR)가 1997년에 이러한 후디아의 성분 중에서 식욕억제 효과를 가진 생리활성물질을 분리하는데 성공하여 특허를 취득하고, 영국 제약회사(Phytopharm)에게 특허사용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남아공의 변호사는 '사례 없이 전통지식을 가로채는 것은 생물해적 행위(Biopiracy)'라고 주장하여 CSIR과 Phytopharm이 부시맨족에게 사례를 지불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현재 합법적으로 후디아(Hoodia)를 수확하는 모든 기업은 부시맨족에게 사용료(벌채료)를 지불하고 있다.

시카고 볼 원예관-남아프리카공화국 생물다양성연구소, 식물자원 관련 계약 체결

2012. 9. 21



199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물다양성연구소(SANBI: South African National Biodiversity Institute)는 시카고의 볼 원예관(Ball Horticulture)과 5년간 협정을 맺었다. 볼 원예관은 최대의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 원예기업이다. 협정 내용은 SANBI에서 전문가를 통하여 특정 남아공 식물을 구별하고, 그 표본과 식물체를 채집하여 볼 원예관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협정이 ABS에 대한 이해와 대응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남아프리카에 불리하게 적용되었고, 남아공 환경관광부의 승인이 없는 협정이라는 이유로 이후 2002년 금전적 이익 및 비금전적 이익을 강조한 재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로서 볼 원예관은 식물체 번식을 위한 온실 설치, 차량, 서식지 보전 등의 연구 비용으로 125,000달러를 지불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제품에 대한 순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분배하게 되었다.

원문출처 : 생물다양성협약 기술보고서 제 38권

**동아프리카 생물다양성네트워크,
동아프리카 외래종의 분류 정보를 담은 온라인 자료 발행**

2012. 11. 23



동아프리카 생물다양성네트워크(BioNET-EAFRINET)는 동아프리카 사람들의 삶과 생태계의 건강을 보전하기 위해 핵심 생물 분류학적 정보를 담은 자료집(Keys & Fact Sheets)을 온라인으로 발행했다.

이 자료는 동아프리카(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의 주요 작물인 옥수수의 해충 26종, 주요 수분매개자인 20개의 벌속, 외래식물 100여종을 신속하게 동정할 수 있도록 각 종들의 분류 정보, 자원적 가치, 이로운 종과 해로운 종의 구분, 이미지 등 통합적인 기재정보를 담고 있다.

해당 정보는 <http://keys.lucidcentral.org/keys/v3/eafriNET/index.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르완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2. 3. 20



르완다가 3월 20일 가봉, 요르단에 이어 세 번째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 되었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를 이행하고자 하는 나고야의정서는 올해 2월 1일에 92개국으로 서명을 마감하였으며, 50번째 비준서가 제출된 후, 90일째 되는 날에 자동 발효된다.

*** 비준(Ratification)**

정부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가 확인함으로써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구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비준의사의 표시는 다자조약의 경우, 비준서 기탁으로 행해지고 있음

모잠비크 의회, 나고야의정서 비준 동의

2014. 3. 28



모잠비크 의회가 유전자원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를 만장일치로 비준 승인했다.

나고야의정서는 UN생물다양성협약(CBD)의 대표적인 국제협정으로 CBD의 핵심 목표인 '유전자원 이용에서 오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 법 체제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UN문서는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예측가능한 조건을 마련하고 제공국과 이용국 모두의 법적 확실성 및 투명성을 구축하여, 양측의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준수 조항을 통해 유전자원 뿐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도 다루고 있으며 토착민 지역공동체(ILC)에게 전통지식에 대해 접근을 승인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모잠비크 의회의 비준에 대해 알신다 아브루 모잠비크 환경부 장관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서 이 자원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첨병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자원 활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신약개발에서 식량안보 향상에 이르기까지 미래세계의 신제품개발을 열어주는 성장 동력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9개국 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가운데 모잠비크는 이번 의회 비준으로 30번째 비준국이 될 전망이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원문출처 : <http://www.bernama.com.my/bernama/v7/wn/newsworld.php?id=1021883>

11111111

서부아프리카,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자금 조달 전략 워크숍 개최

2011. 7. 9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이 지구환경기금(GEF) 국가 지원 프로그램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유럽 위원회가 후원하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재정 마련 워크숍이 7월 9일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경험과 자금 조달 정보 공유, 생물다양성 활동 범위와 필요한 자금 파악 등에 대한 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워크숍 참가국은 부르키나 파소와 카보베르데, 차드, 감비아, 기니비사우, 니제르, 세네갈, 말리, 모리타니 9개국으로 나고야의정서에 이미 조인하여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 행동 계획들을 수정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최근의 관련 재정조달 이니셔티브와 CBD 사무국이 관리하는 일본 기금, 생물다양성 활동을 위해 GEF가 따로 배정해 놓은 미화 4천 달러의 자금, ABS 프로젝트를 위한 GEF 배정금, 신설된 나고야의정서 이행 기금과 같은 GEF의 자금 배정 시스템과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이셸 공화국, 나고야의정서 4번째로 비준

2012. 4. 20



인도양 서부에 있는 세이셸공화국이 2012년 4월 20일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에 비준*하여 요르단, 가봉, 르완다에 이어 네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를 이행하고자 하는 나

고야의정서는 올해 2월 1일 92개국으로 서명을 마감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50번째 비준서가 제출된 다음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 비준(Ratification)

정부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가 확인함으로써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구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비준의사의 표시는 다자조약의 경우, 비준서 기탁으로 행해지고 있음

제15차 아프리카 환경장관회의, “ABS 이행 가이드라인” 채택

2015. 4. 1



2015년 3월 2일에서 6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15차 아프리카 환경장관회의(African Ministerial Conference on the Environment, AMCEN)에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공동 이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 전략 가이드라인(African Union Strategic Guidelines for the Coordinated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과 “아프리카에서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의 공동 이행을 위한 실용 가이드라인(Practical Guidelines for the Coordinated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in Africa)”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문서는 현재 공고되지 않은 상황이며, 회의 참고자료로 2014년 8월 전문가들의 검토를 마친 “나고야의정서 공동 이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 정책 프레임워크(African Union Policy Framework for the Coordinated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sation)(이하 ‘정책 프레임워크’)” 초안문서 내용만이 공개된 상황이다. 정책 프레임워크는 아프리카 지역 내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돕고, 아프리카의 의정서 이행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책 프레임워크는 1) 목적, 2) 용어사용, 3) ABS절차·인식제고·정보공유, 4) 이용을 위한 접근, 5) 이익공유, 6) 감시 및 의무준수, 7)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공동체 및 농부권·경제개발의 보호 및 증진, 8) 역량개발·역량 강화 및 기술 이전 등 8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정책 프레임워크의 내용에 의하면,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인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들은 그들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통보승인(PIC)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전통보승인에 명시되어 승인된 내용과 상호합의조건(MAT)에 규정한 내용대로만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할 것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 프레임워크는 “현지 외 보전 등을 위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한 사실만으로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PIC을 발급받은 것으로 간주되거나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별도의 PIC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PIC과 MAT이 없는 (유전자원) ‘이용’은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책 프레임워크의 “이용을 위한 접근” 부분에서는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또는 허가 및 해당 토착지역공동체(ILC)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AU 회원국들에게 국내 입법, 규제, 행정적 그리고/또는 정책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AU 회원국 내에 “그러한 국내 조치가 없는 것이 사전통보승인 또는 허가 및 해당 ILC의 참여가 요구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도 AU 회원국들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 입

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국내 조치가 없다고 해서 PIC이나 해당 ILC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제2조에 정의된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파생물)’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파생물을 통한 응용 및 상업화로 창출된 이익은 공평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유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5차 아프리카 환경장관 ABS 가이드라인 채택 결정문

http://www.unep.org/roa/Portals/137/AMCEN15Docs/Decision%20_3_ABS%20_Advance.pdf

정책 프레임워크 초안 문서 : <http://www.unep.org/roa/Portals/137/AMCEN15Docs/AMCEN-15-REF-12-AU%20Access%20and%20Benefit%20Sharing%20guidelines.pdf>

약탈위기에 처한 에티오피아 천연자원

2014. 4. 11



최근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테프(Teff)*작물 특허 대립이 에티오피아를 다시 한번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약탈되는 에티오피아 작물은 비단 테프만이 아니다”라고 밝혀 더 큰 우려가 가중될 전망이다.

아웨케 시페로(Aweke Shiferraw) 에티오피아 지식재산권청 홍보 부장은 현재 커다란 관심을 받고있는 테프 사건에 대해 “에티오피아에는 테프 외에도 현재 엄청난 수의 유전자원들이 영구적인 약탈 위기에 처해있다”며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테프는 에티오피아 전체 곡물 생산 중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에티오피아 자생종으로서 BC 4000년~BC 1000년 사이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테프(Eragrostis Tef)는 수천년간 에티오피아 식탁에 오르내린 전통 작물로서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왔다. 높은 영양소와 고 칼슘을 함유한 테프는 반죽으로 발효시킨 후 얇게 편 둥근 빵으로 만들어 스투와 여러 소스를 곁들인다면 별미로 즐길 수 있다. 테프(Eragrostis Tef)의 앞 글자 ‘Era’는 그리스어로 ‘사랑’이라는 의미의 Eros를 뜻하며 뒷글자 ‘Grostis’는 그리스어 ‘풀(Grass)’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티오피아 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테프를 ‘lovegrass’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에티오피아인들은 테프를 ‘Teffa’ 즉, 암하라 어로 ‘lost(잃어버린)’라는 단어에서 기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5년 ‘에티오피아생물다양성보전연구소(The Ethiopian Institut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IBC)’와 네덜란드 회사 ‘Health and Performance Food International(HPFI)’은 테프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2009년 HPFI가 파산하면서 만료되었는데 문제는 이 HPFI가 보유한 테프 기술들이 기존 직원들이 차린 다른 회사들을 통해 계속 활용된다는 것이다. 에티오피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HPFI의 파산 일년 전부터 해당 회사 직원들이 다른 회사들을 설립한 후 HPFI의 테프 반죽 기술을 이용한 테프 제품들을 생산·판매해왔다. 또한 이들은 다른 국가와 대륙에까지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확장해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비록 지금의 HPFI는 파산했으나 당시 ABS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들이 그대로 다른 회사를 차려 에티오피아와의 별도의 이익공유 없이 테프 제품들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시페로 부장은 테프에 대한 뜨거운 국민적 관심에 대해 “정작 큰 그림은 놓치고 있다”고 밝히며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대한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제로(0)에 가깝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유전자원 이익은 반드시 법적, 제도적 체제를 통해 보장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운영 체제 또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프는 항상 에티오피아의 것인가?”라는 질문에 시페로 부장은 “테프는 언제나, 그리고 앞으로도 에티오피아의 작물일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원문출처 : <http://www.worldbulletin.net/economy/129784/ethiopian-natural-resources-at-risk>

* 테프(Teff)작물

높은 영양을 함유한 에티오피아 자생 곡물 품종으로서 현재 에티오피아와 네덜란드간 특허대립이 진행 중이다.

에티오피아 테프(Eragrostis tef) 사례

2012. 8. 24



테프는 에티오피아에서 수천년 전부터 재배되어온 가장 중요한 작물로서 에티오피아 전통빵인 인제라의 주재료이다. 네덜란드 기업 HPFI(Health and Performance Food International)는 테프가 곡물이지만 글루텐이 없는 특징을 이용하여 빵, 에너지바, 맥주 등을 생산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에티오피아 생물다양성보전연구소(IBC) 및 농업연구기구와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에티오피아가 테프 품종의 소유권을 가지는 원산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의 생물다양성보전연구소가 국가책임 기관으로 지정되어 HPFI에게 테프에 대한 유전자원의 접근과 외부 반출을 승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HPFI 기업이 1) 테프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다양성보전연구소에게 지불하며, 2) 테프 품종 종자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30%를 생물다양성 보전연구소에게 로열티로 지불하고, 3) 테프 생산을 위한 금전적 기금(FIRST: Financial Resource Support for Tef)에 순수익의 5%(연간 20,000 유로 이하)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였다. 지금까지 에티오피아 농업연구기구와 HPFI는 공동 소유를 목적으로 3개의 테프 품종을 등록하였다.

지부티, 나고야의정서 65번째로 서명

2011. 10. 19



10월 19일, 지부티*는 65번째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다른 나라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이나 식품 등을 개발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에게 더욱 확실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생물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즉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더 나아가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나고야의정서는 50번째 비준서가 제출된 후,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 지부티(Djibouti)

아프리카 대륙 북동쪽 아덴만의 서쪽 연안에 있는 나라로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과 국경이 접해있다. 19세기에는 프랑스령이었으나, 이후 프랑스령 해외령에 편입되어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1977년 국민투표를 거쳐 독립하였다. 바위와 사막이 많고, 곳곳에 평원과 고원지대가 나타난다.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국내 이행을 위한 짐바브웨의 노력

2014. 5. 23



짐바브웨 정부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FRFA)’을 국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이다.

지난 주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에서 ITPGRFA 국내이행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짐바브웨 커뮤니티 기술개발기구(The Community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sation, CTDO)’가 주최한 이번 워크숍에서 짐바브웨 국가유전자은행 소속 쿠사이 쿠세나(Kudzai Kusena)씨는 “현재 ITPGRFA의 국내 체계화를 위한 주요 토대들이 대부분 마련된 상태”라며 “짐바브웨는 이미 2002년 ITPGRFA를 비준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은 아직 진행중이며 현재 80퍼센트 이상 마무리된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20퍼센트 정도가 미완성 상태지만 무리 없는 IPGRFA의 국내정착을 예상해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짐바브웨가 2002년 비준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은 식량, 농업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식물 자원의 이용에 대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ITPGRFA는 또한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보호와 식물 자원 이익을 공유하는 농부들의 농부권을 추구하고 있다. ITPGRFA 제9조에서는 농부들의 생산, 저장, 교환, 재사용, 의사결정 참여, 지역지식체계 보호에 대한 권리를 다루고 있다. 짐바브웨는 ITPGRFA를 초기에 비준한 국가 중 하나지만 ITPGRFA의 국내 이행을 위한 진전은 다소 더딘 상태라며 법률·농업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복잡한 검토 과정과 부처간 업무 중복, 예산 부족, 정부의 우선과제로서의 인식 부족’을 손꼽았다. CTDO 소속 법률 전문가는 “ITPGRFA의 제6조와 제9조를 국내차원에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CTDO는 이번 워크숍 개최를 비롯하여 ITPGRFA의 조항 이행을 위해 6곳의 지방자치구의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TPGRFA 국내 체계화를 가로막는 여러 도전과제를 규명하고 ABS법을 개발하여 지역 공동체의 이익공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짐바브웨는 1,500개의 식물속, 200개의 식물과로 구성된 4,400종의 식물종을 보유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 부국이다. 짐바브웨는 또한 풍부한 국내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곡물, 산업용, 원예용 작물, 토착 고유 채소, 뿌리, 줄기, 약용식물이 포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짐바브웨인들은 전통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짐바브웨 지역 공동체의 상당수 자원들이 약탈되고 있다. 유전자원 전문가들은 “생물약탈 행위에 대한 법률의 부재로 짐바브웨 유전자원이 수년간 타국으로 반출되었으며 미화 15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이 의약품, 화장품, 원예제품, 전통지식의 형태로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특허, 개발되어 아프리카가 큰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세나씨는 “자국의 식물자원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식물유전자원의 분포

및 다양성에 대한 문서화 절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유전자원의 세계 경제적 가치는 미화 5,000억~8,000억 사이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익이 자원 원산지국 지역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는 양은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원문출처 : <http://allafrica.com/stories/201405090511.html?viewall=1>

아프리카 카메룬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사례

2012. 12. 7



아프리카 벗나무 푸르누스 아프리카나(Prunus Africana)는 잎과 껍질의 추출물이 말라리아, 배탈, 해열, 혈관계 질환에 효능이 있어 카메룬 북서 지방에서는 전통적인 치료약으로 이용되어 왔다.

카메룬 남서지역에 있는 기업인 Plantecam Medicam은 1970년대부터 배타적인 허가권을 가지고 푸르누스 껍질을 채취해왔다. 이러한 기업의 무작위된 착취는 푸르누스 개체군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1997년에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여 생태보호 사업과 지역 산림청의 지원으로 지역 벌목 단체(Mapanja Prunus Harvesters' Union, Bokwango Prunus Harvesters' Union)와 Plantecam Medicam은 푸르누스 채취와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매달 10톤의 푸르누스 껍질을 Plantecam Medicam에 제공하고, 등록된 벌목공들은 하루 30kg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벌목공 채취물의 2kg에 해당하는 이익은 마을 기금에 이용되며, 1kg의 이익은 단체의 기금으로 이용된다. 나머지 27kg의 이익은 벌목공들에게 돌아가며, 금전적인 이익과는 별개로 벌목기술 교육 등 비금전적인 이익으로도 환원하도록 했다.

코모로, 몽골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3. 5. 21



코모로, 몽골이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했다.

이들 2개국이 참여함에 따라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는 알바니아,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인도, 요르단, 라오스,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 파나마, 르완다, 세이셸,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코모로, 몽골로서 총 18개국이며, 이들 국가는 현재 생물다양성협약에 비준했거나 승인한 상태이다.

디아스 CBD 사무총장은 최근 비준소식에 대해 "한국에서 열릴 제12차 CBD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이들 2개국의 의정서 비준은 차후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앞당길 수 있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를 통해 나고야 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가 2014년 10월에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비준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아직까지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당사국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함께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 승인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원문출처 : <http://www.cbd.int/new/Press Release: Comoros, Mongolia and the Syrian Arab Republic ratify Nagoya Protocol.>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29개국 돌파, 발효까지 21개국 남아

2014. 2. 14



베냉, 부르키나파소, 미얀마가 나고야의정서 최근 비준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의정서 비준국 수가 29개국을 돌파했다.

이들 국가들의 비준참여로 이제 발효까지 필요한 비준국의 수는 21개국으로 좁혀진 가운데, 2014년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CBD 제12차 당사국총회(CBD COP12)에 맞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비준으로 베냉과 부르키나파소는 각각 12번째, 13번째 아프리카 비준국이 되었으며, 미얀마는 11번째 아시아 국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 되었다.

디아스 CBD 사무총장은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면서, "의정서 발효는 아이치 타겟16*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2월 24일부터 4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3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ICNP 3)에서는 그 동안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 정도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가간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 아이치 타겟16

아이치 타겟은 CBD 생물다양성 전략 2011-2020으로서 5개의 목표(Goal)과 20개의 타겟(Target)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중 타겟16은 2015년까지 나고야 의정서(ABS)가 발효되고, 이와 부합하여 각 국가별로 국내법체계가 정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메리카



코스타리카 ABS 법률 규정

2014. 4. 28



코스타리카는 '1998 생물다양성법(1998 Biodiversity Law)'을 마련하여 자국의 생물다양성 및 전통지식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생물자원 활용에 대한 이익 공유도 함께 규제하고 있다. 해당 법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모든 연구 및 탐사 활동에 대한 접근 허가를 요구한다. 코스타리카의 ABS 규정들은 유전자원 및 생물다양성 생화학 요소에 접근 시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생물다양성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전략 마련 차원에서 '국립 생물다양성연구소(The National Biodiversity Institute, INBio)'을 설립하였으며 INBio는 코스타리카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생물 다양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계,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이익공유도 시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ABS 규정들은 현재 나고야의정서에 맞게 개정되었으며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ABS 적용 범위 설정 및 기초연구 절차 간소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원문출처 : <http://ethicalbiotrade.org/dl/benefit-sharing/UEBT%20ABS%202013.pdf>

코스타리카 38번째 나고야의정서 조인국 되다

2011. 6. 6



6월 6일 코스타리카는 38번째로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는 37개 국가와 유럽연합이다. 아흐메드 조그라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관한 중앙아메리카 지역 회의 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회의 개최국인 코스타리카가 의정서에 조인하여 리더십을 잘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나고야의정서는 CBD의 세 가지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 사용 이익의 동등한 분배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0년 10월 29일에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었으며, 50번째 비준서가 제출된 후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는 CBD 웹사이트 (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에서 확인 가능하다.

콜롬비아 약용식물 연구소(Lafarve)

2013. 7. 5



콜롬비아 약용식물연구소인 'Labfarve'는 지난 30년 동안 '생물자원의 윤리적 사용'을 통해 환경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친환경 목표에 기여해왔다. 1984년 Jorge Piñeros Corpas 박사에 의해 설립된 이 연구소는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오늘날 이 연구소는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합리적인 가격의 의약품을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콜롬비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Labfarve 연구소는 주로 콜롬비아의 풍부한 생물자원에서 추출한 약용식물을 연구·개발하여 상업화한다. 연구소는 기관 내 유기농 경작지에서 직접 재배한 자생종을 추출하여 식물약학기술과 의약품화장품, 기능성 건강제품을 개발·제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꿀풀

과 식물(Scutellaria Coccinea)을 추출하여 만든 우울증과 신경질환 치료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연구소는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100여명의 지역농민과 제휴를 맺어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적 공급망을 통해 '윤리적 생물자원거래(Ethical BioTrade)'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소는 약용 식물 공급자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관 내 의약품 상용화 담당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상용화로 얻는 수입의 10%를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있으며,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기준안을 마련하여 의약품 상용화가 전통지식을 보유한 지역민의 이익을 반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윤리적 생물자원 거래는 해당 생물자원과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약재를 보유한 토착 지역민들의 토지사용, 자원 활용,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이 거래제도는 지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천연제약에 대한 세계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지속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 및 공정한 이익공유(ABS)'는 신제품에 쓰이는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증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 나고야의정서 비준 필요성 느껴

2014. 4. 11



라틴아메리카는 전세계 중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The Latin America Integration Association, ALADI)' 회원국 13개국 모두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ALADI 회원국 중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2개국(멕시코, 파나마)에 불과한

실정이다.

디아즈 CBD 사무총장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전망을 설명하는 한편 2014년 10월 대한민국에서 열릴 예정인 나고야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에 ALADI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준 가속화를 촉구했다. 한 전문가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지역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접목한 통합 전략들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원문출처 : http://www.plenglish.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512881&Itemid=1

멕시코,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2. 5. 16



5월 16일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멕시코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에 비준*하였다. 멕시코는 요르단, 가봉, 르완다, 세이셸에 이어 5번째 비준국이 되었으며, 생물자원 부국 중에서 가장 처음 비준한 국가여서 의미가 크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를 이행하고

자 하는 나고야의정서는 2011년 2월 2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서명 기간이었으며, 멕시코는 2011년 2월 25일에 서명한 바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50번째 국가의 비준서가 제출된 다음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 비준(Ratification)

정부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가 확인함으로써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구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비준의사의 표시는 다자조약의 경우, 비준서 기탁으로 행해지고 있음

미국 체로키 부족의 종자 프로젝트, 전통 보전과 미래의 희망을 심다

2014. 1. 24



체로키 부족(Cherokee Indians: 북미 원주민 부족)은 부족 멤버들에게 체로키 종자에 대한 접근을 공식 승인하는 종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들의 전통 유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빌 존 베이커 체로키 부족 족장은 CNN 인터뷰에서 그들이 보유한 종자들의 혈통(Lineage)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종자들은 ‘눈물의 길(Trail of Tears)’ 역사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

온 유서 깊은 종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에 의해 보전되고 재배되어 왔습니다. 이 종자들은 유럽인들과의 계약 전부터 우리 손으로 재배해온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초 양식입니다.”

‘눈물의 길’이란 체로키 족이 그들의 미시시피 동부 거주지에서 지금의 오클라호마 지역으로 강제 이주했던 뼈아픈 역사를 칭한다. 1838년, 1839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인디언 이주법(Andrew Jackson’s Indian Removal Policy)’에 따라 체로키 족 15,000명이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주 하였고 이들 중 4,000명이 기근과 질병으로 도중에 사망했다.

‘체로키 가보 종자 프로젝트(Cherokee Heirloom Seed Project)’에서 이용 가능한 체로키 종자들은 저마다 독특한 형질을 지니고 있어 체로키 부족들에게 귀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들은 가뭄에 대한 내성이 강해 우리 부족의 역사와 문화의 한 권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우리에게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뭄 내성 종자들을 대형 종자 기업들은 유전자 변형을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고 족장은 말했다.

베이커 족장은 특히 ‘체로키 화이트 이글(Cherokee White Eagle)’ 옥수수 품종을 자랑스럽게 꺼냈다. “여기 이 옥수수 종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안에 독수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가보 종자(Heirloom Seed)란 유전자 변형 없이 유지되어온 식물에서 50년 동안 (일부는 100년이라고 함) 곤충, 새, 바람 등의 자연 수분(Open-pollination)을 통해 생성된 종자들을 일컫는다. 가보 종자들은 특유의 강한 풍미뿐 아니라 유전적인 다양성과 세대를 걸친 장구한 역사를 담고 있어 요리사, 농부, 과학자들에게 귀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베이커 족장은 이러한 가보 종자들의 보전과 명맥 유지를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부족은 종자 원종(Seed Stock)들을 살아 있고 온전한 형태로 보전할 것입니다.” 베이커 족장은 약속을 다짐했다. 현재 체로키 천연 자원부가 제공하는 종자에는 옥수수 품종 두 종, 콩 두 종(Trails of Tears Beans 포함), 박(Gourds) 두 종, 체로키 부족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약용 담배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인디언 혈통 신분 증명서(Certificate of Degree of Indian Blood)’를 가진 체로키 멤버들만 이용 가능하다. 해당 종자들은 상업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한해 개별 예약이나 cherokee.org를 통해 품종 두 가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베이커 족장은 2006년에 시작한 이 종자 프로그램의 취지가 체로키 멤버를 돕기 위한 부족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멤버들을 위한 많은 수의 종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에게 종자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정원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 멤버들에게만 종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종자가 5000 상자(Packages)이상 요청된다면 분배를 더 확대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저 작은 제스처가 아니다. 씨앗 한 알은 상당한 량의 식량 원료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옥수수를 심고 그 씨앗들을 보전했다면 그 옥수수 씨 한 꾸러미로 백 명분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옥수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이커 씨는 마지막으로 “체로키 종자 프로젝트는 우리 영토와 부족을 연결하는 전통 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우리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고 답했다.

사진출처 : www.cherokeemuseum.or

원문출처 : <http://eatocracy.cnn.com/2014/01/16/chokeee-seed-project/>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사모아 지역원주민, 에이즈 치료 관련 연구 협력 체결

2012. 11. 2



사모아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마말라 나무(Mamala, Homalantus Nutans)는 껍질과 줄기에 항바이러스 활성물질인 프로스트라틴(Prostratin)이 들어있어, 사모아 사람들은 전통약재로서 마말라 나무를 차로 만들어 간염(Hepatitis)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했다. 캘리포니아대학교의 민속식물학자인 폴 콕스(Paul Cox) 박사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마말라 나무를

샘플로 항 HIV(에이즈바이러스)를 테스트한 결과, 프로스트라틴 추출물이 건강한 세포들로 하여금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캘리포니아대학은 마말라 나무의 샘플을 얻기 위해 사모아 정부, 사모아 지역 치료자들, 추장으로부터 사전에 샘플 채취에 대한 허락을 얻었다. 또한 사모아 원주민들과 항바이러스 성분인 프로스트라틴 개발을 통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공유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캘리포니아대학교는 유전자를 클로닝하고 대량 증식해 상업화할길 원하여, 순이익의 50%를 사모아인에게 되돌려주기로 했다. 비금전적으로는 사모아 언어로 지역 주민에게 유전공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 지역 마을의 학교, 병원 등의 생활기반과 열대우림 보전을 위해 지금까지 480,000달러 정도를 제공했다.

원문출처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사례 연구

볼리비아 퀴노아 곡물(Quinoa, Chenopodium quinoa) 분쟁 사례

2013. 3. 22



퀴노아(Quinoa, Chenopodium Quinoa)는 남미 안데스산맥 고원에서 자라는 쌀보다 작은 곡물로, 수만년 동안 잉카의 황금쌀이라고 불렸다. 안데스 고산지역의 토착민들은 수백 년 동안 퀴노아를 골다공증, 심장질환, 유방암과 같은 여성 질병의 예방약이자 피부 질환 치료제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과학자들은 ‘아펠라와(Apelawa)’라는 볼리비아 퀴노아의 변종인 웅성 불임 식물에 대해 미국과 호주에서 특허를 받았다. 이 특허는 발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로열티 지불이나 허가 없이 생산, 이용,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할 권리이다. 볼리비아의 퀴노아 생산자 협회는 특허권자에게 이 특허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고, 볼리비아와 유엔에서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현재 1975년 이후 미국에 245건, WIPO에 18건의 퀴노아 관련 특허가 존재한다. 이러한 특허들이 철회되지 않고 새로운 퀴노아 특허들이 승인된다면, 퀴노아에 관한 상업적 개발에 관한 토착민의 권리는 기업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안데스 식량 산업에 관한 특허를 독점하여 혜택을 볼 것이다.

브라질, '화장품·식품·의약품 관련 생물다양성 신규 법' 채택

2015. 5. 20



5월 20일, 브라질 정부는 “생물다양성 기반 연구개발 및 상업화에 관한 법률”(Law 13.123/2015)을 제정하였다. 이번 신규 법에는 기업들이 브라질 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방법과 그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생물다양성 부국 중 하나로서 브라질 생물자원은 그간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천연 재료로서 발명과 개발의 소재가 되어왔다. 또한 브라질에는 미기록 생물자원들이 무궁무진하게 소재하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브라질 내 R&D 센터를 설립하여 브라질 생물자원을 이용한 신규 천연재료 발굴 및 응용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있어 천연제품의 핵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5월 20일, 지우마 호세프(Dilma Van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이 공식 행사를 통해 서명한 이번 신규 법(Law 13.123/2015)은 브라질 생물다양성을 이용하는 기업 및 기타 기관들이 따라야할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다. 신규법 도입에 따라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복잡하고 관료주의적이라 비판 받았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브라질 2001 조처’는 폐지되게 된다. 신규 법 도입은 접근 및 이익공유 체제에 대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한 생물다양성 접근의 경우, 지금까지는 브라질 국가 위원회(A National Council)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승인 절차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제 기업은 단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이익공유 역시 이전에는 개별 사안별로 협상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이익공유 협상의 책임이 최종제품 제조업자(Final Product Manufacturer)에게 부여되었으며, 주로 국가신탁기금을 통해 이익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이번에 제정된 “생물다양성 기반 연구개발 및 상업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법적 확실성과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간 균형을 잡아주는 법이라고 평가하며, 기업들은 이번 법을 통해 브라질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분쟁 및 논쟁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토착지역공동체들은 이번 법이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브라질 “생물다양성 기반 연구개발 및 상업화에 관한 법률”(Law 13.123/2015) : http://www.planalto.gov.br/CCIVIL_03/_Ato2015-2018/2015/Lei/L13123.htm

관련 문서 : <http://ethicalbiotrade.org/brazil-adopts-new-rules-on-biodiversity-based-rd-for-cosmetics-food-and-pharmaceuticals/>

브라질, 파라과이의 단 맛 식물 스테비아(Stevia) 사례

2013. 4. 19



Stevia rebaudiana Bertoni를 비롯한 스테비아는 아열대와 열대 중남미에 자생하는 해바라기와 유사한 Asteraceae에 속하는 식물이다. 잎과 줄기에 단맛을 내는 성분이 있어 수세기동안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원주민 구아라니족은 스테비아를 천연 당분으로 이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Moisés Bertoni는 과학적으로 Stevia Rebaudiana를 최초로 1899년에 기재하였고, 1900년에는 파라과이 화학자 Ovid Rebaudi가 이 종에서 인체에 무해 하면서 정제당의 200배 더 단맛을 낼 수 있는 ‘식물성 글리코사이드’를 발견하였다. 1970년에는 파라과이에서 스테비아의 대량증식이 시작되었고 프랑스, 스페인 등 각국에서 증식 기술이 도입되었다. 2007년에는 국제적인 기업들이 스테비아에서 유래한 천연감미료 ‘레비아나(Rebiana)’를 음료와 식품으로 개발하여 이에 대한 24건의 특허를 소유하였다. 현재 스테비아와 관련된 575건의 특허와 16건의 세계지적 재산권기구(WIPO)의 특허가 있어 향후 ABS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아마존 아야후아스카 (Ayahuasca) 분쟁 사례

2013. 1. 18



아마존유역에서 자라는 ‘아야후아스카’는 포도넝쿨과 같은 식물로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효능이 있는 특정성분을 가지고 있다. 에콰도르를 비롯한 아마존의 토착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식물을 샤머니즘의 종교적인 치료에 이용해왔으며, 2000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암스테르담 등 수차례 아마존 샤머니즘회의가 열려 국제적으로 아야후아스카의 활용 방안을 논의해왔다.

미국의 국제 제약회사(International Plant Medicine Corporation)의 Loren S. Miller는 1974년에 아야후아스카의 표본을 수집하여 1986년에 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대해 1999년 토착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NGO인 CIEL(Centre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OICA(Coordinator of Indigenous Organization of the Amazon River Basin), 아마존 토착민 단체는 이미 전통의학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야후아스카의 특허 취소를 재판에 회부했으며, 2002년에 특허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 소멸됐다.

사진출처 : <http://ayahuascarecipe.org/>

브라질 에놀라 콩(Enola Bean) 분쟁 사례

2012. 8. 10



1990초, 미국 프로널스사(Prod-Ners INC.) 소속 연구원이 멕시코에서 채집한 노란콩(Yellow Bean) 샘플을 미국으로 가져와 재배하였다. 자가수분과 수세대 교배를 통해 이 노란콩의 신종종을 개발하여 에놀라 콩(Enola Bean)*이라 이름 붙이고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후 식물품종 보호법률(Plant Variety Protection)은 에놀라 콩의 수입과 재배에 대한 배타적 독점 특허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2000년 멕시코정부와 비영리 국제 열대 농업센터, NGO들이 이 콩에 대한 특허 철회를 요구하면서, 2005년 특허가 취소되었다. 그 이유는 에놀라 콩이 멕시코에서 수세기에 걸쳐 농부들에 의해 경작되었으며, 현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품종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생물자원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동의(Prior Informed Consent: PIC)를 얻지 않아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 에놀라 콩은 멕시코인 마야코바 콩보다 가늘고 길며 밝은 색상을 띤다.

향수의 원료로 쓰이는 브라질의 부레우부랑코(Breu branco), 로열티 지급 사례

2012. 5. 18



(Breu Branco, Protium Heptaphyllum)는 브라질 열대림의 고유종으로 나무에 상처가 나면 연두색의 수지(식물로부터 분비되는 점도가 높은 액체)가 나온다. 브라질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수지를 수공예품의 향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2001년 네추라(Natura) 연구원이 브라질 북부 Para주 벨레에 있는 베르 오 페소(Ver-O-Peso) 전통시장에서 이 같은 전통지식을 수집하여, 2003년 Ekos라인의 향으로 향수제품을 출시하였다.

네추라는 지역생산조합(Ver-as-Ervas)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전통지식 사용에 구두 합의 하였지만, 브라질 내 ABS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고 전통지식의 사용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보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한 조합원이 True Herbs Association을 구성하여 법적 이익을 제기하였고, 2006년에 네추라는 지역생산조합에 로열티와 선약금을 지급하는 상호협약서에 서명하였다.

온두라스와 타지키스탄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3.8.12, 2013.9.4



온두라스와 타지키스탄이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 비준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는 알바니아, 보츠와나, 코모로,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인도, 요르단, 라오스, 모리셔스, 멕시코,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파나마, 르완다, 세이셸, 남아프리카, 시리아 그리고 최근 합류한 온두라스, 타지키스탄을 합하여 총 20개국으로 집계된다. 그 중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 국가 중 두 번째로, 타지키스탄은 아시아 국가 중 여섯 번째로 의정서에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최근 비준소식에 대해 디아스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온두라스와 타지키스탄의 비준으로 2014년 10월 한국에서 열릴 제12차 CBD 당사국 총회에 맞춰 의정서를 발효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반기문 UN사무총장도 '2013년 세계생물다양성의 날'에서 "CBD 당사국들 중 아직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가 있다면 비준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원문출처 : <http://www.cbd.int/new/> "Press Release: Honduras and Tajikistan became the most recent countries to ratify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2013-09-05

우루과이, 스페인, 앤티가바부다 나고야의정서 조인국 되다

2011. 6. 6



우루과이는 39번째(7월 19일), 스페인은 40번째(7월 21일), 앤티가바부다(7월 28일)는 41번째로 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이제까지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는 40개 국가와 유럽연합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세 가지 목표 중 하나인 유전자원 사용 이익의 동등한 분배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0년 10월 29일에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 되었으며, 50번째 비준서가 제출된 후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는 CBD 홈페이지 (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에서 확인 가능하다.

파나마와 모리셔스,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3. 12.12, 2013.12.17



파나마와 모리셔스가 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에 비준·가입*했다. 파나마는 12월 12일에 비준했으며, 모리셔스는 12월 17일에 가입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는 총 11국가이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를 이행하고자 하는 나고야의정서는 2011년 2월 2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서명 기간이었으며 총 92개국이 서명했다. 나고야의정서는 50번째 국가의 비준서가 제출된 다음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앞으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모두에게 더욱 확실한 법적 기반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비준국 정보는 <http://www.cbd.int/convention/parties/list/#tab=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전문은 www.cbd.int/abs/doc/protocol/nagoya-protocol-en.pdf에서 볼 수 있다.

* 가입

서명이 마감된 국제협정에서 서명하지 않았던 국가가 비준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

*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요르단, 가봉, 르완다, 세이셸, 멕시코, 라오스, 인도, 피지, 에티오피아, 파나마, 모리셔스 (2013년 1월 4일 현재)

페루, 세계 특허모니터링을 통한 생물해적행위 감시

2015. 3. 18



엘 코메르시우(El Comercio) 페루 언론은 지난 1월 “페루산 마카, 폴란드에서도 특허 출원(Denuncian Que Maca Peruana Fue patentada en Polonia)”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본 기사에서는 ‘페루 무역관광위원회, 마카 및 기타유전자원 보호·증진 그룹(Grupo de Trabajo de Protección y Promoció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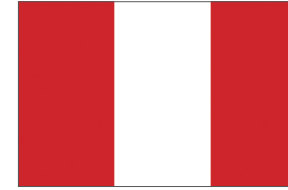
de la Maca y Otros Recursos Genéticos)’에서 안드레스 발라도리드 ‘페루 국가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La Comisión Nacional Contra la Biopiratería)’ 의장이 “페루산 마카에 대한 폴란드의 특허를 발견하였으며, 현재 폴란드어로 된 특허를 번역함에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폴란드의 마카 특허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본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지난 두 달 동안 특허와 관련되어 생물해적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바 있으나, 다행히 해당 특허는 특허가 거부된 상태”라고 밝히며 페루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가 페루산 마카에 대한 한국의 특허 현황도 살펴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페루 국가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는 전세계의 특허를 검색, 분석, 감시하기 위해 관련 기술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생물해적행위로 분류되는 사례에 대해 전세계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본 기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http://elcomercio.pe/economia/peru/denuncian-que-maca-peruana-fue-patentada-polonia-noticia-1784245>

페루 국가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 의장, 마카에 대한 생물해적행위 우려

2015. 3. 18



영국 가디언지(The Guardian)는 지난 2월 “중국의 마카 재배로, 치솟는 페루산 마카, 거품 꺼지나(Peru's maca boom could fall flat if China starts growing its own)”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마카는 페루 안데스 산맥의 해발 4천 미터 고지대에 자생하며, 골다공증, 호르몬 불균형, 전립선암과 불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기사는 “페루 현지법에 의하면 가공되지 않은 마카를 수출하는 것은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현재 볼리비아 혹은 페루 파이타의 북부 항구를 통해 상당량이 밀반출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특히 페루산 마카가 씨앗 형태 그대로 중국으로 밀반출되어 현지 경작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안드레스 발라도리드(Andrés Valladolid) ‘페루 국가 반생물해적행위 위원회(La Comisión Nacional Contra la Biopiratería)’ 의장은 본 기사에서 “중국이 원산성에서 페루산 마카를 재배하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다”며 “페루산 마카가 원산지 국가 밖에서 재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어떠한 접근 계약도 없는 것은 명백한 생물해적행위”라고 밝혔다. 의장은 또한, “작년 한해 국제적으로 마카에 대해 출원된 250개의 특허 중 절반이 중국에서 출원되었고 그 중 20여 개가 생물해적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의장은 “우리는 마카에 대한 조사와 이용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마카 원산지인 페루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중국은 적법한 방식으로 마카를 이용하고, 페루와 ‘이익공유’ 계약을 맺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작년 6~7월, 엘 코메르시우(El Comercio), 코레오(Correo), 과학기술네트워크(Sci Dev Net) 등 페루 언론은 마카가 중국 생산자들에 의한 생물해적행위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페루 수출협회(ADEX)의 입장을 보도한 바 있다.

가디언지 기사 : <http://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5/feb/09/peru-maca-indigenous-root-china-biopiracy>

엘 코메르시우 기사 : <http://elcomercio.pe/economia/peru/adex-denuncia-china-biopirateria-semillas-maca-noticia-1738185>

코레오 기사 : <http://diariocorreo.pe/ciudad/biopirateria-chinos-se-aduenan-de-la-maca-p-23722/>

과학기술네트워크 기사 : <http://www.scidev.net/america-latina/agricultura/noticias/per-denuncia-a-china-por-biopirateria-de-maca.html>

오세아니아



태평양 지역 나고야의정서 ABS 역량개발 워크숍 개최

2013. 11. 25

태평양지역 국가들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역량개발 워크숍이 2013년 11월 25일부터 4일간 피지 수바(Suva)에서 개최 되었다. 워크숍은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이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경험과 교훈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태평양 지역 환경 프로그램 사무국(SPREP)'이 주관하고 일본정부와, GEF가 후원하였다. 이 자리에는 태평양지역국가를 대표하는 각국 정부 대표들, 토착지역공동체, 유럽연합 대표들과 대한민국 정부도 참여하였다.

디아즈 CBD 사무총장은 이날 워크숍의 핵심 주제인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2010년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CBD 세 번째 목표인 '유전자원 이용에서 오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투명한 국제법체제를 제공해준다"며, "나고야의정서의 장점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확실성, 명확성, 투명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용과 개발 및 인류복지(Human Well-being)에 기여할 것이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의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현재까지 26개국이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CBD에 기탁하였다. 이제 의정서 발효까지는 반 이상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에 대해 디아즈 총장은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런 추세라면 2014년 7월 7일까지 5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여 10월 6일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될 12차 CD 당사국총회에 맞춰 나고야의정서 첫 당사국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 <https://www.cbd.int/doc/speech/2013/sp-2013-11-25-suva-en.pdf>

호주 퀸즐랜드 정부, '생물탐사법 2004' 개정 검토 중

2015. 7. 2



Queensland

호주 퀸즐랜드 정부가 '생물탐사법 2004(Biodiscovery Act 2004)'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탐사법'은 퀸즐랜드 주의 영토 및 영해에서 발생하는 생물탐사 활동(상업제품 개발을 위해 호주 생물자원을 연구 및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퀸즐랜드 정부는 '생물탐사법' 검토(안)를 공개하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전자원을 탐사, 사용하는 생명공학, 제약회사, 연구기관, 자본/투자 펀드들에게 2015년 6월 29일까지

검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생물탐사법' 개정을 위해 법의 목적, 구조, 효율성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검토(안)은 '생물탐사법' 개정을 위한 권고사항 및 '생물탐사법' 규제 체제의 효율성과 공정성, 적시성,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 의견들을 요청하고 있다.

호주는 2015년 6월 현재 서명국이기는 하지만 아직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호주연방 정부는 지난 해 '연방 내 나고야의정서 이행모델'을 발표하면서, 호주가 생물다양성부국으로서의 입장만이 아니라, 생명공학기술의 선도국가로서의 입장을 동시에 대변하는 내용을 담은 생물탐사규정의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http://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f4b57c51-7efa-4e68-8a61-8102afe1d945>
호주 퀸즐랜드의 생물탐사법 : 2004: <https://www.legislation.qld.gov.au/LEGISLTN/CURRENT/B/BiodiscovA04.pdf>

호주, 토착식물 '구빈지'에 대한 생물해적행위 감시

2015. 4. 15



미국의 주요 화장품기업들은 수년간 호주 토착식물인 구빈지*에서 발견된 합성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왔다. 녹색의 이 작은 열매는 100g당 비타민C 2,000~3,000mg(오렌지는 100g 당 비타민C 50mg)을 함유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천연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한 열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구빈지 재배는 호주 김벌리(Kimberly) 지역부터 구빈지를 카카두플럼(Kakadu Plum)이라고 부르는 톱엔드(Top End) 지역에 이르기까지 호주 내 일부 토착민 그룹들에게 점차 신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의 속주주의적 특성으로 인하여 구빈지의 원산지국인 호주가 구빈지 추출물을 이용해 페이스 크림 제품을 개발하였더라도, 어떠한 국가에서 구빈지 관련 제품에 대해 기존에 특허권이 출원된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호주의 페이스 크림의 출시가 불허될 수도 있다. 이렇듯 특허가 호주 토착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년간 연구해온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다니엘 로빈슨(Daniel Robinson) 박사는 "사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수백 건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들은 많은 경우 사실상 호주에서 유래하거나 호주에서 반출된 '고유종 식물(Endemic Plants)'이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호주산 식물로는 '데이빗슨 플럼(Davidson's Plum)', '홉 부시(Hop Bush)', '에뮤부시(Emu Bush, 호주산(産) 무환자나무과(科)의 나무)', 그리고 구빈지가 있다.

로빈슨 박사는 "호주의 생물자원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이용되면서 정착 호주 내 영세 창업 기업들 및 토착민 기업들은 자국의 천연 자원을 이용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토착민들의 전통지식이 연구의 주 단초가 되었음에도, 이러한 식물들이 토착민들의 동의 없이 이용되는 것은 특정 토착민들에게 있어 문화적 침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로빈슨 박사는 '호주내 생물해적행위 규명 및 예방: 토착민들이 이용하는 전통 식물 관련 특허 동향(Identifying and Preventing Biopiracy in Australia: Patent trends for plants with Aboriginal uses)' 이라는 기사에서 "생물해적행위란 사람들이 토착지역공동체의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을 이용할 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익공유에 합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생물해적행위 사례는 많이 존재해왔으며 우리는 호주에서 일어난 그 중 일부를 파악해나가는 중이다."라고 했다. 사실 호주에는 특허가 출원되기 전 이익에 대한 계약(Benefit Agreement) 및 허가증을 요구하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로빈슨 박사는 "이러한 호주법의 경우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호주는 현재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적인 허점을 줄이고 호주의 생물자원 및 토착지역공동체가 관리하는 생물자원들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및 허가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문출처 : <http://www.abc.net.au/local/stories/2015/02/05/4174920.htm>

* 구빈지(Gubinge)

학명은 Terminalia ferdinandiana이며, 'billygoat plum' 혹은 'Kakadu plum'라고 불린다. 낙엽성의 나무로 호주가 원산지이며 열대림, 호주 서부 등지에 분포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원료 길라잡이'(fse.foodnara.go.kr/origin/)]

호주 그리피스대학 - 아스트라제네카 사, 천연물 탐색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2012. 10. 19



호주 그리피스 대학(Griffith University)과 영국 대형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AstraZeneca)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천연 의약품 개발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리피스 대학은 퀸즈랜드 식물 표본관과 퀸즈랜드 박물관 간 계약을 통해 육상식물과 해양생물의 표본을 채집하고, 표적물질 탐색과 의약화학물질 최적화 및 선별과정을 담당하였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협력 사업에 1억 호주달러 이상을 투자 하였고, 투자비용은 연구시설과 표본 확보 등 그리피스 대학과 협력기관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육상과 해양에서 45,000여점의 표본과 그로부터 천연물질 20만점이 확보되었다. 또한 협력기간 이후 그리피스 대학은 세계 주요 천연물 개발 기관의 하나로 성장하였고, 퀸즈랜드 지역의 해산 및 육상 생물과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크게 향상되었다. 두 기관의 협력 관계는 자원 제공국이 필요로 하는 역량 개발과 함께 자원보전 계획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 정보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원문출처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사례 연구

호주 마운트로망스 - 미국 아베다 사, 샌들우드(Sandalwood) 관련 협력 체결

2012. 9. 7



호주의 샌들우드는 서호주에 서식하는 산탈룸 스피카툼(Santalum Spicatum)이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로 대표적인 향수의 원료이다. 미국 기업 '아베다(Aveda Corporation)'는 천연 성분의 헤어 제품과 화장품 생산에 필요한 샌들우드를 조달하기 위해 호주의 최대 샌들우드 가공 공장인 '마운트 로망스(Mt Romance Australia)'와 원료 공급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아베다와 마운트 로망스는 원주민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해 원주민 소유 기업 '송맨 서클 오브 위즈덤(Songman Circle of Wisdom)'과 협력하였다. 송맨 서클 오브 위즈덤은 원주민이 직접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원주민과 기업이 동등한 관계에서 샌들우드를 마운트 로망스에 공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천연 원료를 안정적으로 아베다에 공급할 수 있었다. 또한 아베다는 원주민으로부터 직접 원료를 공급받음으로써 유통단축을 통해 샌들우드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불하였고, 마운트 로망스 역시 이익을 공유해 원주민의 지역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였다. 호주 샌들우드 사례는 ABS의 적용에서 천연 자원 공급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원문출처 : 생물다양성협약 기술보고서 제 38권

คุก아일랜드 시메텍 사 คุก투นู이 원주민 대표와 이익공유 체결

2012. 11. 23



คุก아일랜드 출신 마테슨(Graham Matheson)박사는 어렸을 때부터 골절 치료에 여러 식물의 추출물을 이용해 치료하는 것을 보아왔다. 때문에 2003

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UNSW)에서 연구하고 있던 마테슨 박사는 식물추출물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상업성 조사 사업을 คุก아일랜드에 제안했고, คุก아일랜드의 원주민 대표인 'Koutu Nui'와 이익공유 협정을 맺어 골절 치료와 화장품 개발을 위한 'CIMTECH'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CIMTECH는 콩과 식물(Vigna Marina), 코코넛야자(Cocos Nucifera), 열대 아몬드(Terminalia Catappa)로부터 천연 활성추출물을 특허 등록하고, 뼈와 연골 상처의 치료를 위해 무궁화속 식물(Hibiscus Tiliaceus)로부터 천연추출물과 관련 치료 성분들을 특허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마테슨 박사는 1972년부터 지속적으로 คุก아일랜드 생물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동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받았으며, CIMTECH 설립과 함께 Koutu Nui와 UNSW를 주주로 통합했다. 이로써 주주인 Koutu Nui와 UNSW는 금전적 이익으로 최소한 15만달러 가치의 주식을 받았으며, 호주 정부는 26만 달러의 연구비를 UNSW에 지원하였다.

피지(Fiji)에서 'ABS 및 지적재산권 훈련' 열려

2013. 8. 12

2013년 8월 12일부터 4일간 피지 난디(NADI)에서 'ABS 및 지적재산권 훈련' 행사가 열렸다. 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 사무국(SPREP)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주요 ABS 국가연락기관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지역 및 국가기관에서 온 25명의 참석자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ABS와 지적재산권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나 개발이 대부분 최종적으로 특허를 통해 지적 재산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본 훈련은 ABS 역량강화 이니셔티브의 2012/2013 업무계획의 일환으로서 각 ABS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s)들의 지적재산권과 ABS간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여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훈련에서는 ABS와 지적재산권의 관련성 및 의의를 설명하고 실질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제도가 어떻게 ABS와 연관되어 있는지 다룸으로써 관련 현안들을 국가연락기관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가연락기관들이 지적재산권과 ABS간의 긴밀성과 관련된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며 지역적 접근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제시하는 데도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로는 ABS와 지적재산권간의 전반적인 관련성에 대한 국가연락기관들의 인식 제고, ABS와 관련된 특정 지적재산권(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권이나 지적 표시 등)에 대한 이해력 향상, 현안과 관련된 초국경적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규명 및 개발을 위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경험 공유 등이 있다.

원문출처 : [http://www.abs-initiative.info/newsdetails.html?&cHash=f8ff49962f&tx_ttnews\[backPid\]=2&tx_ttnews\[tt_news\]=57](http://www.abs-initiative.info/newsdetails.html?&cHash=f8ff49962f&tx_ttnews[backPid]=2&tx_ttnews[tt_news]=57)



아랍에미리트 연방, 53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발효

2014. 12. 11



2014년 12월 11일부터 아랍에미리트 연방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다. 나고야의정서가 53번째로 발효되는 아랍에미리트 연방은 나고야의정서 국가연락기관을 환경수질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Water)로 지정 하였으나, 국가책임기관은 아직까지 지정하지 않고 있다.

2014년 12월 11일 현재, 기니, 마셜제도, 레소토, 도미니카공화국 등 4개국이 나고야의정서 비준서 혹은 가입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나고야의정서는 각 국가가 비준서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후부터 그 국가에 발효됨에 따라, 이들 4개 국가의 경우 2015년 1월 혹은 2월부터 나고야의정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현황 : <http://www.cbd.int/abs/nagoya-protocol/signatories/>
- 나고야의정서 국가연락기관 목록 : <http://www.cbd.int/doc/lists/nfp-abs.pdf>
-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 목록 : <http://www.cbd.int/doc/lists/nfp-abs-cna.pdf>



아랍에미리트, 생물다양성협약 ABS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014. 6. 1



6월 1일 아랍에미리트(UAE) 물·환경부와 CBD 사무국의 주최로 'ABS 나고야 의정서 역량강화 지역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아랍에미리트 물·환경부가 추진하는 전략 목표인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법률, 이니셔티브 개발을 통한 환경 지속가능성 도모'와 CBD의 3번째 목표 '유전자원 활용에서 오

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달성 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 Environment Program, UNEP)과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CBD 관계자들이 여럿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행사는 나고야의정서 조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별 생물다양성 전략 및 정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법률, 행정 절차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교류하는 장으로 5일간 진행되었다. 특히 다양한 지역기관 및 학술, 연구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보건부와 '국제건조지역농업연구센터'(The International Center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he Dry Areas, ICARDA)도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여 ABS 관련 경험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술탄 알완(Sultan Alwan) 아랍에미리트 수자원자연보전 고위 관계자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내 국가들의 ABS 역량개발과 CBD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아랍에미리트 물·환경부를 대표하여 개최 의의를 밝혔다. 술탄 알완은 연설에서 동·식물, 미생물을 포함한 아랍에미리트의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이러한 유전자원들은 '국가 경제 성장과 번영의 핵심축'이라 했다. 또한 "압도적인 사막기후에도 아랍에미리트는 풍부한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이러한 생물다양성을 보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워크숍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ABS 법적 체계 강화, CBD 3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워크숍 의의를 전했다.

유전자원은 우리 생활의 자원이자, 영양분, 의약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후를 안정화시키고 산업, 농업 분야의 원자재로 활용되며, 관광분야에도 크게 기여하여, 국가와 국민의 경제 발전의 핵심 공신으로서 그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원문출처 : Zawya(http://www.zawya.com/story/UAE_hosts_the_Regional_Workshop_of_Capacity_Building_for_Nagoya_Protocol_on_Access_and_Benefit_Sharing-ZAWYA20140601133213/)

요르단, 아랍 지역에서 첫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되다

2012. 1. 10



1월 10일, 요르단(Jordan)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아랍 지역의 첫 번째 국가이자 가봉(2011.11.11)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를 이행하고자 하는 나고야의정서는 50번째 비준서가 제출된 후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아흐메드 조그라프 CBD 사무총장은 요르단의 비준이 아랍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게 국제 사회가 나고야의정서를 발효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가 되며, 나머지 191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에게도 올해 자국내 비준 절차를 진척 시키도록 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제공국과 이용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공되므로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공정하고 동등한 이익분배의 기회가 확대되며,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촉진하는 체계가 수립될 것이다.

시리아, 16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

2013. 4. 5



아시아 서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중동지역의 시리아(시리아아랍 공화국, Syrian Arab Republic)가 4월 5일 16번째로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이 되었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이익의 공정하고 동등한 분배를 이행하고자 하는 나고야의정서는 2011년 2월 2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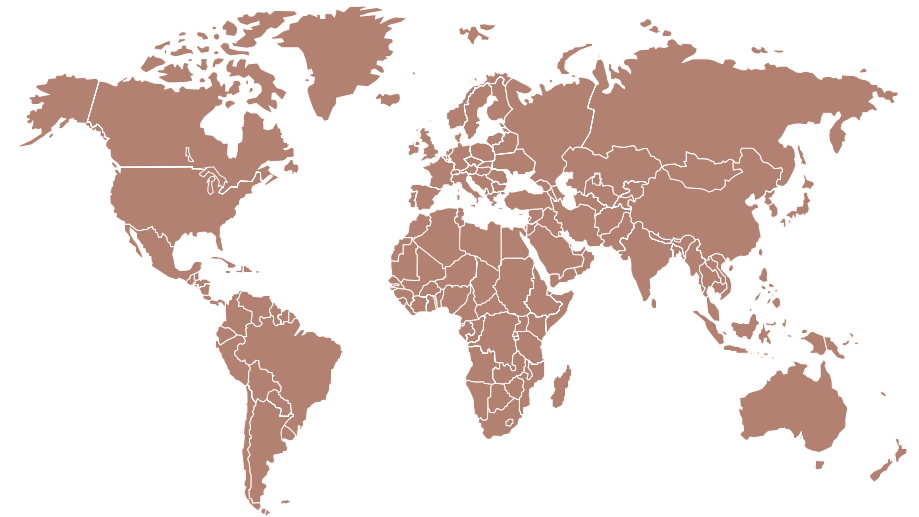
서명 기간이었으며, 총 92개국이 서명했다. 나고야의정서는 50번째 국가의 비준서가 제출된 다음 90일째 되는 날 자동 발효된다.

앞으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모두에게 더욱 확실한 법적 기반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비준국 정보는 <http://www.cbd.int/convention/parties/list/#tab=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전문은 www.cbd.int/abs/doc/protocol/nagoya-protocol-en.pdf에서 볼 수 있다.

*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요르단, 가봉, 르완다, 세이셸, 멕시코, 라오스, 인도, 피지, 에티오피아, 파나마, 모리셔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알바니아, 보츠와나, 미크로네시아, 시리아(2012년 5월 16일 기준)

국제기구



나고야의정서 비준 현황

2015. 10. 1



제70차 UN총회와 함께 열린 「Treaty Event 2015」(9.28~10.1)를 전후하여 쿠바, 필리핀, 지부티 3개 국가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했다.

쿠바의 경우 9월 17일에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12월 16일부터 발효하게 된다. 쿠바는 현재 ABS 체제를 준비하지는 않은 상황이나 IUCN과 UNEP과 같은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체제개발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쿠바는 과학·기술·환경부(Ministerio de Ciencia, Tecnología y Medio Ambiente)를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필리핀은 「Treaty Event 2015」기간 중인 9월 30일에 UN 조약국장인 Santiago Villalpando에게 가입서를 전달하면서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했으며, 12월 29일에 발효하게 된다. 필리핀은 「생물탐사에 관한 행정명령」, 「토착민 권리에 관한 법률」과 「Free PIC 및 절차에 관한 개정지침」을 마련한 상황으로 현재 환경자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를 국가연락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10월 1일에는 아프리카 홍해 요충지에 위치한 지부티(Djibouti)가 비준서를 기탁했다. 지부티는 2014년 12월 의회에서 「나고야의정서 비준안」을 통과시킨 후 비준절차를 진행해왔다. 국가연락 기관으로는 주택·도시관리·환경부(Ministere de l'Habitat, de l'Urbanisme et de l'Environnement)로 지정하고 있다. 지부티에서는 나고야의정서가 12월 30일부터 발효하게 된다.

이로써, 현재까지 68개국이 비준(또는 승인, 가입)하였으며, 62개국에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한 상태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15개국, 유럽지역에서는 9개국(EU 포함), 북미 1개국, 남미 8개국, 아프리카에서는 30개국, 오세아니아지역에서는 5개국이 비준(또는 승인, 가입)하였다.

나고야의정서 59개 당사국, 생물다양성협약 196개 당사국

2015. 5. 5



지난 5월 5일부터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나고야의정서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은 EU를 포함 59개국이 되었다. 콩

고는 2011년 9월 21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2015년 2월 4일 비준서를 기탁한 바 있다.

또한, 5월 5일부터 안도라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은 196개국이 되었다. 한편, 바이오안정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당사국은 현재 169개국이나, 6월 10일부터 코트디부아르에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 목록 : <http://www.cbd.int/information/parties.shtml>

CBD,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 구성

2015. 3. 23



2015년 3월 23일 디아즈 CBD 사무총장은 통지문(Notification)을 통해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Informal Advisory Committee, IAC)'의 구성을 공식 발표하였다.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는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결정(결정문 NP-1/2)을 통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COP-MOP)에서 설립한 기구로서, 사무국의 ABS-CH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및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동 결정에 따라 비공식자문위원회는 당사국들의 후보 지명을 바탕으로, 당사국 위주의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지난 2014년 11월 4일 '통지문 2014-127'을 발송하여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로부터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 전문가 후보를 추천 받았으며, 지명 마감시한을 2014년 12월 15일로 정하였다. 그러나 후보 지명이 적은 수에 그침에 따라 마감시한을 2015년 1월 30일로 추가 연장하였다. 사무총장은 "의정서 당사국들의 지명을 바탕으로, 결정문 NP-1/2에 따라 지역적 안배, 후보자의 관련 경험 및 ABS-CH 업무 참여를 고려하여 비공식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였다."고 이번 '통지문 2015-035'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사무총장은 "중부 및 동부 유럽 그룹(CEE)과 중남미 그룹(GRULAC) 당사국들은 지명 후보 수가 적었던 관계로 해당 지역에서는 각각 2명의 위원들만 선출될 수 있었다."고 밝히며 "다른 국가들이 차후 당사국이 됨으로써 회원 수가 늘어나고,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가 지역적 대표성을 적절히 보장할 수 있도록 차후 GRULAC과 CEE 당사국들의 두 번째 후보 지명에 대한 요청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는 ABS-CH 비공식자문위원회가 회기 중 적어도 한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식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 '점검기관 커뮤니케이션(Checkpoint Communiqué)' 관련 쟁점들을 포함한, 접수된 피드백과 관련된 기술 쟁점들을 다루고, 회의 결과를 2016년 12월에 열리는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 보고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두 차례의 IAC 회의 (2015년 10월, 2016년 6월 예정)와 온라인 토론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1차 IAC 회의의 경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에 대한 초청장을 회의 관련 정보들과 함께 이번에 선출된 IAC 전문가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회의 관련 문서들은 적당한 시일 내 사무국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관련 통지문 : <http://www.cbd.int/doc/notifications/2015/ntf-2015-035-abs-en.pdf>

'제13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및 두 의정서 당사국회의 2016년 12월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개최

2015. 1. 8



2015년 1월 8일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이 앞으로 열릴 CBD 당사국 총회 및 주요 회의들의 향후 일정과 장소를 공식 발표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 당사국은 "향후 열리는 당사국 총회는 협약의 두 의정서(카르타헤나 의정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를 포함하여 2주 동안 개최된다."고 결정(결정문 XII/27)하였으며, 회의 일정과 관련하여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및 두 의정서의 당사국회의는 2016년 11월 멕시코 로스 카보스(Los Cabos)에서 개최한다."고 결정(결정문 XII/34)한 바 있다.

이러한 COP 12의 결정을 바탕으로 CBD 사무총장과 의장단, 멕시코 정부는 주요 국제 회의들의 일정을 참작하여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제8차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를 2016년 12월 4일부터 17일, 멕시코 로스 카보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제19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와 '제9차 협약 제8조 차항 및 관련 조항에 대한 임시 공개작업반' 회의의 경우, 개최를 희망하는 당사국들이 없었던 관계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15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제20차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와 '제1차 이행 부속기구' 회의는 2016년 4월 26일에서 5월 7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CBD 회의에 대한 기타 정보는 일정에 따라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원문출처 : <http://www.cbd.int/doc/notifications/2015/ntf-2015-003-cop13-en.pdf>

올해 10월 발효되는 나고야의정서... 일본은 아직 비준 안 해

2014. 7. 14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가 10월 발효를 앞둔 가운데 당시 나고야의정서 이니셔티브를 주도했던 일본은 아직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앞으로가 주목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의약품 등 유전자원 이용에 있어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공평한 이익공유 절차를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0년 당시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의장국이었던 일본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각국 의견을 종합하여 채택에 이르게 한 공을 세웠으나 정작 자국 내 비준에 있어서는 부처·산업계 간 합의 지연으로 데드라인에 들지 못하였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CBD 사무국은 7월 14일 51개국의 의정서 비준을 공식 발표했다. 발효에 필요한 50개 비준국이 채워짐에 따라 나고야의정서는 정확히 90일 후인 2014년 10월 12일 정식 발효 된다.

2010년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의정서 범위에 포함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제공국(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재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생물해적행위(Biopiracy)’로 비판 받는 선진국 내 연구기관 및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 독점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세부사항은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중 함께 열리는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생물다양성의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나고야의정서와 같은 실질적인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하며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을 칭찬했다.

한편 일본은 관련 산업·부처 간 타협점 모색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준이 지연되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 부처 및 기관들은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논의하고자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학계 인사들을 초청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시하라 노부테루(Ishihara Nobuteru) 일본 환경성 대신은 7월 15일 내각 회의를 마친 후 “일본은 가능한 조속히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빠르면 내년, 의정서 관련 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문출처 : THE ASAHI SHIMBUN(http://ajw.asahi.com/article/sci_tech/environment/AJ201407160083)

나고야의정서 체제 이제 시작됐다

2014. 7. 8



50개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들(EU 제외)의 비준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10월 12일부로 발효된다.

지난 주 벨라루스, 부룬디, 잠비아,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니제르, 페루, 수단, 스위스, 바누아투, 우간다에 이어 이번 주 우루과이까지 비준하면서 올해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맞춰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나고야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가 열릴 수 있게 되었다.

50개 당사국의 의정서 비준으로 ‘2015년까지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및 국내법과 연계한 시행’을 목표로 한 ‘아이치 생물다양성 타겟 16’ 달성에도 더욱 한 발짝 다가가게 되었다.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을 증진하는 동시에 생물자원 이용에서 나오는 이익이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기회를 확장하여,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모두에게 더욱 강력한 법적 확실성 및 투명성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나아가 생물다양성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류 복지에 기여하도록 돕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창출할 것이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나고야의정서 같은 실질적인 법적 문서의 경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당사국들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반총장은 “(이번 비준으로)당사국들이 2002년 ‘지속 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의 약속을 이행함에 따라 ‘포스트 2015 지속가능개발어젠다’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밝혔다.

프라카쉬 자바데카르(Prakash Javadkar)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국무장관은 의정서 의의에 대해 “ABS 나고야의정서는 CBD의 형평성 조항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인도가 당사국총회 의장국인 기간 내 이러한 역사적인 의정서가 발효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자바데카르 국무장관은 50개국 비준을 가능하게 해준 동료 당사국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이제 지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풍요로운 미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인도해줄 CBD 이행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졌다”고 했다.

디아즈 CBD 사무총장은 “생물자원 활용에 대한 공평한 이익공유를 보장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는 것은 아이치타겟 16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지속가능 개발에 주류화 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디아즈 총장은 의정서를 비준한 모든 당사국들을 축하하는 한편 “아직 비준하지 않은 당사국들도 시간 내 비준하여 평창에서 열리는 제1차 나고야의정서 회의에 모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51개 비준국들이다. 알바니아, 벨라루스, 베냉, 부탄, 보츠와나,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덴마크, 이집트, 에티오피아, EU, 피지, 가봉, 감비아, 과테말라,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케냐, 라오스,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몽골,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니제르, 노르웨이, 파나마, 페루, 르완다, 사모아, 세이셸,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수단, 스위스, 시리아, 타지키스탄, 우간다,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트남

원문출처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http://www.cbd.int/doc/press/2014/pr-2014-07-14-Nagoya-Protocol-en.pdf>)

- * EU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여 의정서 당사국이지만 발효에 필요한 50개 당사국에는 산정되지 않는다.

나고야의정서... 진지하게 논의할 때

2014. 4. 14

2014년 4월 14일, 유럽 전역의 모든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EU ABS 규정(Regulation)'이 각료이사회를 통과했다. EU ABS 규정이 채택됨에 따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게 된 EU는 당장 내년부터 나고야의정서와 EU ABS 규정의 발효를 앞두고 되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 조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연구자들은 정작 이러한 상황에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심지어 일부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다.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의무를 부여하게 될 나고야의정서, 이제는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다.

나고야의정서의 역사는 1992년 브라질 리우(Rio)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BD는 '자연 자원에 대한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편, 이러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의 허락을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유전 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한 모든 세포, 종자, 생물구성요소' 등을 일컫는 개념이다. CBD는 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과 더불어 유전자원 활용에서 오는 이익의 공유도 주요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물 물질의 경우 이익공유는 식물 자원의 획득, 추출, 분리, 조사, 화학 합성물의 상업화 단계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CBD는 현재 92개국의 서명을 받았으나 법적 효력을 가진 시행 체제의 부재로 2010년, 법적 효력을 가진 국제 조약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 나고야의정서의 문제점

나고야의정서를 찬성하는 입장은 '국가가 유전자원의 접근을 통제하고 자원 활용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입장은 "지리학적인 사건이 한 국가에게 생물체에 대한 완전 통제권과 영구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라 말한다. 비록 적절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익공유 원칙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사실 나고야의정서의 제한 범위는 너무나 넓다. 또한 연구자들에게 부여되는 요구사항들은 지나친 측면이 있어 자칫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EU 규정 발효 이후 획득한 유전자원에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연구자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보유한 기존의 물질들이 이러한 예외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무적인 ABS 협정은 자칫 원산지국가 들에게 향후 이익공유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만드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는 막다른 길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즉 대부분의 유전물질 후보 분자들은 실패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특허는 상업제품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55년과 1982년, '미국국립암연구소(US National Cancer Institute)'는 12,000~13,000종의 식물 샘플 35,000점의 사전선별작업(Screening)을 실시한 결과 두 가지의 발견만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는 적중률 0.0.1%에 못 미치는 수치다. 압도적인 실험 비율에 비해 기대는 그만

큼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생물탐사활동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의심을 더욱 증가시킨다.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도 때론 장애물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수의 지역 커뮤니티에서 공식적인 대표자가 없을 경우, 이는 종종 협상을 가로막거나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나고야의정서 찬성론자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기업 및 기관들의 자연 자원 회피 현상'이다.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비록 위의 '미국국립암센터'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자연 자원 사전별작업(Screening)은 낮은 적응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해당 연구는 '파클리탁셀(Paclitaxel)'과 '캠토테신(Camptothecin)'이라는 두 가지 주요 케모테라피 물질을 발견해내는데 성공했다. 만약 이러한 연구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면 그만큼의 발견 기회도 줄어들게 되며, 나아가 모두가 공유할 '이익'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CBD가 비록 92개 서명국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서명하지 않은 한 국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비서명국이기에 때문에 유전물질이 나고야의정서를 위반한 채 접근되었더라도 미국은 어떠한 위반도 하지 않은 셈이 된다. 이는 미국 연구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입장을 제공하여 커다란 불평등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EU ABS 규정은 EU 내 연구자들에게 큰 제약을 주는 동시에, 원산지 국가에는 소량에 한 그치는 이익을 제공하게 된다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지금부터 제재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해야 할 것이다.

원문출처 : Chemistryworld(<http://www.rsc.org/chemistryworld/2014/05/we-need-talk-nagoya-protocol>)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33개국 돌파

2014. 5. 9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수가 33개국을 돌파하면서 발효까지 17개국만을 남겨놓게 되었다. 최근 4개국(가이아나, 헝가리, 케냐, 베트남)이 추가로 비준하면서 이제 나고야의정서는 발효에 필요한 비준국 수 66%를 달성했다. 비준국 중 가이아나는 캐리비안 국가 중 최초로 비준한 국가로서 그 의미가 더해졌다. 헝가리의 경우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비준한 국가이자 중동부 유럽 중 두 번째로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케냐는 아프리카 중 두 번째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부국이며 14번째 아프리카 비준국이 되었다. 베트남은 12번째 아시아 비준국이다.

이번 4개국 비준소식에 대해 디아즈 CBD 사무총장은 "가이아나, 헝가리, 케냐, 베트남의 비준으로 201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2차 CBD 당사국총회까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는데 더욱 한 발짝 다가가게 되었다"며 "지금 같은 비준 속도를 그대로 유지 및 가속화하는 것이 현재 중요한 사항"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의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지금까지 비준한 국가는 가이아나, 헝가리, 케냐, 베트남을 포함한 알바니아, 보츠와나, 부탄, 베닌, 부르키나 파소,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기니 비사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라오스,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노르웨이, 파나마, 르완다, 세이셸, 남아프리카, 시리아, 타지키스탄으로 총 33개국이다.

원문출처 : <http://www.cbd.int/doc/press/2014/pr-2014-05-01-Nagoya-Protocol-en.pdf>

ABS 나고야의정서란 무엇인가?

2014. 5. 9

1. 나고야의정서란 무엇이며 그 목적은?

ABS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아래 채택된 새로운 국제 조약으로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활용에서 오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를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CBD 3가지 목표를 이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는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2. 나고야의정서가 왜 중요한가?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준다.

-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더욱 예측 가능한 상황 설정
- 유전자원이 제공국을 떠날 때 제공국에게 이익공유를 보장

나고야의정서는 이익공유를 보장하도록 기여함으로써 유전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개발 및 인류 복지에 대한 생물다양성의 기여를 강화시킨다.

3. 나고야의정서가 다루고 있는 범위는?

나고야의정서는 CBD에서 다루지는 유전자원을 비롯한 이러한 유전자원의 활용에서 오는 이익을 다루고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는 CBD에서 다루지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활용에서 오는 이익까지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4. 유전자원에 대한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의무는 무엇인가?

나고야의정서는 계약 당사국들의 ABS 핵심 의무들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전자원 접근, 이익공유, 의무준수가 해당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조치 마련을 촉구한다.

접근 의무

국내 차원에서 취해야 할 접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법적 확실성, 명료성, 투명성 마련
- 임의적이지 않은 규칙 및 절차 제공
-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에 대한 분명한 규칙 및 절차 마련
- 접근 허가 시 허가증 발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확인증 제공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장려하는 환경 조성
- 인류, 동물, 식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박한 위기, 현재 긴급사항을 특별히 고려
- 식량 유전자원과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의 중요성 고려

이익공유 의무

국내 차원의 이익공유 조치들은 유전자원 활용 및 향후 유전자원의 상업화에서 오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함이다. 유전자원 활용에는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생화학 합성물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들 수 있다. 이익공유는 상호합의조건(MAT)의 대상이며 공유의 방법은 로열티 또는 연구 결과 공유 등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의무준수 의무

의무준수란 유전자원 제공국의 국내 입법 또는 규제 요건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상호 합의된 조건(MAT)이 반영된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의무이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국은 다음을 시행해야 한다:

- 사법권내 활용되는 유전자원들이 사전통보승인(PIC)에 따라 접근되고, 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그에 대한 상호합의조건(MAT)들이 설립되도록 조치 마련
- 계약 상대방의 요구조건들이 침해를 받았다고 간주되는 상황에서의 협조
- 상호합의조건(MAT) 내 분쟁해결 조항 장려
- 상호합의조건(MAT)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들의 법적 체계아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기회 제공
- 사법예외 접근(Access to Justice)에 대한 조치 마련
- 연구, 개발, 혁신, 상업화 전 단계, 또는 상업화의 모든 단계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기관(Checkpoints) 지정을 통한 유전자원 활용 감시 조치 마련

5. 나고야의정서는 어떻게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을 다루는가?

나고야의정서는 접근, 이익공유, 의무준수 조항을 통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다루며 또한 토착지역공동체가 그들이 보유한 유전자원에 접근을 허가할 수 있도록 권리 신장을 돕는다. 계약 당사국은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지역공동체의 관습법과 절차들을 명심해야 한다.

6. 이행을 돕는 도구 및 메커니즘

나고야의정서의 성공은 국내 차원의 효과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나고야의정서에 의한 다양한 도구 및 메커니즘이 계약 당사국의 이행을 도울 것이다.

- 정보, 접근 허가, 의무준수 관련 협력의 연락기관으로서 국가연락기관(NFPs) 국가책임기관(CNAs) 설립

- 국내 ABS 규제요건, NFP, CNA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ABS 정보공유체계(ABS-CH)
- 이행의 핵심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개발.
 - 국가적 필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자기 평가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역량이 고려될 수 있다.
 -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ABS 입법 제정
 - MAT 협상
 - 국내 연구 역량 개발
- 인식 제고
- 기술 이전
- 나고야의정서 금융 메커니즘인 지구환경기금(GEF)을 통한 역량 개발 이니셔티브 재정 지원

원문출처 : <https://www.cbd.int/abs/doc/protocol/factsheets/nagoya-en.pdf>

ABS란 무엇인가 (Access and Benefit- Sharing)

2014. 4. 28

ABS란 ‘유전자원 접근 및 활용에 대한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의 줄인 말로, “유전자원 활용에서 오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3가지 목표 중 하나이다. CBD는 총 15조항의 법률조항을 통해 당사국들의 ABS 관련 의무 및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ABS는 ‘사전통보 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과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PIC와 MAT에 대해서는 CBD 조항에 설명되어있다. CBD는 유전자원 접근을 요청하는 사람 및 기관의 경우 반드시 자원이 위치한 제공국과 사전통보승인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원 이용 기관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계약 조건들을 제공자와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 합의조건에는 “유전자원 활용에서 오는 이익을 반드시 제공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전자원 접근의 전제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편 유전자원 제공국들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CBD의 3대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전자원 접근을 활성화하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의 유전자원들은 기초연구에서부터 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따라서 유전자원 이용자는 연구자, 학계, 민간기업(제약회사, 농업, 원예, 화장품, 생명공학)들로 세분화된다.

토착지역공동체에서 전해져 오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들의 경우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정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전통 지식은 때로 신약개발, 화장품 개발로 이어지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CBD 제 8조 j항은 “국내입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절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토착민사회 및 현지사회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보전 및 유지하고, 이러한 지식·기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 하에 이들의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원 이용 사례

- 에이즈 바이러스(HIV-Type 1) 치료제: 말레이시아 우림에서 발견한 나무(Calophyllum 종) 유액에서 추출한 합성물(Calanolides)의 개발
- 육종 및 배양을 위한 자생 식물자원의 이용: ‘모나 라벤더(Mona Lavender)’는 남아프리카 자생종인 두 Plectranthus 종들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로써 현재 유럽, 미국, 일본 전역에 장식용 식물로 널리 거래되고 있다.
- 다년생초의 치료적 활용: Sathan Kalanja 또는 Arogyappa로 알려진 Trichopus zeylanikus는 지역적, 전통적으로 피로회복을 위한 약초로 활용되어 왔다.

유전자원 활용에 대한 이익공유에는 유전자원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 공유, 관련 기술 이전, 생물공학 연구 참여 등이 있다. 이익공유는 또한 유전자원을 통한 제품을 개발하여 상업화하였을 경우 금전적 이익도 포함된다.

이익공유 사례

- 연구 교류: 제공국 연구자와 이용국 연구자와의 협력
- 공동연구: 이용국 연구자가 제공국의 토착지역공동체 연구 보조원을 고용하여 연구
- 장비 제공, 인프라 향상, 기술 공유: 유전자원 이용자가 제공국에 실험실, 약 제조실을 설치
- 로열티 지불: 유전자원 제품의 상업화에 대한 로열티는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제공자와 이용자간에 공유됨
- 관련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서 활용한 의약품의 우선적 접근
- 지적재산권의 공동 소유: 이용자와 제공자가 특허받은 유전자원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경우

원문출처 : <https://www.cbd.int/abs/factsheet/>

디아즈 사무총장, 한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촉구

2014. 9. 29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국에서 열릴 제12차 CBD 당사국총회(COP 12)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준비 회의 참석차 이번 강원도 평창을 방문했다. 총장은 인터뷰에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강조하며 이를 다룬 나고야의정서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디아즈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알고 있다. 생물다양성 또한 창조경제의 일환이다. 유전자원의 이용 없이는 보건, 농업, 어업, 산림 분야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한국의 조속한 의정서 비준을 촉구했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당시 200여국의 CBD 당사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채택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 협정으로, 유전자원 이용국이 제공국에게 유전자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투명한 법적 체제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공국 입장인 개도국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환영하는 반면, 선진국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서로 상반된 입장이다.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를 위해서는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총 29개국이 비준한 가운데 만약 올해 10월전까지 50개국 비준국이 채워지면, 이번 CBD COP 12에서 나고야의정서 제1차 당사국 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은 ABS 국내법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아직 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국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익 충돌로 인해 한국의 비준 절차는 다소 지연되는 실정이다. 특히 제약, 보건 산업을 대표하는 민간 분야들은 나고야의정서에 가장 민감한 분야들로서 현재 나고야의정서 비준에 가장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비준 전망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한국의 비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사무총장과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한국은 나고야의정서 비준 여부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무총장은 “실사 해당 이용국이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이용국은 여전히 의정서 규칙을 따라야 한다. 어차피 (규칙을) 따라야 한다면 차라리 비준하는 것이 낫다. 적어도 비준하면 협상 테이블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림출처 : www.cbd.int

원문출처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4/02/116_152196.html

디아즈 사무총장은 의정서 비준에 대해 “빠르면 올해 7월 비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제3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 위원회 회의(ICNP-3)서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위한 준비 기반 다져

2014. 2. 28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2014년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2014년 2월 28일, '제3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 위원회(Ad Hoc-Open-ended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이하 'ICNP-3')가 강원도 평창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각국 정부는 제1차 당사국회의(COP-MOP)를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의정서 발효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등 의정서 이행의 확고한 기반을 다졌다.

디아즈 CBD 사무총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가까워짐에 따라, 이를 대비한 준비 기틀을 확고히 다져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번 ICNP-3는 이러한 관점에서 핵심이 되는 권고안들을 채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의정서 발효를 위해 자발적 의지를 아끼지 않은 CBD 당사국들이 자랑스럽다"며 "이러한 놀라운 타협 정신과 의지를 의정서 발효와 제1차 COP-MOP까지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무총장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해 "의정서가 발효되면 아이치생물다양성 타겟 16의 달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최초로 달성된 타겟이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의정서 발효는 녹색 경제, 지속가능개발,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법적 체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 비준 후 90일 째 되는 날 발효되며 현재까지 총 29개국이 비준했다.

다음은 ICNP-3의 주요 의제 및 논의 결과이다.

의무준수(Compliance)

ICNP-3에서 정부들은 의무준수 절차 및 체제에 대해 주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는 나고야의정서 제1차 COP-MOP에서 기존 차이점들을 해결하고, 의정서 제30조에 명시된 의무준수 절차와 체제를 승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이하 'GMBSM')

ICNP-3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바로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계(GMBSM)'의 필요성 및 양식에 대한 것이었다. 즉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이 월경성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 또는 사전통보승인(PIC)을 허가·획득할 수 없는 경우 등, 여러 이익공유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는 GMBSM이 과연 필요한 제도이며, 또 언제 합의될 것인가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ICNP는 GMBSM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합의했다.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

CNP-3 기간에 ABS-CH 시범 운영이 실시되면서, 훈련 세션(Training Sessions)들이 개최되었다. 공식 논의에서, 정부들은 의정서 이행을 위해 전적인 기능을 갖춘 ABS-CH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따라서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점까지 ABS-CH가 온전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감시 및 보고(Monitoring and Reporting)

제1차 COP-MOP은 당사국들에게 의정서 이행에 대한 '중간 국가 보고서(An Interim national Report)'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간 보고서는 의정서의 실효성을 최초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ICNP-3은 사무국에게 중간보고서 제출에 대한 양식(안)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으며, 중간 보고서에 담기게 될 정보와 ABS-CH에 게재되는 정보를 통합할 것을 요청했다.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

ICNP-3은 COP-MOP에게 개도국들의 능력 배양을 돕는 전략 체제를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이 체제는 개도국에게 나고야의정서 현지 이행의 초석이 되는 능력 개발 전략을 제공하며,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의정서 이행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위한 'UN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새로운 웹사이트, 'ABS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 House, 이하 ABS-CH)'가 2013년 2월 6일 WIPO 정부간위원회에 소개되었다. ABS-CH는 CBD 제18.3조와 나고야의정서 제14조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을 감시하여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이다.

CBD 담당직원은 “유전자원 활용에 대한 감시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ABS 의무 준수를 실제화하기 위함”이라고 ABS-CH 홈페이지 개설 목적을 밝혔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당사국들은 유전자원 접근을 허가할 때, 이에 대한 허가증을 발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 허가증은 ABS-CH에 전달되고,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의무준수 인증서가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나고야의정서 제17조에 따라 당사국들은 특정 점검기관을 통해 유전자원 이용자들로부터 유전자원 출처 및 활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ABS-CH에 전송할 의무를 갖게 된다. 경우에 따라, “기밀”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국들이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한편, 행사 참가자 중 일부는 “의정서를 첫 번째로 비준한 국가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이란 대표는 “국내법의 많은 법률들이 나고야의정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각 국가들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국내법을 개발/정비토록 그들의 역량 개발을 돕는 활동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ABS-CH 홈페이지는 시범 운영 중에 있다.(<http://absch.cbd.int/>)

원문출처 : <http://www.ip-watch.org/2014/02/07/new-access-and-benefit-sharing-clearing-house-website-presented-at-wipo/print/>

1.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체제(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의 필요성과 양식(나고야의정서 제10조)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는 “각 당사국은 월경성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전통보승인의 부여와 혹은 사전승인취득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체제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자가 공유하는 이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세계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10조(세계 다자간 이익공유체제)는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 이하 ICNP)’ 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고려되었으며, 11차 당사국 총회(COP 11)에서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체제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가능한 활동들을 고려하도록 하는 초안이 제시되었다.

결정문 XI/1(decision XI/1)에 따라 제11차 당사국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 제10조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수행하도록 요청되었고,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부속서 1 Part A와 관련된 세계 다자간 이익공유체제에 대한 견해와 부속서 1 Part B에 관련된 여러 견해들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기금 유용성을 주제로 모인 전문가그룹의 견해를 종합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전문가그룹은 ICNP 3차 회의 때까지 관련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2.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나고야의정서 제14조는 ‘접근 및 이익공유(ABS) 정보공유체계’를 CBD 정보공유체제의 일환으로 설립하였다. ABS 정보공유체계는 ABS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특히, 각 당사국에게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정보 접근을 제공할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채택 후 ABS 정보공유체계 개발을 위한 노력으로 2011년 4월, ABS 정보공유체계 운영 양식에 대한 전문가회의(Expert Meeting)가 개최되었다. ICNP 1차 회의에 앞서 개최된 이 회의는 ICNP 1차 회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들의 나고야의정서 초기 비준 및 이행을 돕기 위해 ABS 정보공유체계 설립에 대한 실용적인 고려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ABS정보공유체계에 대한 연구보고서(Document UNEP/CBD/ABS/EM-CH/1/2)가 사무총장의 요청 아래 마련되었으며 ICNP의 논의를 돕기 위한 전문가회의 보고서(Document UNEP/CBD/ABS/EM-CH/1/4)가 ICNP 1차 회의에 제시되었다.

ICNP 1차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ABS 정보공유체계의 시범운영을 제안하고, 사무총장에게 권고안 1/1(Recommendation 1/1)부속서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시범운영이 이행되도록 요청

했다.

ICNP 2차 회의에서는 ABS 정보공유체계 시범 이행에 대한 성과 보고서와 시범운영단계에서 개발된 체제 및 적용 방식(Document UNEP/ICNP/2/8), ABS 정보공유체계 운영 양식 초안(Document UNEP/ICNP/2/9)을 논의했다.

결정문 XI/1에서 제11차 당사국총회는 사무총장의 ABS 정보공유체계 시범 이행을 돕고, 기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비공식 자문위원회(Informal Advisory Committee, 이하 IAC)'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IAC는 온라인 토의 뿐만 아니라 오는 6월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후, ICNP 3차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COP 11는 또한 사무총장에게 국가 허가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허가증에 대한 정보 등록과 국제적으로 인증된 의무준수 인증서에 대한 기술 문제 등의 여러 ABS 정보공유체계 시범 성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시범 이행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ABS 정보공유체계 운영 초안을 개정하여 ICNP 3차 회의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

원문출처 : <http://www.cbd.int/abs/key-issues.shtml>

나고야의정서와 생물문화적 권리

2013. 12. 6

나고야의정서 비준이 성공적으로 순항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토착지역사회는 나고야의정서가 과연 그들의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반대 이유로는 의정서가 생물주권을 국가의 사법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유전자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나고야의정서가 지역사회 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권리 확보에 유례없는 도움을 준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토착지역민들에게 법적인 테두리에서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에는 '각 국가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을 존중하고 보전할 것'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국가가 그러한 전통지식을 다른 분야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통지식의 상업적 혹은 학술적 사용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항과 제10조 c항은 토착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보전에 대한 전통사회의 관리역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생태계의 사회적 관리에 대한 인식은 의정서 내에서 '생물문화적 권리(Biocultural Rights)'라고 표현되는 특징적 새로운 개념을 부상시켰다. 생물문화적 권리란 지역 사회가 생태계를 운영, 관리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가꾸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생물자원과 문화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개념이다.

생물문화적 권리가 점차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지역사회의 생태계에 대한 꾸준한 기여와 그들의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만이 결국에는 장기적인 현지 내(In-situ) 생물다양성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경험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의정서의 전통지식과 관련된 조항으로는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외에도 제7조, 제12조, 제5조를 들 수 있다. 제12조는 국가가 전통지식에 접근할 때 그 지역사회의 관습법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제5조는 제8조보다 더 의무성이 강하여 관련국들이 전통지식을 활용할 때 지역사회와 해당 이익공유를 '확실시(Ensure)'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나고야의정서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생물문화적 권리를 확장하는데 있어 전략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생물문화적 권리는 나고야의정서를 통해 점차 부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나고야의정서를 기반 삼아 자신들의 생물문화적 권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25개국 돌파, 발효시점의 반환점 돌아

2013. 11. 8

2013 'The UN Treaty Event'에서 5개국이 새롭게 비준에 참여함에 따라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더욱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정서 발효에는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25개국이 비준하였다. 발효까지 절반만을 남겨 놓은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이번 비준에 참여한 5개국은 부탄, 코트디부아르, 기니 비사우, 인도네시아와 노르웨이로써, 선진국 중 노르웨이가 최초로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이처럼 나고야 의정서 비준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체제(ABS)가 점차 중요한 국제적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준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전세계에서 4번째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이다. 이처럼, 생물자원 부국들이 의정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ABS가 향후 자연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비준소식에 대해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세계 모든 지역(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이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한 것은 그만큼 ABS를 통한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이라는 의정서 본래의 취지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금까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부탄, 코트디부아르, 기니 비사우, 인도네시아, 노르웨이를 포함하여 알바니아, 보츠와나, 코모로,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인도, 요르단, 라오스,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몽골, 파나마, 르완다, 세이셸, 남아프리카, 시리아, 온두라스, 타지키스탄으로 총 25개국으로 집계된다.

민간분야의 ABS 관련 국제조약, 가이드라인

2013. 10. 11

유전자원탐사(Bioprospecting)에 대한 '바이오협회(BIO)' 가이드라인

세계 최대의 생명공학 산업협회인 '바이오협회(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 BIO)'는 기업 회원들이 생물자원을 탐사할 때 지켜야 할 전반적인 규칙과 실천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바람직한 유전자원탐사 활동에 대한 기업 회원들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기업들이 구체적인 사법체계 안에서 유전자원탐사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 등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대한 '세계제약협회(IFPMA)' 가이드라인

'세계제약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 IFPMA)'는 생명공학과 백신분야뿐만 아니라 세계적 연구기반의 대표 제약기업이 포함된 비영리·비정부 단체이다. 이 협회의 가이드라인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모범적으로실천한 기업들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스위스국가경제국(SECO)'의 'ABS관리도구(ABS-MT)'

'스위스국가경제국(Swiss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SECO)'과 'Stratos Inc.'가 개발한 'ABS 관리도구(ABS Management Tool, ABS-MT)'는 이용자(Users) 및 제공자의 ABS 자발적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 지침서(Handbook)이다. 2007년에 처음 발간된 이 지침서는 기업과 연구자, 토착민, 정부의 CBD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 및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돕는 목적에서 발간되었다. 그 후 2012년 5월에 업데이트 되면서 최근 ABS 모범 사례와 당사국의 나고야의정서 도입과 이행 준비를 위한 지침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원문출처 : <http://www.cbd.int/abs/instruments/default.shtml>
http://www.bio.org/sites/default/files/Guidelines%20for%20BIO%20Members%20Engaging%20in%20Bioprospecting_0.pdf
http://www.ifpma.org/fileadmin/content/Innovation/Biodiversity%20and%20Genetic%20Resources/IFPMA_Guidelines_Access_to_Genetic_Resources.pdf
http://www.sib.admin.ch/uploads/media/Updated_ABS_Management_Tool_May_2012_01.pdf

미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접근규칙에 관한 국제행동지침

Micro-organisms Sustainable Use and Access Regulation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MOSAICC)

미생물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접근을 위해 1997년 유럽집행위원회의 지원아래 벨기에 미생물기관(The Belgian Coordinated Collections of Micro-organisms, BCCM)에서 'MOSAICC'이 개발되었다. MOSAICC은 미생물유전자원과 관련된 이익공유, 기술이전, 과학기술협력 등을 다루는 자발적인 행동지침이다.

CBD 원칙 준수를 위한 연구프로젝트 기금제안 가이드라인

German Research Foundation - Guidelines for Funding Proposals Concerning Research Projects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독일연구재단(Th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DFG)의 ABS실무그룹이 초안을 작성한 이 가이드라인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획할 때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CBD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2008년 이후, 가이드라인 준수는 DFG기금 이용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ABS) - '유전자원 학술연구의 좋은 사례' 브로셔 발간

Access and Benefit sharing - Good Practice for academic research on genetic resources

2006년 'Swiss Academy of Sciences' 는 학술연구기관들의 CBD ABS조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ABS) - 유전자원 학술연구 좋은 사례』라는 이름의 브로셔를 출간했다. 이 브로셔에는 ABS 체제와 관련연구사례, 단계별 절차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으며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발간되었다. 해당 브로셔는 'Swiss Academy of Sciences' 홈페이지(http://www.scnat.ch/ 또는 www.iisd.org/pdf/2006/abs_swiss_abs_good_practice.pdf)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전문 연구단체 및 학계의 연구자 윤리강령과 지침

인류학, 민족생물학, 생약학, 생태학 분야의 다양한 전문 연구단체 및 학계에서는 연구분야의 윤리적 가치 확립과 모범 사례의 기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윤리강령과 자발적인 지침들을 개발해왔다. 이 윤리강령과 연구 지침들에는 사전통보 승인, 이익공유, 정보 배포에 따른 연구자의 행동양식들이 담겨 있다. 아래는 전문연구단체들의 관련 윤리강령 및 지침들이다.

- Society of Economic Botany (SEB): Guidelines of Professional Ethics
http://www.econbot.org/pdf/SEB_professional_ethics.pdf
- International Society of Ethnobiology (ISE): Code of Ethics
http://ethnobiology.net/what-we-do/core-programs/ise-ethics-program/code-of-ethics/
- Society for Applied Anthropology (SfAA): Ethical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http://www.sfaa.net/sfaaethic.html

원문출처 : http://www.cbd.int/abs/instruments/default.shtml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ABS) 조항의 자발적 이행을 위해 전세계 식물원들은 그룹 또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ABS 조항의 자발적 접근방식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여기관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원칙'과 '국제식물교환네트워크(IPEN)'가 개발되었다.

참여기관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원칙

(Principl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for Participating Institutions)

21개국 28개 식물원과 식물표본관은 ABS 공통접근방향 모색을 위한 노력으로 '참여기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원칙'과 '공동 정책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이 원칙에는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이전 획득한 유전자원도 협약 이후와 마찬가지로 이익을 공유해야 함에 있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장려하고 있다.

세계식물교환네트워크(IPEN) - 식물생체획득 및 유지, 공급을 담당하는 식물원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for Botanic Gardens Governing the Acquisition, Maintenance and supply of Living Plant Material)

'세계식물교환네트워크(IPEN: International Plant Exchange Network)'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접근 및 이익공유 (ABS)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유럽 식물원들이 설립한 네트워크다. 식물원간 식물 재료의 비상업적 교환을 다루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참가하려는 식물원은 반드시 'IPEN 행동강령'을 채택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생체이전에 대해 네트워크의 공동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IPEN의 '식물원 행동강령'은 식물원의 식물생체 습득 및 유지, 공급, 이익 공유와 사전통보승인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세계 식물원 간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위한 온라인 자료

큐 왕립식물원(Royal Botanic Gardens Kew)과 '세계식물교환네트워크(IPEN)', '세계식물원보전협회(BGCI)'는 세계 식물원의 ABS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자료를 구축했다. 이 사이트(http://www.bgci.org/resources/abs/)에는 그 동안 세계 식물원들의 ABS 자발적 이행을 위한 ABS 정책개발과정, '참여기관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원칙', 그 외 관련 사례연구 등이 소개 되어있다.

원문출처 : http://www.cbd.int/abs/instruments/default.shtml



유전자원에는 동물, 식물, 미생물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러한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주체도 연구 및 상업 목적에 따라 식물원, 연구자, 민간 기업 등 여러 분야로 세분화된

다. 유전자원이 다양한 만큼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분야도 농업에서부터, 의약, 원예, 화장품, 생물공학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을 공유하는 ABS 체제도 분야별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ABS 여러 분야 중 농업분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1.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ITPGRFA: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세계식량 안보를 목적으로 한 국제조약이다. 2004년에 발효되어 정부, 농민, 연구기관, 농업관련 산업분야가 유전자원을 수집, 활용 및 이익을 공유하는 데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ITPGRFA의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와 ‘표준물질이전협정(SMTA: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을 통해 조약에 명시된 35종의 식량작물과 29종의 사료작물에 대한 용이한 접근이 최초로 국제적 단계에서 이행되게 해주었다.

2. 식물생식질의 수집과 이전을 위한 국제행동강령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Plant Germplasm Collecting and Transfer)

‘식물생식질의 수집과 이전을 위한 국제행동강령’은 유전자원의 합리적인 수집과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적 침식 방지 및 식물 생식질 제공자와 수집가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1993년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총회에서 채택되어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의 협상을 거쳤으며 ‘생물다양성 협약(CBD)’와 기타 생물다양성관련 법적 조치들과 조화를 이루는 자발적인 행동강령이다.

3.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ABS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in Research Projects)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ABS 가이드라인은 중앙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Bioversity International’이 주최하고 ‘UNEP-GEF’가 수행한 ‘농업(원예와 야생 식물종) 생물다양성의 이용과 현지 내 보존(In situ/On farm Conservation and Use of

Agricultural Biodiversity (Horticultural Crops and Wild Fruit Species)’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현지 내 보전이라는 맥락에서 ABS를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의정서, ITPGRFA를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사전통보승인, 물질이전협정, 이익공유체제, 정보공유협정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원문출처 : <http://www.cbd.int/abs/instruments/default.shtml>

ABS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전문가회의 개최

2013. 6. 3

‘나고야의정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역량개발 전략프레임워크 전문가회의’가 6월 3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영국정부와 북아일랜드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알바니아, 안티가바부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독일, 인도, 일본, 세이셸, 영국, 북아일랜드를 대표하는 15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UN식량농업기구(FAO)의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ITPGRFA)’, ‘다자간 신탁 ABS 역량 개발 이니셔티브’, ‘제3세계 네트워크’, ‘고유민족생물다양성정보네트워크(IBIN)’가 참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전문가회의를 소집한 디아스 CBD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2015년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나고야의정서관련 국내법 제정 및 개정절차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앞서 금번 전문가회의는 ABS 역량개발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써 향후 ABS 전략프레임워크 마련의 필수조건이자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틀간 열린 이번 나고야의정서 전문가회의는 그동안 각국이 ABS 대응역량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교훈들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ABS 이행 관련 문제점으로는 ‘ABS 프레임워크의 지나친 규제’가 꼽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ABS 프레임워크는 생물유전자원 남용에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어 ABS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ABS 프레임워크의 지나친 규제와 완화 사이의 균형을 맞춘 포괄적인 ABS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 외 고충사항으로는 ‘생물유전자원의 비영리적 목적과 영리적 목적의 연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학문적 연구나 비영리적 연구를 위한 생물유전자원에는 ABS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기타의견으로 “ABS 대응 역량강화 전략프레임워크를 좀 더 확대하여 지구분류화사업(GTI)나 세계식물보전전략(GSPC)과 같은 기타 ABS관련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자”라는 의견과 “ABS 전략 프레임워크는 각 국가의 특수상황과 맥락에 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 세분화된 ABS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제2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 위원회 회의 개최

2012. 7. 2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에서는 제2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ICNP: 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 Protocol on ABS)를 올해 7월 2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다고 알렸다.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열릴 때까지 이를 위한 준비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임시로 만들어졌다. 제1차 정부간위원회는 작년 6월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으며, 1)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공유체계 운영, 2) 개발도상국의 능력 배양 및 개발과 인적 자원 및 기관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 3) 유전자원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4) 의정서의 의무 준수 증진과 불이행 시의 조치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권고가 채택되었다.

올해 7월에 열릴 제2차 정부간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관해 논의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CBD 홈페이지(<http://www.cbd.int/doc/?meeting=ICNP-02>)에서 확인가능하다.

제2차 정부간위원회 논의 사항

- 의정서 발효에 앞서 예산 프로그램의 개발
-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재정 체계 및 자원 유통에 대한 지침 고찰
- 의정서에 대한 당사국 회의의 절차 규정
- 의정서와 관련된 당사국의 첫 회의 의제(안) 고찰
- 범세계적인 다자간 이익공유 체계를 위한 양식
- 1차 회의의 미해결 사항 논의

나고야의정서 서명 마감

2012. 2. 1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는 2011년 2월 2일 서명을 시작하여 올해 2월 1일 92개국으로 서명을 마감하였다. 대표적인 서명국으로는 영국, 프랑스,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리나라, 일본이 있으며,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명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 국가의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이후 발효 된다. 지금까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한 국가는 가봉과 요르단 등 2개국이다.

2012년 2월 1일까지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가입서를 기탁하는 것으로 비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기 위한 정보는 생물다양성협약 홈페이지(<http://www.cbd.int/abs/becoming-party/>)에서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나고야의정서가 강제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 모두에게 더욱 확실한 법적 기반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고 동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제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과 의무준수위원회 관련 의견제출 공지

2015. 5. 13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세계다자간이익공유체제(GMBSM)의 필요성 및 운영방안(Decision NP-1/10)과 관련하여서는 2015년 9월 30일까지,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 도모 및

불이행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절차 및 제도적 방법(Decision NP-1/4)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1일까지 정부, 국제기구, 토착민 공동체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본 의견 제출은 전문가회의 및 의무준수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전문가회의는 2016년 2월 1일부터 3일까지, 제1차 의무준수위원회는 2016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로드맵 채택

2014. 10. 6



지난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 12)'가 33개의 결정문을 도출하며 2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 국의 대표단을 포함하여 약 25,000명이 참가했으며, '평창 로드맵'과 '강원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증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 관련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재정체계, 국가생물다양성 행동계획(NBSAP), 유전자원 및 전통식식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등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가 주도한 바이오브리치 이니셔티브,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강화 이니셔티브, 그리고 평화와 생물다양성 대화 이니셔티브가 선언문에 포함되었다.

한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COP 12 기간인 10월 12일 발효되면서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 1)'가 동시 개최되었다. 현재 총 54개국이 나고야의정서의 비준국이며, 이들 국가의 대표단을 비롯한 비 비준국 정부 대표단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COP-MOP 1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COP-MOP 1에서는 나고야의정서 조항의 준수를 촉진하고 불이행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의무준수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시범 운영되고 있던 'ABS 정보공유체계(ABS-CH)'가 COP-MOP부터 공식 운영되었다. ABS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의무준수에 대한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 대표단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2016년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제2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로 미룬 채 이번 회의를 폐회하였다.

관련 CBD 통지문 : <http://www.cbd.int/doc/notifications/2015/ntf-2015-049-abs-en.pdf>

제8차 '협약 제8조 차항 및 관련 조항에 대한 임시작업반회의(WG8J)', 전통지식의 주요 역할 재확인

2013. 10. 12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항(전통지식) 작업반 회의(Ad-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rticle 8(j))'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지난 10월 12일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부와 토착지역사회 대표자들은 나고야의정서를 포함해 CBD의 주요 활동에 토착지역사회 전통지식을 통합하자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식네트워크(Knowledge Networks)개설, 역량강화 지원 및 토착지역사회의 전통지식과 관습법 등을 CBD의 과학기반활동에 통합하자는 권고로 마무리되었다.

디아즈 CBD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제8조 j항 작업반은 토착지역사회 이슈를 널리 알리고, 토착지역사회의 전면적인 CBD 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2011-2020 생물다양성전략계획'의 목표달성에도 기여해왔다."고 논평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대표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지식/문화교류 글로벌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 'UNDP 적도 계획(Equator Initiative)'에 기반해 최근 설립된 '토착지역민 네트워크(World Indigenous Network)'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 생물다양성과과학기구(IPBES)같은 과학기반 기구와 전통지식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 되었으며, 논의 결과는 IPBES에 전달될 예정이다. IPBES관계자가 회의에 초대되어 토착지역사회 정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다양한 증거에 기반한 생물다양성 데이터 접근 등에 대한 기여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및 전통지식 활용에서 오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에 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토착지역사회의 전면적 참여 지원을 논의했다. 자발적 가이드라인은 향후 CBD 당사국들의 나고야의정서 8조 j항 관련 국내법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CBD당사국 들의 전통지식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Sui Generis System) 개발과 지원을 촉구했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NBSAP)' 개정을 위한 CBD, CMS, CITES 연락기관 협력 워크숍 개최

2013. 6. 25

6월 25일부터 3일 동안 카메룬 두알라에서 프랑스어권 아프리카국가 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s)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이 열렸다. 카메룬 환경부가 주최하고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NBSAP)'개정 과정에 '이동성 야생동물보호협약(CMS)'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목표와 지표 등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국가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8개국(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세네갈, 토고)과 CBD, CMS, CITES의 연락기관들이다. 참여국들은 심도 높은 프레젠테이션과 역할극, 그룹토론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생물다양성목표 설정시 CBD의 아이치목표를 반영하고 국가목표설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문제와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핵심 논의사항으로는 새로운 국가생물다양성목표 설정에 다른 환경협약들의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각 환경협약의 연락기관과 더욱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국가마다 국가생물다양성목표와 이행계획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환경협약을 포함시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도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국가보고서 작성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지구환경금융(GEF) 연락기관과 기타 환경협약 국가연락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더욱 확실한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다. 총체적인 권고사항으로는 CMS와 CITES 외에도 람사르 협약, 세계유산협약 같은 생물다양성 관련 환경협약들의 목표도 국가생물다양성목표와 이행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고려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심도 높은 프레젠테이션과 관련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환경협약 연락기관들의 큰 호응을 얻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생물다양성 논의를 위한 유엔과 디아즈 사무총장의 만남

2013. 2. 15



CBD 사무국의 Bráulio Ferreira de Souza Dias 사무총장은 1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UN을 방문하여 반기문 사무총장과 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생물다양성 의제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Dias 사무총장은 생물다양성을 위한 2011-2020 전략계획과 아이치목표 이행을 통해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나고야의정서 비준상황을 듣고, UN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필요한 비준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개최될 제12차 당사국총회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총회와 함께 개최될 수 있도록 지지할 것임을 나타냈다.

Dias 사무총장은 또한 특별고문인 Amina Mohammed, Maged Abdelaziz 등을 만나 생물다양성협약의 진행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CBD와 UN펀드, 프로그램 간의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 UNDP 관계자인 Rebeca Grynszpan와 간담회를 가졌다.

브라울리오 디아즈 CBD 사무총장 취임

2012. 2. 15



Bráulio Ferreira de Souza Dias가 2월 15일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의 사무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였다.

1953년에 브라질에서 출생한 Dias 사무총장은 Brasilia 대학에서 생물과학을 전공하고, Edinburgh 대학에서 동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생물 전공자다. 브라질 환경부에서 생물다양성과 산림 보호국장을 역임하면서 국제 및 국가 수준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 이행을 총괄해 왔으며, 브라질 대표단으로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정기간 협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미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이행과 협상에 깊이 관여해 왔다. 또한 지구환경기금의 과학기술자문 패널 위원, 국제 생물학연합 부위원장 등을 맡았다.

Dias 사무총장은 “생물다양성협약 출범부터 성공적으로 사무국을 이끌었던 Angela Cropper, Calestous Juma, Hamdallah Zedan과 2006년 1월에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던 Ahmed Djoghlaif의 뒤를 이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원문출처 : www.cbd.int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의 해, 2011년' CBD 보고서 출판

2012. 2. 3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서는 2011년 CBD 보고서, '생물다양성의 해, 2011년'을 출판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보고서는 CBD 홈페이지(<http://www.cbd.int/doc/reports/cbd-report-2011-en.pdf>)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생물다양성 10년 선포식 소식(30쪽)과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서명 소식 (49쪽)을 소개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 서명국은 1월 11일에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공화국과 1월 20일에 호주가 서명하여 총 76개국 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2011년 2월에 서명이 시작되어, 5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후 90일이 지나면 발효될 것이다.

생물다양성협약-세계미래협의회, MOU 체결

2011. 12. 12



12월 12일 CBD사무국과 세계미래협의회(World Future Council: WFC)는 생물 다양성협약과 생물다양성 10년 전략계획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실행 협력

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다.

세계미래협의회는 미래세대의 관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국제기관이며 전 세계 50여명의 회원이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들을 알리고 매년 우수한 정책에 대해 미래정책상을 수여한다. 협약식에서 아흐메드 조그라프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이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호·감시·규제하는 정책과 법을 알리고, 제정을 장려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미래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알렉산드라 완델 세계미래 협의회장은, “국제사회는 아흐메드 조그라프 사무총장의 리더십 아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합의했다. 세계미래협의회는 전세계가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 생물다양성 10년이 선포된 시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의 모범사례들을 찾아 널리 알리는 데에 더 많은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생물다양성 지표 논의

2011. 11. 7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과학기술보조기구회의가 열렸다. 참석한 600명 이상의 정부대표들은 생물다양성 전략목표의 성취를 위한 점검 방법을 논의하였다. 과학기술보조기구는 생물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정부에 과학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기구이다.

이번 주 회의는 UN이 정한 생물다양성 10년의 선포와 글로벌 전략계획 채택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로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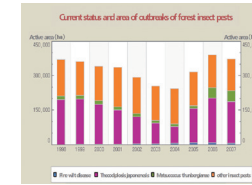
아흐메드 조그라프(Ahmed Djoghla) CBD사무총장은 “약 1년 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 10년의 기한이 이제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실행 이전에 과학적인 자문을 제공해주는 것이 과학기술보조기구의 역할입니다”라고 말했다.

금번 회의를 통하여 과학기술보조기구는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와 관련된 지표체계를 제안하였으며, 국내 상황에 맞추어 국가별 전략계획에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각 국이 지구분류화사업을 위한 능력배양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리서치모니터링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재정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사무국은 능력배양 및 각국의 전략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 워크숍을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계획: 최신의 기술적 근거와 지표
- 생태계 복구 지원 방법
- 지구분류화사업(Global Taxonomy Initiative)을 위한 종합적인 능력배양 전략 초안
- 외래 침입종: 애완용, 수족관 또는 테라리엄 생물종, 또는 미끼 생물종 및 식용으로 도입된 외래침입종에 관련된 국제표준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소규모 사육과 대체 소득원을 포함한 야생동물고기 관련 권고안 개정과 경관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이용
- 담수생물다양성: 물순환의 변환, 담수자원
- 북극의 생물다양성

CBD 회원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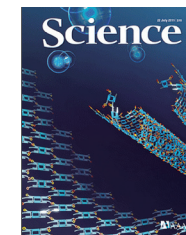
2011. 8. 19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193개 회원국들이 정한 생물 다양성 보전전략과 목표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평가해서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를 받고 있다. 이는 모든 회원국이 예외 없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서, 2011년 현재 ‘제4차 국가보고서’는 전체 회원국의 90%에 해당하는 175개국이 제출했다. 이 보고서들은 아이치 목표를 고안하는데 도움이 되며, 국가적 수준에서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아흐메드 조그라프 CBD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통해, 당사국들은 협약의 의무를 다하고, 아이치 목표 달성을 위한 각 국가의 새로운 생물다양성 전략과 행동계획을 분석하여 미래의 발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 하였다.”라며 나머지 18개국의 보고서 제출을 촉구했다. 제출된 국가보고서는 CBD 웹사이트 <http://www.cbd.int/reports/search/> 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물다양성협약, 외래종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2011. 7. 22



7월 22일자 Science지에는 ‘외래 침입종: 생물자원 보전의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권위 있는 생물보전기관들 (IUCN, Birdlife, WWF, Conservation International,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Fauna and Flora International, Island Conservation)의 목소리를 담은 편지가 실렸다. 이 편지의 내용은 ‘외래침입종은 생물다양성을 크게 위협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생물 다양성 10년 전략계획(아이치 목표)의 9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은 외래종의 침입을 막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 같은 생물자원 보전기관들의 목소리에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아흐메드 조그라프 CBD 사무총장은 편지의 내용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외래침입종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것은 큰 해결 과제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NGO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생물다양성 정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2012. 6. 1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와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ICLEI)는 생물다양성 관련 자료들을 보존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발굴된 방대한 양의 생물다양성 정보들이 종종 사업 종료 이후 소실되거나 호환 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수집된 생물다양성 자료의 수집과 발표에 용이한 기술과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환경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농촌지역의 생물다양성 관리와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자료의 생산자이면서 사용자가 되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책임이 커져가고 있어 가이드라인의 주요 대상이 된다.

생물다양성 정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각 지역에서 생물다양성 관련 계획 수립 시, 필수적인 생물다양성 자료의 무료 공개 가능
- 지역, 국가, 전 세계 생물다양성 자료의 확대 촉진
- 정책 실무자가 자료의 이용 시, 자료 출처에 대해 인용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은 그동안 환경 정책 결정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발표된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생물다양성 자료들의 정확성을 높이고, 접근을 쉽게 하여 이용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선언문 채택

2012. 9. 6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회의,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개회식과 폐회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영숙 환경부 장관과 이흥구 WCC 조직위원장, 아쇼크 코슬라(Ashock Khosla) IUCN 총재, 줄리아 르페브르(Julia Lefevre) IUCN 사무총장,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국내·외 인사 4,0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IUCN의 비전을 담은 '제주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제주선언문에는 지구의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 활동 확대',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 '실천적 지속가능성', '자연의 이용에 대한 거버넌스의 격차 감소', '제주에서 나아갈 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본 선언문을 통하여 지구적 환경이슈에 대해 자연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과, 여성·지역사회 등 거버넌스의 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향후 국제 사회의 환경 정책에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번 총회는 IUCN이 지난 60여 년간 개최한 22번의 총회 중 최초로 동북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총회였고, 역대 총회 중 가장 많은 1만여 명의 참가자가 등록하였다. 또한 총회 이외의 이벤트로 워크숍, 세계리더스 대화 등이 최초로 시도되기도 하였다. 워크숍 중 ABS 관련 주요 포럼으로 ABS와 보호지역에 관한 발표가 있었으며, 코트디부아르와 말레이시아 보호지역에서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청중의 호응이 컸던 세계리더스 대화는 자연보전을 일부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 공통의 문제로 이끌어내며 각계각층의 실천이 중요함을 부각시켰다.

IUCN 총회 결과 채택된 '자연보전과 경제개발의 지속가능한 전략으로서 녹색성장' 발의안은 황해 보전,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아시아-태평양지역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에 전파시켜 큰 성과를 거뒀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출처공개조항 종합목록' 배포

2014. 11. 24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11월 24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국가별·지역별 공개 요구조건(Disclosure Requirements)들을 모아놓은 '공개 요구조건 종합표'를 배포했다.

공개 요구조건이란 지식재산권 신청에서 재료의 출처 및 원산지, 사전통보 승인과 이익공유 증거를 공개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권과 접근 및 이익공유 체제 간의 접점을 다루기 위해 제안된

제도이다.

공개 요구조건 종합표에 담긴 법률 조항 발췌문들은 'WIPO Lex'*에 있는 법률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 종합표는 전통지식 및 전통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국가별·지역별 법률 정보가 담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한 단계 더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원문출처 : <http://biodiversity-l.iisd.org/news/wipo-circulates-table-of-disclosure-requirements-in-legislative-texts/#more-268861>

* WIPO, WTO, UN 회원국들의 지식재산법 및 지식재산관련 조약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 데이터베이스. WIPO Lex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포괄적이고 최신의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www.wipo.int/wipolex/en/about.html>)

제26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유전자원·전통지식 정부간위원회 회의, 약간의 진전과 함께 의견차 남아

2013. 2. 3



2014년 2월 3일부터 5일간 개최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적 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 전승물에 대한 정부간위원회(IGC)'회의에서 각국 대표단들은 유전자원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부 진전을 이루면서 오는 9월 WIPO 총회에 제출할 신규 초안(Draft Text)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회의에서는 'WIPO 지적 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정부간 위원회(IGC)'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 보호에 대한 국제 법률 문서 개발을 목표로 하여 유전자원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제가 되는 출처공개 조항

이번 회의의 가장 열띤 논쟁이 된 조항은 특허 신청자에 의해 이용되는 유전물질의 출처 공개의무에 대한 조항이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 조항이 "생물해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선진국 및 산업계에서는 이 조항을 "산업계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특허청 및 특허 신청자에게 큰 부담감을 주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협의초안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신청자들에게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와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신청자들이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각 특허청은 그들에게 충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다.

IGC는 또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불법이용 방지'를 주요 정책 목적으로 규정했다.

원문출처 : <http://ictsd.org/i/news/bridgesweekly/184057/>

세계지식재산기구, '유전자원, 전통지식보호에 관한 정부간위원회' 차기 권한 갱신

2013. 9. 2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가 '지적 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GC)의 권한을 2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총회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총회에 참석한 대표단들은 내년 IGC 워크프로그램의 세부 사항과 세션 스케줄에도 합의하였다.

IGC는 권한이 연장됨에 따라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 보호를 위한 국제법률문서(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합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년에 있을 WIPO총회에 관련 법률문서와 진행사항의 제출을 요구 받음에 따라 해당 국제법률문서를 채택하기 위한 외교회의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IGC의 국제법규를 둘러싸고 국가마다 커다란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한 예로써 유전자원, 전통지식, 전통문화적 표현 세 주제에 대해 하나의 법률문서로 갈 것인지, 각 사항에 대한 세 개의 개별적인 법률문서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이 법률문서가 법적 구속력을 지닐 것인지 비구속력을 지닌 법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개도국은 대개 구속력을 지닌 하나의 국제법률문서를 선호하나 선진국에서는 구속력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제법률문서의 원안(Texts) 완성도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완성도 향상을 이유로 더 많은 검토작업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도국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성과가 진행되었으며 사실상 부족한 것은 '정치적 의지력'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IGC는 관련 법률문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내년 2월, 4월, 7월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문출처 : <http://www.ip-watch.org/2013/09/30/wipo-assembly-approves-new-work-mandate-on-gr-tk-protection/>
<http://biodiversity-l.iisd.org/news/wipo-assembly-renews-igc-mandate/>

- *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 * IG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제15차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총회, '식량농업 유전자원 여러 하위분야들의 ABS 국내이행 촉진을 위한 요소(안)'에 합의

2015. 1 19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GRFA, The 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15차 총회에서 '식량농업유전자원의 ABS 이행을 위한 요소(안)(Draft Elements to Facilitate Domestic Implementation of ABS for Different Sub-sectors of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에 합의하였다.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의 산하기구로 식량에 관한 동물, 식물, 산림과 해양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통한 인류의 기아와 빈곤 탈피를 목표로 1983년 설치된 기구다.

ABS의 이행에 있어 식량농업유전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식량농업유전자원의 경우 긴 시간을 걸쳐 지역 간에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 연구자, 육종가 등 개발에 기여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어 원산국 및 이익공유의 주체를 정하기 어렵다. 또, 파종과 생산을 거듭하면서 환경의 조성에 따라 유전자 개량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유전자원의 "이용(Utilization)"으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2013년 제14차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에서 조직된 'ABS 기술·법 전문가 팀'이 '식량농업 유전자원의 여러 하위분야들을 위한 ABS 국내이행 촉진을 위한 요소(안) (약칭 Draft Elements)'을 마련하였고, 이번 제15차 위원회 총회에서 마련된 요소(안)에 합의하였다. 이 '요소(안)'에는 식량농업유전자원을 위한 ABS 조치의 개발·채택 또는 이행에 대한 고려사항, 국제적 법 체제에 대한 정보, 식량농업유전자원을 위한 ABS 조치의 마련 근거, 식량농업유전자원을 위한 조치 요소들이 포함되어있다.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국제지속개발연구소의 관련 보고서 : <http://www.iisd.ca/biodiv/cgrfa15/>

**제69차 유엔총회,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 관련 국제 문서 개발 결정**

2015. 6. 19



2015년 6월 19일, 제69차 유엔총회가 제96차 본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하,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BNJ)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개발을 결정했다.

유엔총회는 또한 이 문서의 텍스트 초안을 마련할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 설치를 결정하였다. 제69차 유엔총회 결의안(A/RES/69/292)에 따르면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개최 전까지 BBNJ 작업반 회의의 그간 작업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모든 유엔 회원국 및 특별 기관(Special Agency) 회원들, 협약 당사국들, 유엔 관행에 따른 옵저버들에게 모두 개방된 '유엔해양법 협약(UNCLOS)' 아래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텍스트(안) 요소에 대한 '준비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결정한다'고 결의하였다. 이 준비위원회는 2016년 활동을 시작하여 2017년 말까지 유엔총회에 그동안의 진전을 보고하게 된다.

또한 준비위원회는 2016년, 2017년, 10일간의 회의를 각각 두 차례씩 개최해야 하며, 회의 의제 외의 모든 문서, 작업 프로그램, 준비위원회의 보고서는 비공식 작업 문서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2016년 준비위원회 회의 관련하여, 유엔총회는 2016년 3월 28일~4월 8일, 8월 29일~9월 12일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였다.

준비위원회 구성멤버는 유엔 회원국과 상의 후 유엔총회 의장이 임명한 한 명의 회의주재자(Presiding Officer)가 의장이 되고 각 지역에서 2명씩 선출한 10명의 멤버로 구성된 그룹(Bureau)이 의장을 보좌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에서는 '제72차 유엔총회 전까지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정부간 회의'의 개최 및 개최 일자를 결정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협상 과정에서 1)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2)해양유전자원을 이익공유 문제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3)환경영향평가, 해양보호구역 등 지역기반 관리 도구, 4)역량강화 및 해양 기술 이전 등이 담겨 있는 '2011 패키지'를 다룰 것을 결정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1982년 12월 10일에 체결되어 1994년 11월 16일부터 발효했으며, 현재 회원국은 160여 개국으로 대한민국은 1996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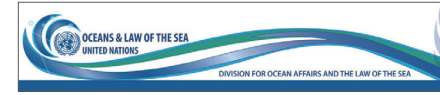
제69차 유엔총회 결의안(A/RES/69/292) 전문 : http://www.un.org/depts/los/general_assembly/general_assembly_resolutions.htm

*** EBT(Union for Ethical Biotrader)**

UEBT는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전통지식을 존중하며, 생물자원 이용혜택을 동등하게 나누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 10월 발족한 비영리 국제기관이다.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업, 무역협회, NGO, 사회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자세한 회원 명단은 UEBT 홈페이지 자료 http://www.ethicalbiotrader.org/dl/UEBT_Profile-2011.pdf에서 볼 수 있다.

제9차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작업반 회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 논의

2015. 1. 20



2015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제9차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작업반 회의(The United Nations

Ad-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작업반 회의)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BBNJ 작업반 회의에서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제69차 유엔총회의 종료 전까지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BBNJ)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개발을 결정할 것을 유엔총회에 권고하는 문서를 채택했다.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가 지난해 10월 발효되었으나, 생물다양성협약은 일반적으로 '국가관할권 내의 지역'에 적용된다. 한편,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은 1982년 채택 당시 해양 유전자원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상태로서, '선착순의 빠른 사람이 이기는(First-come, First-served)' 양상을 보여주었다.

BBNJ 작업반 회의'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 증가와 탐사활동의 증가로 보전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4년 제59차 UN 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되었다. 2006년 2월 제1차 BBNJ 작업반 회의가 열린 이후, 2011년 5월에 열린 제4차 BBNJ 작업반 회의에서 1) 해양유전자원을 이익공유 문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2) 환경영향평가, 해양보호구역 등의 지역기반 관리도구, 3) 역량개발 및 해양기술 이전 등이 담겨있는 2011 패키지를 채택한 바 있다.

BBNJ의 마지막 작업반회의인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개발 외에 이 문서의 요소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할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2017년 개최될 예정인 제72차 UN총회 전까지 문서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정부간회의의 개최 및 개최 일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권고문에서는 해양유전자원을 이익공유 문제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담은 2011 패키지를 이행협정 협상 과정 주제로 다루어야 할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앞으로의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BBNJ 작업반 회의 : <http://www.un.org/depts/los/biodiversityworkinggroup/biodiversityworkinggroup.htm>

국제지속개발연구소의 관련 보고서 : <http://www.iisd.ca/oceans/marinebiodiv9/>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은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

2013. 6. 5



1972년 6월 5일 인간환경회의의 이후 매년 6월 5일은 UNEP가 주관하는 '세계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이다. 올해는 '똑똑한 식습관이 지구를 구한다(Think. Eat. Save-Reduce Your Foodprint)'라는 주제로 몽골에서의 기념식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인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 행사가 진행되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이날 행사와 관련하여 "현재 식량생산이 공급을 앞지르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8억 7천만 명의 인구가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올해 기념식 주제는 이 같은 식량감소와 식량낭비 문제야말로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지속가능개발과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디아스 CBD사무총장은 "현재 식량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매년 4억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이는 우리의 소중한 생물자원과 유전자원이 낭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한 디아스 총장은 "이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2010~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아이치 목표(1~10)' 달성에 기여하며,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자연과 공존하는 조화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출처 : <http://biodiversity-l.iisd.org/news/world-environment-day-celebrations-focus-on-reducing-foodprints/>

유엔개발계획, '적도 이니셔티브' 활동 결과 온라인 게재

2013. 1. 4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은 UN, 정부, 시민, 기업 등이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다함께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파트너십 프로그램 'Equator Initiative'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끈 지역 또는 토착 프로그램 및 전통지식 활용 사업 등을 선정하여 Equator상을 수여하며, 회의를 열어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연구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 10주년을 맞이한 Equator Initiative는 그 동안 Equator상을 받은 우수 활동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총 49개국의 127개 사례를 검색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브라질 Hevea Brasiliensis 고무나무로부터 추출한 천연라텍스 대량 가공방법 연구, 인도 벼의 다양성 급감 영향 연구 등 기관 및 정부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이외의 다른 우수 활동들의 정보는 <http://www.cbd.int/2011-2020/events/world/undp/>에서 확인 가능하다.

Rio+20 정상회의 20주년 기념, '인류보건 및 리우 협약' 보고서 발간

2012. 7. 21



세계보건기구(WHO) 마거릿 찬(Margaret Chan) 박사는 “Our Planet, Our Health, Our Future. Human Health and the Rio Conventions: Biological Diversity, Climate Change and Desertific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리오정상회의 기간인 7월 21일에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사막화가 우리의 건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정리하였다. 생물다양성 협약과 관련해서는 음식, 물, 질병, 전통 약재, 문화와 같은 각 주제에 대해 생물다양성이 미치는 영향들을 기술하였다. 이 보고서는 각 협약의 사무총장과 함께 작업되었으며, 공식적인 발간은 리오협약의 20주년을 축하하면서 이루어졌다. 보고서 원문은 [www.who.int/global change/publications/reports/healthintherioconventions/en/index.html](http://www.who.int/global_change/publications/reports/healthintherioconventions/en/index.html)에서 볼 수 있다.

7월의 주요 회의 일정

- 제2차 나고야의정서 정부간회의(The Second Meeting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 7월 2일~6일, 인도 뉴델리
- 지구분류학사업 동아시아·동남아시아지역 대상 역량강화워크숍 (GTI Subregional Capacity-building Workshop) : 7월 30일~8월 1일, 태국 방콕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하는 전세계 행사 열려

2012. 5. 22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과 북아일랜드, 캐나다, 필리핀 등 24개국과 일본 유엔대학에서 2012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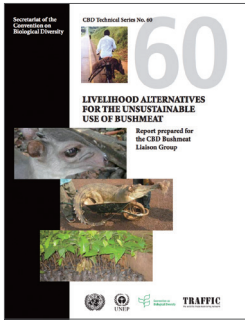
영국은 런던의 자연사박물관에서 50개 이상의 생물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Big Nature Day'를 개최한다. 야생생물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물표본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참여자가 자연과 가까워 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연의 가치와 다양성을 함께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캐나다는 몬트리올 McGill 대학의 Redpath Museum에서 생물 다양성협약 사무국과 공동 주관으로 생물다양성 10년(2011~2020)과 생물다양성의 날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연다.

유네스코,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 10년 선포

2011. 11. 14



유네스코는 11월 14일 파리 본부에서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 10년(2011~2020)을 선포하였다. 이번 선포식은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의 주재로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와 유네스코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의 발족과 함께 개최되었다. 유네스코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는 종합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 10년 전략계획과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포식에 동참한 아흐메드 조그라프 CBD 사무총장은 2010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해를 첫 번째로 축하한 유네스코가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 10년 선포와 함께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를 첫 번째로 발족한 국제기구가 되었음을 축하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19일, 유엔이 정한 생물다양성 10년 선포 기념식을 가진 바 있다.



UN은 '야생동물 고기의 지속불가능한 이용 생계 대안(Livelihood Alternatives for the Unsustainable Use of Bushmeat)' 보고서에서 야생동물 고기의 남획 해결은 각 정부가 지역 기반의 관리, 사냥을 위한 야생동물 사육(Game-ranching) 및 관광(Hunting Tourism)과 같은 새로운 감시체계 및 법 집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세계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야생동물 고기의 거래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열대·아열대 국가의 생계를 위협하며 생물다양성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인구증가와 농촌 지역의 빈곤 및 도시 소비의 증가, 야생동물 고기 사냥 및 거래의 생계 대안 부재가 야생동물

고기 남획의 주요인이다.

이번 보고서는 43개국 정부 및 UN기구 대표 55인과 지역사회 기구 대표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이다. 이들 대표들은 기존의 접근방식으로는 야생동물고기의 남획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국제사회 및 관련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http://www.cbd.int/doc/publications/cbd-ts-60-en.pdf>에서 볼 수 있다.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주요 대안은 다음과 같다.

- 야생동물 지역기반 관리,
- 사냥을 위한 야생동물 사육과
- 관광 관련 야생동물관리 방안의 실행
- 소형 야생동물을 작은 농장에서 키우는
- '소형 가축' 사육 확대
- 양봉과 같은 지속가능한 비목재
- 삼림 생산물 생산
- 야생동물 사냥 및 거래 감시 철저
- 야생동물 고기 관련 법 개선



1996년 설립된 UN대학의 부설연구소인 고등학문연구소(UNU-IAS : UN University-Institute of Advanced Studies)가 생물다양성에 특화된 환경 거버넌스 이학 석사 과정을 개설하고 10월 10일 기념식을 가졌다. 아흐메드 조그

라프(Ahmed Djoghlaif)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아이치목표 : 새로운 생물다양성 관리 시스템의 초석'이라는 기초 발표를 하였다. 이 과정은 다학문적인 관점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연구를 하게 된다.

식전에는 CBD와 UNU-IAS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이번 MOU 체결로 UNU-IAS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 지원을, CBD는 새로 개설된 과정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서로 연구원을 교류하고, 석사 과정 학생에게 CBD 사무국의 인턴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입생들은 내년 7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처음 현장견학을 수행하며, CBD 사무국은 대학 및 과학 연구소들과 컨소시엄을 통해 새로 개설된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UN대학 부총장이자 UNU-IAS 소장인 고빈단 파라일(Govindan Parayil) 교수는 "생물다양성 손실은 우리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이며, UNU-IAS가 UN정책연구소로서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리적생물무역연합, 2013년 '생물다양성 지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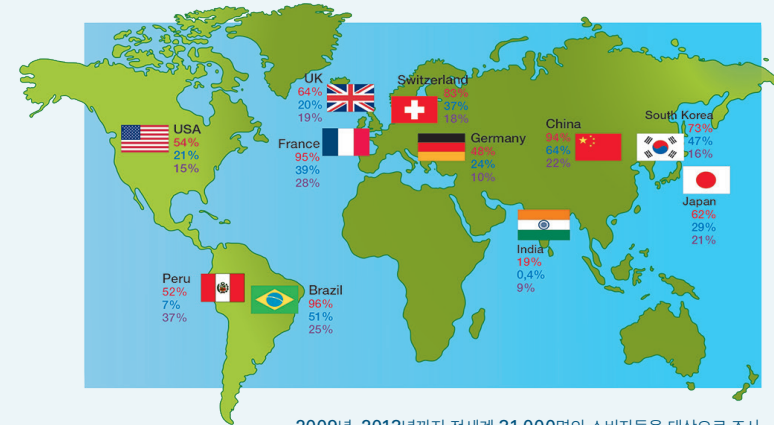
2013. 5. 3

기업, 무역업체,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국제기구인 UEBT(Union for Ethical BioTrade)가 2013년 '생물다양성 지표'를 발표하였다. UEBT는 2009년부터 총 11개 국가에서 3만 천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생물다양성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중국, 프랑스의 소비자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하여 94% 이상의 특히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었다. 2011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73%의 인식률을 보여준 바 있다. CBD 사무총장은 생물다양성 지표가 생물다양성 인식에 관한 세계적인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와 기업 이윤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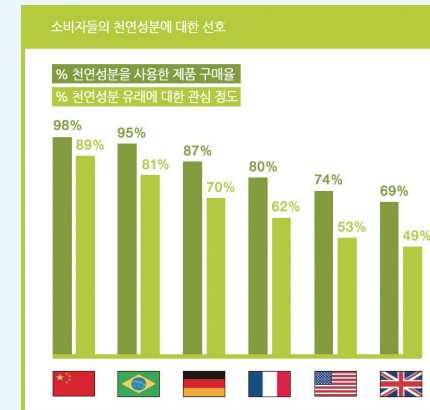
생물다양성의 브랜드마케팅에 관련해서는 '가장 생물다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3가지 브랜드'를 물어본 결과, 브라질에서는 '네추라(Natura)'가 압도적이었다. 미국에서는 '스타벅스(Starbucks)', '크라프트(Kraft)', '벤앤제리(Ben&Jerry)'가 언급되었고, 영국에서는 '바디샵(Bodyshop)'과 '코업(CO-OP)', 프랑스에서는 '이브로세(Yves Rocher)'와 '다농(Danone)'이라고 답했다. 중국에서는 '일리(Yili)', '멩리우(Mengliu)', '암웨이'였다. 발표된 지표는 UEB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www.ethicalbiotrade.org/press/login.html, 로그인 사용자이름: UEBTpress, 비밀번호: R3sPeCt09).

● 2013 생물다양성 지표 발표자료 발췌



2009년~2013년까지 전세계 31,0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 2012년 (스위스, 페루, 인도), 2011년 (대한민국), 2010년 (일본)

- ① 생물다양성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 ② 생물다양성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나요?
- ③ 생물다양성의 개념 일부분을 알고 있나요?



- 천연성분 유래 상품 관련 조사
 - 조사한 소비자의 평균 80%가 천연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 구매
 - 중국(98%)과 브라질(95%)에서 선호 뚜렷
- 81%가 공식 절차를 통해 공급된 원료를 더 신뢰
- 72%가 제품 구매 시 환경과 윤리 표시 중요하게 생각



UEBT(Union for Ethical BioTrade)*는 '생물다양성이 향후 미용 산업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연례 회의를 오는 4월에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9년부터 실시한 각 국가 국민들의 생물다양성 인식조사 결과인 '2013 UEBT 생물다양성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UEBT의 Rik Kutsch Lojenga는 프랑스의 경우, 생물다양성을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2009년에 87%에서 2012년에 95%로 올라갔다고 설명하며, 올해의 조사는 특별히 매년 조사대상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브라질과 함께 중

국을 포함하여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의 또 다른 안건은 생물다양성의 ABS관련 문제로 브라질, 콜롬비아, 말라위, 영국의 사례발표를 통해 유럽연합,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ABS 법률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각 미용산업 관계자들은 그들의 실제적인 경험과 해외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할 수 있으며, 기업의 실무자들은 윤리적인 원료 공급의 이론과 실제상황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 UEBT(Union for Ethical BioTrade)

UEBT는 생물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전통지식을 존중하며, 생물자원 이용혜택을 동등하게 나누도록 장려하기 위해 2007년 발족한 비영리 국제기관이다.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다.



윤리적 생물자원 교역을 위한 비영리 국제기관인 UEBT(Union for Ethical BioTrade)는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 세계 인식조사를 토대로 2012년 생물다양성 지표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전 세계 응답자의 76%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으며, 64%가 생물다양성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100대의 미용산업 중 54개 기업의 보고서나 웹사이트에서 지속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31개 기업은 생물다양성을 언급하였다. 생물다

양성에 관한 인식은 브라질, 프랑스, 스위스에서 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생물 다양성의 정의는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정확한 정의를 담은 응답자 중에서도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는 비율은 모든 나라에서 50% 미만으로 낮은 편이었다. 생물다양성의 이해를 높이는 통로로는 텔레비전, 잡지와 신문, 학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 페루, 스위스, 영국, 미국 등 8개국 8,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인도와 페루는 면담과 전화 인터뷰가 실시되었고, 나머지 나라에서는 인터넷 조사가 진행되었다. UEBT 생물 다양성 지표에 관한 정보는 www.ethicalbiotrad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리적생물무역연합 -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MOU 체결

2011. 9. 2



UN이 정한 생물다양성 10년(2011년~2020년)을 맞아, 윤리적 생물자원 교역을 위한 국제기관(UEBT: Union for Ethical BioTrade*)과 CBD는 생물다양성 10년 CBD 전략 계획 실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CBD 전략 계획은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고, 2020년까지 회복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로 UEBT와 CBD는 생물다양성에 인식 향상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기업 사회의 동참, 그리고 생물다양성 이용 이익의 동등한 분배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UEBT는 나고야 의정서와 연관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식품 등 관련 기업들의 ABS 인지도를 높이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ABS 의정서의 실행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 EBT(Union for Ethical BioTrade)

UEBT는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전통지식을 존중하며, 생물자원 이용혜택을 동등하게 나누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2007년 10월 발족한 비영리 국제기관이다.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업, 무역협회, NGO, 사회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자세한 회원 명단은 UEBT 홈페이지 자료 http://www.ethicalbiotrade.org/dl/UEBT_Profile-2011.pdf에서 볼 수 있다.

지중해지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을 위한 회의 개최

2012. 1. 17



프랑스 몽펠리에(Montpellier)에서 지중해 지역의 정부대표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아이치목표와 '2011~2020 생물다양성 10년' 전략계획의 이행을 위한 회의를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였다.

몽펠리에시장,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CBD),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등 지중해지역 15개 도시의 대표자들은 지중해의 생물다양성 전략과 행동계획에 관한 능력 제고를 모색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과 도시에 대한 세계적 전망(Global Outlook on Cities and Biodiversity)'의 초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올해 9월에 개최되는 Rio+20 정상회담에서 발표되어 10월에 열리는 제11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토착지역주민공동체 대표와 정부 대표단의 만남

2011. 10. 31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항*에 관한 임시 작업반 회의에서 정부 대표단은 전 세계 토착지역주민공동체 대표들과 전통지식을 생물다양성 10년을 위한 글로벌 전략 계획에 어떻게 포함시킬지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정부대표단 등으로 구성된 이 작업반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보조기구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토착지역주민공동체의 역할과 그들의 전통지식을 조사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작업반 회의의 주요 목적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속가능한 전통지식의 이용에 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족하는 것이다. 토착지역주민공동체가 수년 동안 행해온 지속가능성 모델들은 나고야에서 각 국 정부들이 합의한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번 회의는 또한 전통지식 사용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사전통보승인 관련 문제와 이와 관련하여 공동체의 동의 없는 사용을 방지하는 나고야 의정서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 방법들도 모색되었다. 작업반은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항에 관한 국가 법규 혹은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독자적 시스템 개발관련 가이드라인을 발전 시켜나갈 것이다.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고, 국제사회 및 관련 정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http://www.cbd.int/doc/publications/cbd-ts-60-en.pdf>에서 볼 수 있다.

*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 j항

국내입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토착사회 및 지역사회의 지식·혁신적 기술 및 관행을 존중·보전 및 유지하고, 이러한 지식·기술 및 관행 보유자의 승인 및 참여하에 이들의 보다 더 광범위한 적용을 촉진하며, 그 지식·기술 및 관행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장려한다.

G77, 아이치 목표 실행 촉구

2011. 9. 28



뉴욕에서 열린 제 35차 G77(Group of Seventy Seven: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의 상호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연례회의에서 각 국가의 외무장관들은 나고야 의정서가 생물다양성 협약의 세가지 목표(생물다양성의 보전,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 실행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와 함께 외무장관들은 생물다양성 10년(2011~2020) 전략계획(아이치 목표*)이 국가적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으로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UN이 정한 생물다양성 10년은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세계인을

동참시키는 특별한 기회로써 생물다양성 10년 목표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함께 확인하였다.

* 아이치 목표

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의 개최지인 일본 나고야시가 위치한 아이치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